

<최종보고서>

가계조사 자영자가구 소득 측정 학술연구용역

2003년 12월

연구기관 :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연구책임 : 강석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목 차

I. 자영업, 자영업자의 개념	1
II. 자영업소득 개념	7
III.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보고	11
IV. 도시가계조사 내부의 정합성 검토	20
V. 외부 자료와의 정합성 검토	29
VI. 자영업자의 비소비지출 분석	43
〈부록〉 1998년 이후 근로자가구와 자영자가구의 평균소득 역전현상에 대한 검토	73

I. 자영업, 자영업자의 개념

1. 도시가계조사에서의 자영업자의 정의

-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가구주의 종사상지위를 다음의 <표 I-1>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 정부기관의 고위관리의 경우에도 법인경영자로 구분되고 있음. 예를 들어 검사, 외교관은 공무원으로서 근로자가구에 포함되며, 차관, 도지사, 청장은 법인경영자로 구분되어 근로자가구에 포함되지 않음.
 - 영업상 사용인 5인을 기준으로 피고용자가 있는 자영업주와 개인경영자로 구분되고 있음.

<표 I-1>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에서의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 구분

구분		내용	예시
자영업주	피고용자가 없는 자영업주	독립적으로 소규모의 상품제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주로 영업상 사용인이 없는 사람	제과점, 사진관, 자전거 점포, 전당포, 이발소, 개인택시운전사, 고정봉급이 없는 외판원
	피고용자가 있는 자영업주	위의 내용과 동일하며 영업상 사용인이 1~4인인 사람	
개인경영자		독립적인 대규모(가족종사자가 아닌 영업상 사용인이 5인 이상) 개인조직인 상점, 사업체 또는 서비스를 경영하는 사람	규모가 큰 식당주인, 공장주인, 개인병원장
법인경영자		가족종사자가 아닌 영업상 사용인이 5인 이상 고용된 법인체(합명, 유한, 주식회사 및 비영리법인 단체)의 임원 및 정부기관의 고위관리	사장, 감사, 이사, 장관, 차관, 도지사, 청장, 국회의원 등
자유업자	피고용자가 없는 자유업자	자기가 가진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는 독립경영자로서 피고용자가 없는 사람(단, 회사, 단체에 고용된 자는 근로자가구로 분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조산원, 도안사, 화가, 저술가, 작곡가, 음악평론가, 컨설턴트
	피고용자가 있는 자유업자	위의 내용과 동일하면 피고용자가 1-4인인 사람	
무직		가구주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연금, 타가구로부터 송금보조, 이자소득 등에 의하여 운영되는 가구	무직자, 실업자, 이자소득 가구, 연금소득 가구

- ☐ 이외에 자영업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중에서 주목되는 점은 다음과 같음.

- 일정한 기본급을 받는 외판원은 사무직가구로 판단하고, 실적에 따른 수당만을 받는 경우에는 자영자가구로 판단함.
- 지입제 가구는 자영자 가구임.
- 빌딩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우는 자영자가구임.

2. 통계청의 자영업자 정의

2.1 통계청의 일반적인 정의(통계청 홈페이지에서의 통계용어 정의)

□ 자영자(own-account worker)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 자영자를 유급고용원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2.2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의 정의

□ 종사상 지위 : 종사상 지위란 취업자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신분 또는 지위상태를 말하며, 다음 5가지 범주로 구분함.

- 1) 자영자 : 유급종업원 없이 자기 혼자 기업이나 농장 등을 경영하는 자, 또는 상점이나 전문적인 직업을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자
- 2) 고용주 : 유급종업원을 한 사람 이상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 3)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에게 직접 수입이 오지 않더라도 자기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높이는 데 18시간 이상 도와준 자
- 4) 상용근로자 :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 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자, 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등
- 5) 임시근로자 : 임금근로자중 상용이 아닌 자로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 등
- 6) 일용근로자 : 임금 또는 봉급을 받고 고용되어 있으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떠돌아 다니면서 일한 댓가를 받는 사람 등

☞ 법률적인 구분으로 개인기업체와 법인기업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유급종업원에 수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2.3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서의 정의

□ 사업체

- 사업체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개개의 상점, 사무소, 영업소 은행, 학교, 병원, 여관, 식당, 각종 교습소, 교회, 사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재화의 판매, 서비스 제공 등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단위를 말함.

□ 조직형태

- 개인사업체 : 순수하게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로 동업(공동경영)의 경우도 포함함.
- 회사법인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음.
- 회사이외 법인 :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이외의 법인을 말하며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음.
- 비법인단체 :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서 동창회, 후원회, 문화단체, 노동단체, 종친회 등이 있음.

□ 종사자수

- 자영업주 : 동업자를 포함한 개인사업체의 소유주를 의미함.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주의 가족으로서 정상 작업(영업)시간의 1/3이상 종사하나, 봉급이나 임금을 받지 않는 자.
- 상용종사자 : 1년 이상 고용되어 일정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하며,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도 여기에 포함됨.
- 임시 및 일일종사자 : 1년 미만 고용되었거나 일일수당제로 고용된 자.
- 무급종사자 :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예 : 접대부, 외판원, 배달원, 무보수 근무자 등)

☞ 사업체를 법인과 비법인개인사업체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영업주를 개인사업체의 소유주로 정의하고 있음. 자영업주를 제외한 모든 유급임원도 상용종사자로 포함하고 있음.

3. ILO의 구분¹⁾

3.1 ILO권고안

□ 1993년 ILO에서 발표한 종사상지위에 대한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of Employment)에서는 다음과 같이 6개의 항목으로 분류하였음.

- 1) 피용자(employees)
- 2) 고용주(employers)
- 3) 자가계정근로자 또는 자영업자(own account workers)
- 4) 생산자조합의 구성원(members of producers' cooperatives)
- 5) 무급가족종사자(contributing family workers)
- 6) 기타(workers not classified elsewhere)

□ 피용자는 보수를 지급받는 일(paid employment)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함.

○ 보수를 지급받는 일이란 (문서형태 또는 구두약속형태)명시적 또는 비명시적인 고용계약에 의하여 그들이 일하고 있는 단위(이 단위는 기업, 비영리기관, 정부기관 또는 가계가 될 수 있음)의 수입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기본 보상을 받는 일을 의미함. 보수를 지급받는 일은 임금이나 월급으로 주로 보상을 받지만, 정률의 판매커미션, 보너스 또는 주택이나 식료품 등의 현물로 보상을 받는 경우도 있음.

□ 고용주는 자가계정을 가지고 일하면서(working on their own account) 1명 또는 약간 명의 동업자와 자기고용형태의 일(self-employment job)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고용주는 1명 이상의 피용자를 연속적으로 고용(continuous basis)하고 있음. 연속적인 고용의 정의는 안정적인 고용계약을 가지고 있는 피용자(employee with stable contracts)의 정의와 일관된 방법을 사용하되, 구체적으로는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결정함.

○ 자기고용형태의 일이란 보상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으로 파생되는 수익(또는 잠재적 수익, 자가소비도 수익의 일부로 간주됨)에 직접적으로 의존하는 형태의 일을 의미함. 이 일을 가진 사람은 전 사업체의 경영에 책임을 지고 중요한 결정을 행함.

□ 자가계정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는 자가계정을 가지고 일하면서(working on their own account) 1명 또는 약간명의 동업자와 자기고용형태의 일(self-employment job)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자영업자는 연속적으로 고용(continuous basis)하고 있는 피용자가 없는 경우임. 단 비연속적으로 피용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자영업자에 포함됨.

□ 무급가족종사자 :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이 시장 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하는

1) ILO(1993), Resolution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Status in Employment Adopted by the Fif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s

사업체에서 자기고용형태의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다만 사업체의 최고책임자와 비교할 때 일하는 기여도가 차이가 있어서 동업자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함. 일하는 시간이나 기타 요인으로 판단하는 기여도의 정도는 국가별 상황에 따라 결정함.

- 이외에 ILO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대부분 자영업과 피용자의 성격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구체적인 계약의 내용이나 국가별 상황에 따라 결정하기를 권고하고 있음.
- 법인의 소유경영자(owner-managers of incorporated enterprises)는 “보수를 지급받는 일”과 “자기고용형태의 일”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음. 국민계정에서는 피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노동시장분석의 목적으로는 고용주 또는 자영업자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각국의 통계기관은 이를 별도로 작성할 것을 권고함.
- 외부근로자(outworkers)는 사전적인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 계약을 통해 특정기업을 위해 일하거나, 특정한 양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구체적인 작업장소는 계약을 맺은 기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인 경우의 근로자임. 이들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일로 볼 수도 있고, 자기고용형태의 일로 볼 수도 있음
- 자가사용자영업자(subsistence workers)는 자기고용형태의 일을 하지만 생산품의 대부분을 자가사용하며, 이러한 부분이 생활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경우를 말함.
- 피용자를 두고 프랜차이즈를 경영하는 경우는 고용주로 취급할 것을 권고함.

3.2 ILO권고안 사용현황²⁾

- 각국의 통계작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1997) 대부분의 국가에서 ILO권고안을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음. 조사응답국가 103개 중에서 실제로 ILO의 1993년 권고안이 발표된 이후 23개국만이 개별 국가의 분류표준을 재검토하거나 수정보완 되었을 뿐임.
- 구분이 쉽지 않은 ①법인의 소유경영자, ②외부근로자(outdoor workers), ③하청업자(contractors), ④프랜차이즈종사업자(franchisees), ⑤자가사용자영업자(subsistence workers) 등은 각국마다 상이하게 구분하고 있음. 또한 개별 분류가 인구센서스나 노동력서베이 또는 소득 및 지출조사의 경우에 상이하게 취급되는 경우가 다수 있음을 알 수 있음.

2) Elias and Hoffmann(1997), ICSE-93 and the Border between Paid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 A ReView of National Practices, Prepared for the First Meeting of the Paris Group on Labor Statistics

- 예를 들어 법인의 소유경영자의 경우 46.6%의 국가에서 고용주로 분류하고 있지만, 피용자로 분류한 경우도 11.9%에 달함. 법적 또는 세법상에 근거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따라서 피용자로 구분하는 경우)들이 소수이지만 여기에는 호주, 태국, 미국 등이 포함되어 있음.

<표 I-2> 종사상 지위로 볼 때 경계에 위치하고 경우에 대한 각국의 구분현황

구분	인구센서스			노동력서베이			소득/지출조사		
	ICSE	국가수	비중	ICSE	국가수	비중	ICSE	국가수	비중
법인소유경영자	2	55	46.6	2	57	48.3	2	45	38.1
	1	14	11.9	1	13	11.0	1	14	11.9
	3	8	6.8	3	7	5.9	2 or 3	7	5.9
외부근로자/가정 근로자	1	34	28.8	1	39	33.1	1	34	28.8
	3	18	15.3	3	19	16.1	3	16	13.6
	5	5	4.2	5	5	4.2	2	5	4.2
하청업자	2	26	22.0	2	24	20.3	3	22	18.6
	3	18	15.3	3	22	18.6	1	20	16.9
	1	15	12.7	1	17	14.4	2	18	15.3
프랜차이즈	2	34	28.8	2	37	31.4	2	35	29.7
	2 or 3	11	9.3	2 or 3	11	9.3	3	13	11.0
	3	11	9.3	3	11	9.3	2 or 3	10	8.5
자가사용자영업자	3	40	33.9	3	43	36.4	3	36	30.5
	5	12	10.2	5	13	11.0	6	10	8.5
	6	11	9.3	1	5	4.2	5	6	5.1

주 : ICSE는 ILO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근접한 분류항목을 의미함. 각 직군별로 기타 분류항목이 있기 때문에 전체비중의 합이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Elias and Hoffmann(1997)

4. 시사점

- 결국 종사상지위에 대한 구분은 각국마다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는 않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구분이 애매한 경우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또한 조사(인구센서스, 노동력, 소득 및 지출) 또는 분석의 목적(국민계정, 노동시장 분석 또는 소득불평등분석, 후생분석 등)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할 수 있음.
- 현재 통계청 가계조사에 사용하는 자영업의 개념을 크게 보완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통계청에서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자영업자의 소득인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에 법인경영자의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II. 자영업소득 개념

1. 도시가계조사 및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의 사업소득

□ 각 조사에서 상이한 개념설명을 하고 있음.

○ 도시가계조사 해설(1995) : 가구주 또는 기타 가구원이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재능을 이용하여 얻은 총수입 중 이를 경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및 재료비 등의 일체의 비용을 차감한 순수입

○ 도시가계조사 해설 (2002): 가구주 또는 기타 가구원이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재능을 이용하여 얻은 총수입 중에서 가계로 전입된 소득을 의미함.

○ 가구소비실태조사 해설(1996)

- 가계수지 항목 : 가구주 또는 기타 가구원이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재능을 이용하여 얻은 총수입 중 이를 경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및 재료비 등의 일체의 비용을 차감한 순수입 중 가계로 들어온 금액-> 이윤의 개념, 가계전입소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연간소득 항목 : 가구주 또는 기타 가구원이 자영업주 또는 고용주의 지위에서 직접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문적인 지식 또는 재능을 이용하여 얻은 총수입 중 이를 경영하기 위한 일반적인 관리비 및 재료비 등의 일체의 비용을 차감한 순수입

※ 96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개념상 감가상각비도 제외한 금액을 소득으로 조사하였음.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가계부를 기입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고, 연간소득만 조사되었으며 소득개념은 가구전입소득이 아니라, 순수입으로 정의하였음.

□ 통계청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조사마다 다양한 정의 또는 해설에도 불구하고” 통계청 가계조사에서는 사업상의 순수입 중에서 가계로 전입된 부분만을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였음. 단, 1996,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연간소득은 가구전입소득이 아니라 순수입으로 정의하였음.

2. 자영업소득에 대한 국제기준³⁾

3) 아래의 내용은 Seventeen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Labor Statistics(2003)에서 ReportII로 발표한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tatistics에서 자영업소득에 관한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요약한 내용임.

2.1 주요 논의내용

- 58. 자영업소득은 기존의 정의(ILO 2000, page 50, paragraph 16)에 따라 “자기 고용형태의 일(self-employment job)”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함.
- 59. 이 항목은 비법인기업의 소유주에 한함. 따라서 실제로는 일하지 않으면서 동업자로서 자본참여한 경우의 자본이득을 포함하지 않음. 또한 법인기업의 소유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이나 보상분(director's fee)도 포함하지 않음. 자본이득이나 배당금은 재산소득이며, 세 번째 보상분은 피용자소득으로 분류됨.
- 60. 자기고용형태의 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기저는 국민계정의 비법인기업의 혼합소득(mixed income of unincorporated enterprise)의 개념임. 혼합소득은 총산출(gross output)에서 운영비용과 자산의 감가상각을 공제하여 산출됨. 총산출에는 자가소비부분과 교환을 위한 생산부분, 보조금을 포함함. 운영비용은 피용자보수, 원재료, 장비의 유지비용, 제반 공공요금, 간접세, 지급이사 및 임대료의 합임.
- 61. 혼합소득은 자본이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등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노동에 대한 보상도 포함하는 개념임.
 - ※ 62. 자영업소득의 기저로서 혼합소득을 사용하는 경우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발생함. 혼합소득은 마이너스가 가능함. 실제로 조세시스템하에서 주어진 기간동안 기업자체가 자신의 이득 또는 손해상황을 알지 못할 수도 있음. 자영업자는 매우 이질적인 그룹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비공식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합소득이 자영업으로부터의 소득측정도구로서 최적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음.
 - ※ 63. 대안으로서 사업으로부터의 인출부분(drawings from business)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음. 이 안은 15차 ICLS(1993)와 취업으로부터의 소득(ILO, 1997)전문가회의의 보고서에서 논의된 바 있음. 그러나 두 경우 모두에서 인출부분은 소득의 일부분이라는 점(나머지부분은 사업에 재투자되고 이에 따라 저축을 의미함)과 소득보다 클 수 있다는 점(자산의 저하를 유발하는 인출)에서 대안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 > 즉 자영업자의 인출소득은 순수입에서 인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사업자산 매각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의 소득개념과 배치되는 부분임(기존의 소득개념은 자산의 증감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64. 또다른 대안으로 장부를 기입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장부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용자로 취급하여 이득대신에 소득을 설문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음 (Martin et al, 1996). 또한 후자의 그룹에 대해서는 소득보다 소비지출을 사용하는 방법이 제안되었음. 기본적인 가정은 이들의 경우에는 자산과 저축이 거의 없다는 점임. 그러나 이들도 부채증가를 통해 소비액을 조달할 수 있음.
- 65. 15차 ICLS에서 도입된 ICSE를 사용하는 경우에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예를 들면 외부근로자의 경우 EUROSTAT의 소득측정에 관한 초안(draft manual)에 의하면 그 사람의 보상형태가 근로시간이나 공급량에 의존한다면 피용자로 분류되어야 하고, 그 사람의 재화와 서비스의 판매로부터 수입이나 이득의 함수라면 자영업자로 분류되어야 함(EU-SILC, 2002, page 81). 이러한 이슈는 자영업소득과 피용자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중요한 이슈가 됨.
- 66.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혼합소득을 자영업소득 측정의 기저(basis for measuring self-employment income)로 삼기로 하였음.

2.2 자영업소득의 기능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 232. 자영업소득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 무응답, 항목무응답, 과소보고 등의 현상이 나타남. EHPS⁴⁾의 어떤 웨이브에서는 60%를 넘는 경우가 결측치였으며, 보고된 경우의 55%가 보정된 경우였음(EU-SILC, 2002, pages 83-84)
- 233. 자영업소득의 조사는 이 상황에 적절하게 정비되어야 함. 조세목적으로 장부를 기입하는 경우는 여기에 근거하도록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함. 장부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는 피용자처럼 설문이 이루어져야 함. 보정 또는 이익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으로부터 가구용도로 전입된 항목을 조사하거나, 비공식부문의 자영업자의 경우 지출에 관한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함. EUROSTAT의 소득측정에 대한 미완성매뉴얼(draft manual)에서는 혼합소득과 전입부분을 모두 조사함으로써 혼합소득이 가용하지 않는 경우 전입소득을 이용하여 보정(imputation)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262. 일부 국가에서는 가구서베이와 소득세기록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음. 가구의 특성은 서베이를 통해 파악하고 소득은 조세자료를 이용하여 파악함. 이러한 방법은 서베이 당시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특별히 유용한 방법임.

3. 시사점

4) European Household Panel study

-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가구전입소득의 개념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때 적절한 소득개념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소득은 가구전입소득보다 클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가구전입소득은 자영업자의 자산의 증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득의 개념에도 부합되지 않음.
 - 가구전입소득은 자영업소득보다 적다라고 선형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구전입부분이 자산의 증감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가구전입소득과 자영업소득간의 상대적인 크기를 알 수 없음.
-
- 그러나 한국적인 경제구조 및 조세현실에서 개념적으로 우월하다고 볼 수 있는 자영업소득 전체를 설문한다고 해서 반드시 精度가 높은 설문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임.
 - 먼저 자영업소득 전체를 응답자가 성실하게 응답해 줄 가능성(또는 유인)도 크지 않고, 두 번째로는 자영업자 자신도 자신의 자영업소득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 엄밀한 의미에서 자영업소득의 개념은 총수입에서 영업관련 직접 비용을 제외할 뿐만 아니라 자가사용분을 평가하여 이를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계산하여 이를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하는데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이러한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 향후 일정기간 동안은 가구전입소득개념과 자영업소득과의 개념을 동시에 질문하고, 이러한 응답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자영업소득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이라고 판단됨.

III. 자영업자의 소득축소 보고

- ☐ 자영업자의 소득축소보고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에 사용가능한 데이터로는 국민 계정자료, 조세감시자료(tax audit data), 조세사면자료(tax amnesty data), 서베이데이터가 있음.
- o 조세감시자료는 조세납부자 중의 일부를 추출하여 집중적으로 소득을 조사하는 방법이며, 일부 국가에서 사용하는 방법임. 동 방법은 개념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조사하는 소득이 조사자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음.
- o 조세사면자료는 조세납부자들에게 소득과 세금을 정직하게 보고하는 경우 이를 사면한다는 조건을 부여하고, 이를 받아 들이는 납세자들이 정확한 소득과 세금을 보고한 자료임. 동 자료는 표본선택(sample selection bias)의 문제가 발생함.
- o 일반적으로는 서베이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 및 소비의 지출차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널리 쓰이고 있음.

1. 해외연구

1.1 지출측면 접근법을 이용한 연구방법론

- ☐ 지출측면 접근법(P&W) : Pissarides and Weber(1989)
- o 동 방법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근거함. 1) 모든 가구는 지출에 대하여 정확하게 보고함. 2) 모든 가구는 세금 신고시에 사용한 금액과 동일한 소득금액을 보고함. 3) 임금 및 봉급생활자는 소득을 정확하게 보고하지만, 자영업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음. 4) 세후소득 및 식료품지출의 관계가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에게 동일함.
- o 이제 한 가구의 지출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기함.

$$\ln x f_i = \alpha z_i + \beta \ln y_i^p + \epsilon_i$$

좌변은 식료품지출의 자연대수값을 의미하며, z_i 는 가구의 특성을 나타내며, y_i^p 는 가구의 항상소득을 의미함. 이제 보고된 소득(y_i^R)은 진정한 소득(y_i^T)의 일부분이라고 가정하고, 진정한 소득은 항상소득에 일시소득을 포함한 값이라고 하면 다음이 성립함.

$$y_i^T = k_i y_i^R, y_i^T = p_i y_i^P$$

이 때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k_i 가 1이며, 자영업자구의 경우에는 k_i 가 1보다 크다고 가정함. 또한 p_i 의 평균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모두 같지만, 양자의 분산은 상이하다고 가정함. 이 때 새로운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게 됨.

$$\ln c_i = \alpha z_i + \beta \ln y_i^R - \beta \ln p_i + \beta \ln k_i + \epsilon_i$$

추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p_i, k_i 는 모두 로그정규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함. 이제 자영업자와 근로자를 구분하는 더미변수(D_i)를 설명변수에 포함하면 새로운 추정방정식은 다음과 같게 됨.

$$\ln c_i = \alpha z_i + \beta \ln y_i^R + \delta D_i + u_i$$

이제 $\sigma_{SE}^2, \sigma_{EE}^2$ 을 각각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소득추정식에서의 분산이라고 할 때 축소보고비율의 상한과 하한은 각각 다음과 같게 됨.

$$\ln \bar{k}_u = \delta/\beta + 0.5(\sigma_{SE}^2 - \sigma_{EE}^2)$$

$$\ln \bar{k}_l = \delta/\beta - 0.5(\sigma_{SE}^2 - \sigma_{EE}^2)$$

1.2 소득지출접근법을 이용한 연구결과

- Pissarides and Weber(1989)방법을 사용하여 자영업자 소득의 축소보고율에 대한 추정이 이루어졌음.
- 영국의 경우 Pissarides and Weber(1989)는 자영업자의 서베이에서 응답하는 소득보다 55%가 높다고 추정하였음. Cullian(1997)은 1987년에는 과소보고율이 19~23%, 1992년에는 23~3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였음. Baker(1993)는 1978년과 1991년 사이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실제소득은 보고소득보다 1.3배~1.5배 많은 것으로 추정하였음. 뚜렷한 시간추세는 없었으나 과소보고의 규모는 직업과 산업에 따라 매우 차이가 컸음.
- Apel(1994)는 스웨덴의 경우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은 서베이에서 응답하는 소득보다 25%가 높다고 추정하였음.

- o Johansson(2000)은 핀란드의 경우 자영업자의 평균축소보고율이 27%라고 분석하였음.
- o 캐나다의 경우 Mirus & Smith(1996)는 자영업자의 축소보고율이 평균 12.5%라고 추정하였음. Schuetze (2003)의 경우에도 축소보고율이 개인과 산업에 따라 매우 상이함을 보였음.

<표 III-1> 캐나다 자영업가구의 소득축소보고율(단위:%)

구분		하한	상한
기간별	1969	0.14	0.26
	1974	0.06	0.18
	1984	0.09	0.21
	1986	0.11	0.23
	1990	0.12	0.24
	1992	0.15	0.28
가구주 교육별	9년 미만	0.08	0.19
	약간의 2차교육	0.13	0.26
	약간의 2차 후교육	0.24	0.38
	2차후 교육	-0.01	0.10
	대학교육	0.12	0.24
가구주 연령별	25-34	0.16	0.29
	35-44	0.16	0.29
	45-54	0.01	0.13
	55-64	-0.05	0.06
가구주 직업별	사무 및 행정	0.10	0.20
	전문가 및 기술자	0.09	0.20
	판매	0.02	0.12
	서비스	0.38	0.52
	제조업	-0.04	0.05
	건설	0.39	0.53
	기타 직업	0.02	0.12

자료 : Schuetze (2003)

1.3 조세감시데이터를 이용한 연구

- 다음의 <표 III-2>는 미국의 경우 1인자영자의 축소보고정도를 보여주고 있음. 1985년의 경우 전체 축소보고율은 23%에 달하며, 연령별 산업별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III-2> 미국 1인자영자의 축소보고(단위:10억불)

Schedule C에 속한 그룹		정확한 세금규 모	축소보고한 세 금규모	축소보고율
총 수입 기준	\$25,000 미만	2.91	1.12	39
	\$25,000-\$100,000미만	10.91	3.09	28
	\$100,000이상	18.45	3.24	18
	전체	32.27	7.45	23
산업	생산	6.42	1.56	24
	농업	1.31	0.24	18
	도매	1.42	0.27	19
	소매	0.28	0.09	31
	고정장소에서의 판매	3.71	1.43	39
	금융	3.60	0.56	16
	교통	1.24	0.45	36
	서비스	14.28	2.86	20
	합계	32.27	7.45	23
소득종 류	총수입	452.1	10.2	2.3
	총소득	258.6	12.6	4.9
	순소득	94.8	23.7	25.0

주 : 산업에서 생산은 건설업과 제조업을 포함하며, 농업은 임업과 수산업을 포함하
며, 금융은 부동산과 보험을 포함하며, 교통은 통신과 전기, 수도를 포함하며,
서비스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발사 등을 포함함.

자료 : 미국 IRS의 1985년 TCMP데이터

2. 국내연구

2.1 소득지출방법을 이용한 연구결과

□ Hyun and Yoo(2002),

-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소득을 역추정하는 방법을 택함. 먼저 근로자들의 소비함수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비함수가 같다는 가정 하에서 소비액이 알려진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추정함. 이 때 지하경제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정의함.

$$\frac{(\sum_{i=1}^N \hat{Y} - \sum_{i=1}^N Y)}{\sum_{i=1}^N \hat{Y}}$$

- LIS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함.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표 III-3> LIS데이터를 이용한 각국의 지하경제규모

구분	년도	지하경제의 규모
한국	1996	20.31
대만	1995	16.52
독일	1983	8.09
이태리	1995	19.16
스페인	1990	50.54
이스라엘	1992	31.68
러시아	1995	74.94
헝가리	1994	56.86

□ 현진권, 김용대(2003)

- 1996년과 2000년의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론은 Hyun & Yoo(2002)와 동일함.
- 분석결과 과소보고 규모의 크기는 1996년에는 20.31%였으나, 2000년에는 16.52%로 과소보고의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이철인(1998)

-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94년과 1995년의 사업소득자의 탈루소득을 추정하였음. 기본적으로 소비지출접근법을 사용하였음.
-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표 III-4> 대우패널데이터를 이용한 탈루소득 추정결과

구분	변수	평균	분산	최소값	최대값
1994년	보고소득	172.97	114.39	10.00	1,000.00
	추정소득1	358.88	465.34	8.83	3,840.96
	추정소득2	386.22	512.28	8.41	4,564.22
	탈루액1	185.90	426.02	-938.88	3,690.96
	탈루액2	211.44	460.37	-941.56	3,541.25
1995년	보고소득	208.47	128.48	3.00	997.00
	추정소득1	376.44	425.61	11.01	2,779.28
	추정소득2	380.76	435.80	11.08	2,889.52
	탈루액1	167.97	399.71	-867.25	2,374.82
	탈루액2	172.27	409.63	-866.68	2,589.52

주 : 월평균소득에 대한 추정치이며, 단위는 만원임.

□ 기타

- 한국조세연구원의 추정에 의하면 1993년 2기 기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현실화율이 52.2%로 나타났다.

2.2 한국의 추정결과에 대한 평가

□ 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검토

- 기존 한국에서의 연구에 사용된 추정방법은 Pissarides and Weber(1989)방법과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상이한 방법임. 먼저 지출과 소득으로 구성된 간단한 소비함수를 상정함.

$$\text{<식 1> } C_i = \alpha_1 + \beta_1 Y_i + \varepsilon_{1i}$$

<식1 >에서 C_i, Y_i 는 각각 지출과 소득을 의미하며, ε_{1i} 는 오차항을 의미함.

- 기존의 연구들은 먼저, 근로자가구의 소득과 지출자료를 이용하여 <식 1>에서 α_1, β_1 의 추정량, $\hat{\alpha}_1, \hat{\beta}_1$ 을 추정함. 그리고 비근로자가구의 경우에도 이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가정 하에서 다음의 <식 2>를 이용하여 비근로자가구의 지출로부터 소득을 추정하였음.

$$\text{<식 2> } \hat{Y}_i = -\frac{\hat{\alpha}_1}{\hat{\beta}_1} + \frac{1}{\hat{\beta}_1} C_i$$

- 그러나 <식 1>에서 <식 2>의 도출과정은 지출과 소득간의 관계가 확정적인 관계(deterministic relation)라는 선형적인 가정에 근거한 것임.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출을 설명변수로 하고, 소득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음의 회귀방정식을 상정함.

$$\text{<식 3> } Y_i = \alpha_2 + \beta_2 C_i + \varepsilon_{2i}$$

<식 1>과 <식 3>에서 β_1, β_2 에 대한 최소자승추정량은 다음과 같음.⁵⁾

$$\hat{\beta}_1 = Cov(Y, C) / Var(Y)$$

5) 분산과 공분산은 모두 표본공분산과 표본분산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는 모집단에서의 기울기의 관계에서도 성립한다.

$$\widehat{\beta}_2 = Cov(Y, C) / Var(C)$$

o 이 때 양자의 관계는 다음과 같게 됨.

$$\widehat{\beta}_2 = \frac{1}{\widehat{\beta}_1} \frac{(Cov(Y, C))}{V(Y)V(C)} = \rho^2 \frac{1}{\widehat{\beta}_1}$$

단, ρ 는 Y, C 의 상관계수임.

o 따라서 상관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widehat{\beta}_2 = 1/\widehat{\beta}_1$ 임을 알 수 있음. <식 2>를 이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경우 암묵적으로 $\widehat{\beta}_2 = 1/\widehat{\beta}_1$ 임을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소비와 소득간의 상관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식 2>를 이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법은 통계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음⁶⁾⁷⁾.

※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도 있음. <식 1>에서 최소자승추정량은 구한다는 의미는 $E(\varepsilon_{1i} | Y_i) = 0$ 이라는 가정을 전제하고 있음. 이제 <식 1>을 다음과 같이 재배열해봄.

$$\text{<식 4> } Y_i = -\frac{\alpha_1}{\beta_1} + \frac{1}{\beta_1} C_i - \frac{1}{\beta_1} \varepsilon_{1i}$$

그런데 <식 4>에서는 설명변수와 오차항의 평균독립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즉 $E((1/\beta_1)\varepsilon_{1i} | C_i) \neq 0$. 따라서 <식 4>를 기반으로 하는 최소자승추정량은 일치추정량이 될 수 없음.

※ 강석훈, 박찬용(2003) 참조

6)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은 상수항의 경우에도 쉽게 알 수 있다.

7) 이는 다음과 같이 해석가능하다. <식 1>에서 소득은 ε_{1i} 와 상관관계가 없지만(실제로는 없다고 가정되었지만), 지출은 이미 오차항 ε_{1i} 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식 1>을 추정하는 것은 특정한 지출수준에 대응한 소득과 ε_{1i} 의 결합확률변수의 값이 추정될 뿐 ε_{1i} 를 분리하여 소득만의 값을 추정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현실에서 ε_{1i} 가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ε_{1i} 를 분리해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 추정 데이터의 한계에 대한 검토

- 분석방법론상의 한계점 이외에도 데이터 사용상의 한계가 있음. 즉, 근로자가구와 자영자가구의 소득 및 소비지출 관계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받아 들이더라도 자영자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이 가구전입소득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근로자가구와는 달라질 수 밖에 없음.
- 즉, 가구전입소득의 개념에 의하면 가구의 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입된 소득이므로 기본적으로는 가구지출액과 같아지게 됨. 따라서 가구전입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자영자가구는 근로자가구에 비해 당연히 소비성향이 높게 나타나게 될 것임. 이러한 높은 가구소비성향에 근거하여 자영업자의 소득이 근로자가구보다 높다고 추정하는 것은 가구전입소득의 개념을 반영하지 않은 분석결과임.

3. 시사점

□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베이에서 자영업자들의 소득축소보고 규모에 대해 연구한 결과,

- 선진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에서 서베이에서도 축소보고현상이 예외 없이 발견되고 있음.
- 그러나 축소보고의 정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상이하며, 또한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산업별, 연령별에 따라 매우 상이함.

※ 이러한 현상은 소득지출접근법에 의한 연구결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 Bajada and Schneider(2003)는 현금수요함수와 MIMIC(multiple indicators and multiple causes model)을 이용하여 아시아국가의 지하경제를 추정하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소득지출접근법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표 III-5> 아시아 각국의 지하경제규모

구분	지하경제규모(GDP대비 비중)			지하경제인구(1998/1999평균)		
	1989/1990	1994/1995	2000/2001	지하경제인구수	공식적인 경제인구활동 대비 비중	전체 인구 대비 비중
호주	15.0	15.0	14.0	1.1	11.0	5.8
방글라데시	26.2	30.2	34.9	17.72	27.7	14.1
중국	-	10.2	13.4	152.43	20.5	12.3
홍콩	13.0	15.3	16.5	0.46	13.2	8.1
인도	18.1	20.3	22.8	117.23	27.2	11.9
인도네시아	10.4	15.4	18.9	30.74	31.3	15.1
이스라엘	14.3	17.1	21.9	0.51	16.7	8.2

일본	8.8	10.6	11.3	4.76	7.1	3.8
한국	19.4	22.4	26.7	4.51	19.6	9.7
말레이시아	26.4	28.3	30.9	2.25	25.1	10.1
네팔	32.6	33.4	37.4	3.34	30.4	14.4
뉴질랜드	9.2	11.3	12.9	0.18	9.2	4.7
파키스탄	28.2	31.4	35.9	15.23	31.0	11.6
필리핀	34.2	38.4	42.6	9.82	30.6	13.0
싱가포르	9.4	11.2	13.7	0.21	10.2	6.3
스리랑카	30.4	35.3	43.7	2.54	31.3	13.3
대만	15.3	17.4	19.6	1.95	14.5	8.7
태국	44.2	48.3	51.9	14.83	40.0	20.1
단순평균	20.9	22.9	26.1	21.14	22.0	10.6

□ 한국의 경우에도 축소보고 정도에 대한 연구가 일부 있었으나, 선진국과 같이 축소보고가 있으며, 축소보고의 정도는 자영자들의 성격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는 결과를 얻었음.

○ 다만 축소보고의 규모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상이하며, 특히 기존 연구에서 사용하는 방법론과 데이터 상의 한계로 인하여 서베이에서 축소보고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절대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불가능함.

<표 III-6> 소득세 세무조사 실적

연도	조사건수 (건)	추징세액(억원)	1인당추징세액 (백만원)
1998	2,504	550	21.9
1999	3,231	788	24.3
2000	1,073	282	26.2
2001	1,928	520	26.9
2002.6	1,022	313	30.6

자료 : 재정경제부, 국회답변자료, 2002.6

IV. 도시가계조사 내부의 정합성 검토

※ 이하의 내용은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도시가계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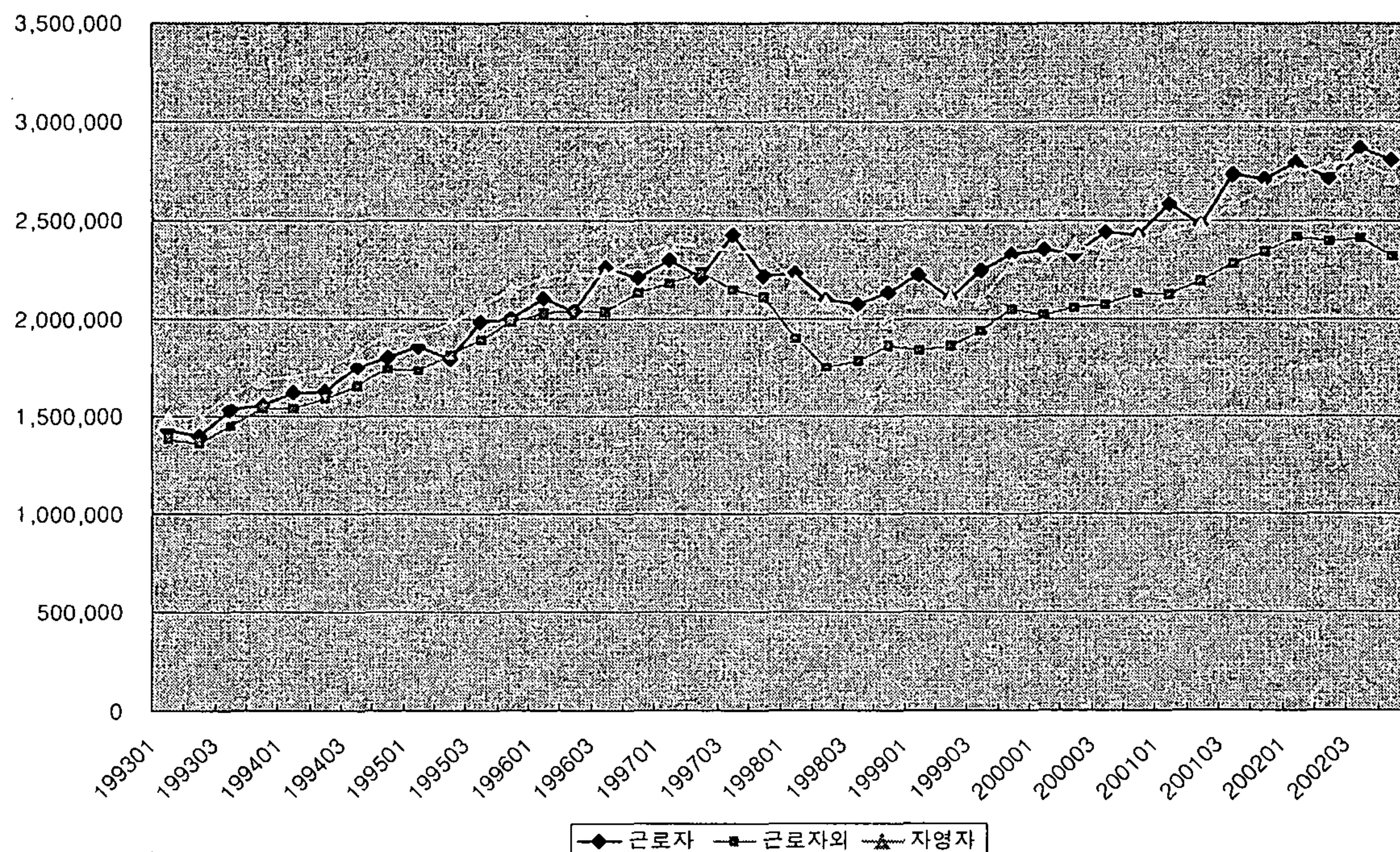
1. 소득추이

□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로 월평균 소득을 보면 근로자가구와 자영자가구가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1998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자영자소득이 평균적으로 근로자가구에 비하여 높지만 1998년부터는 자영자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1997년까지 근로자소득 대비 자영자소득은 평균 1.0514배이지만, 1998년 이후는 동 비율이 0.9746으로 감소하였음.

※ 지금 상태에서 1998년 이후의 변화가 현상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표본구성의 변화에 기인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그림 IV-1> 가구주 종사상 지위별 소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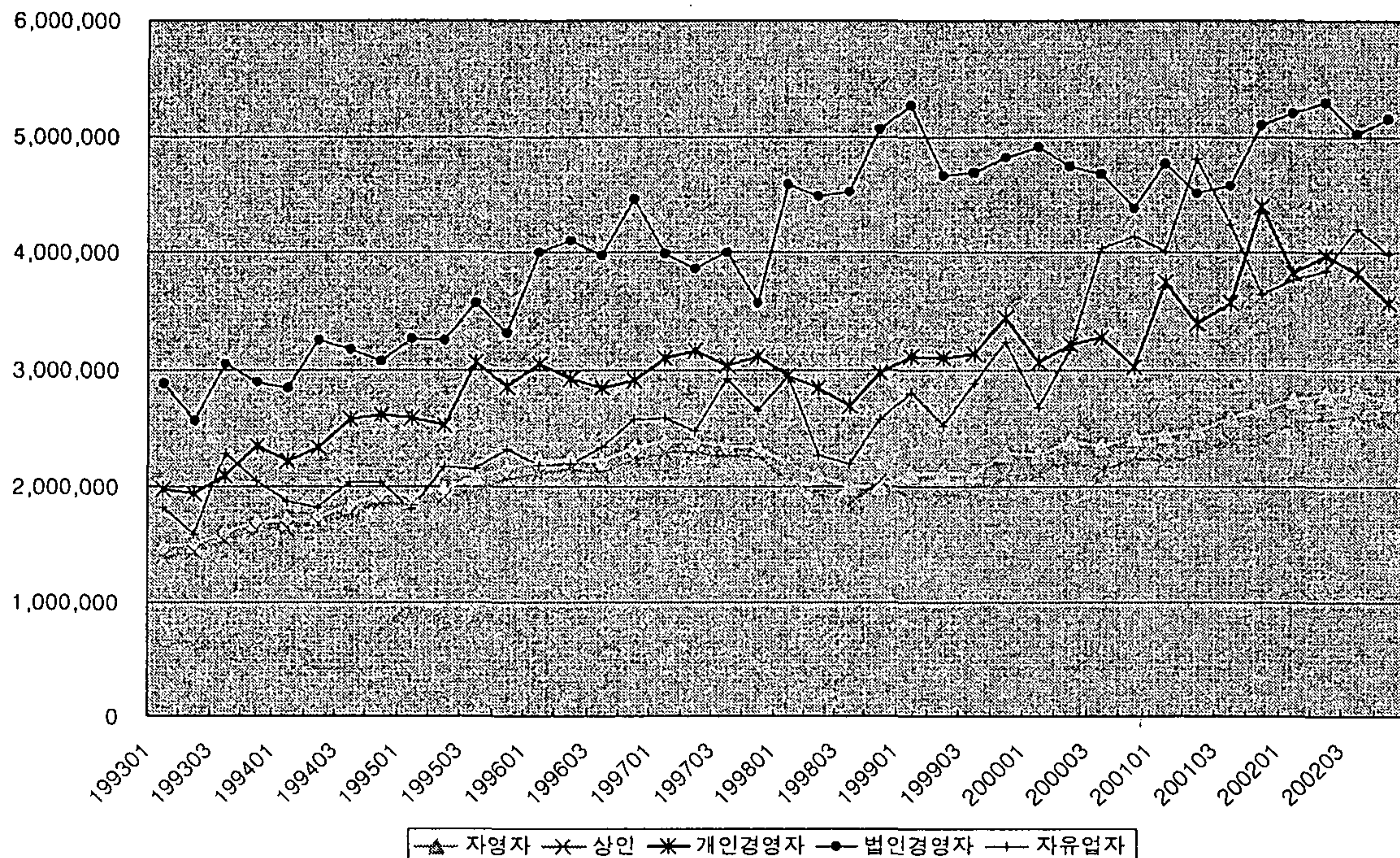


□ 자영자 소득의 추이는 전체 자영자의 90.9%를 차지하는 상인의 소득과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으나, 역시 1998년 이후부터 전체 자영자와 상인의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음.

※ 자영자 중에는 전기간 평균 90.9%가 상인이며, 이외에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가 각각 5.5%, 2.2%, 1.4%를 차지하고 있음.

○ 전체 자영자대비 상인의 소득은 1997년까지는 평균 0.9568수준이었으나, 1998년이 후에는 0.9250으로 하락하였음.

<그림 IV-2> 자영자 종류별 소득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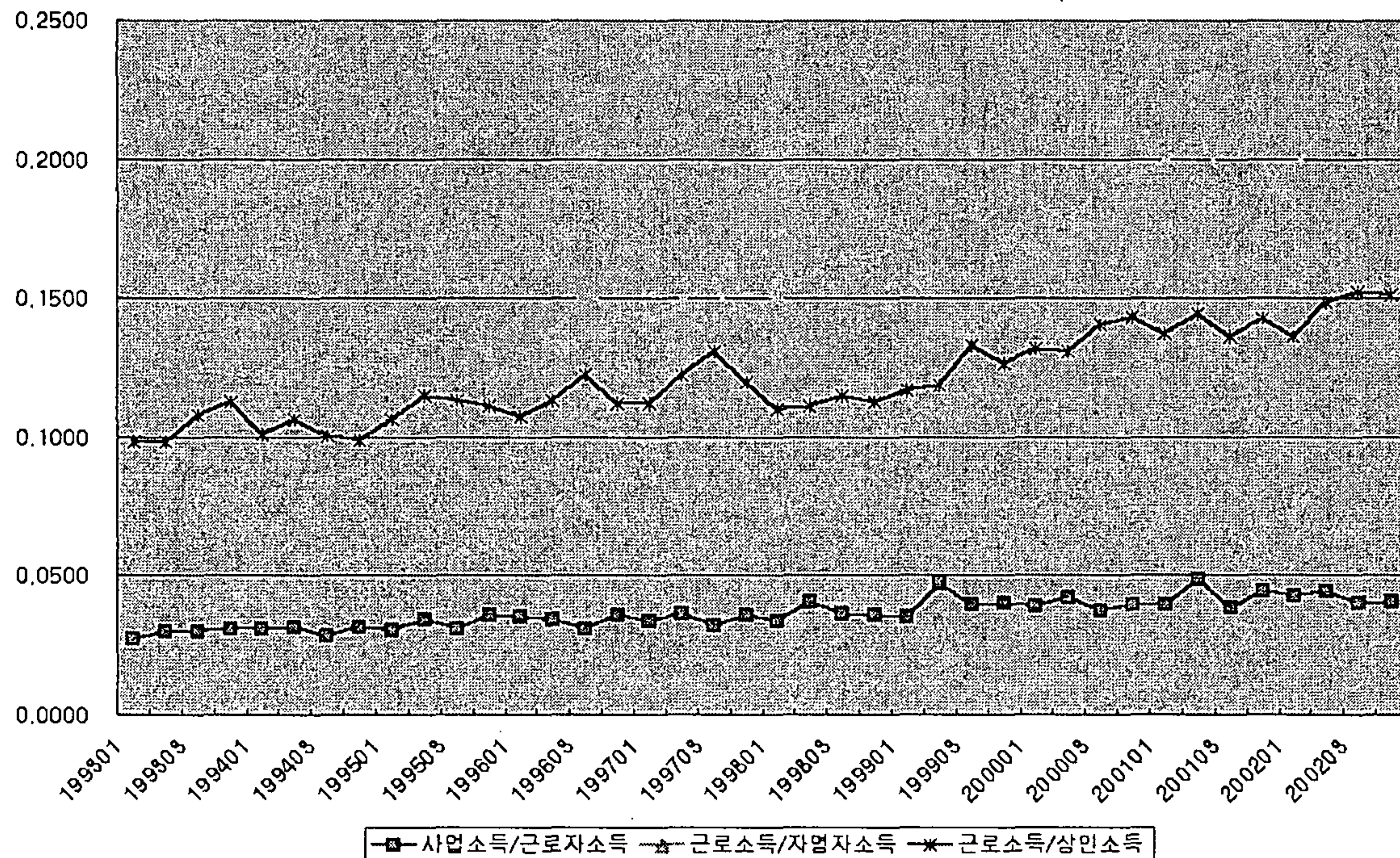
□ 근로자가구의 경우 사업소득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자영자가구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근로자가구의 경우 사업소득의 비중이 1993년에는 2.96%였으나, 2002년에는 4.20%로 증가하였음. 자영자 및 상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의 비중이 1993년에는 각각 12.39%, 10.42%였으나, 2002년에는 20.87%, 14.70%로 증가하였음.

☞ 향후 자영자가구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 법인경영자의 경우 가구소득대비 근로소득의 비중이 전기간 평균 85.0%이며, 사업소득은 6.6%에 불과함. 특히 동 비중은 1993년에는 근로소득 72.1%, 사업소득 15.6%였으나, 2002년에는 각각 87.5%, 2.6%에 변화하였음 ->법인경영자를 자영자가구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그림 IV-3> 가구별 소득종류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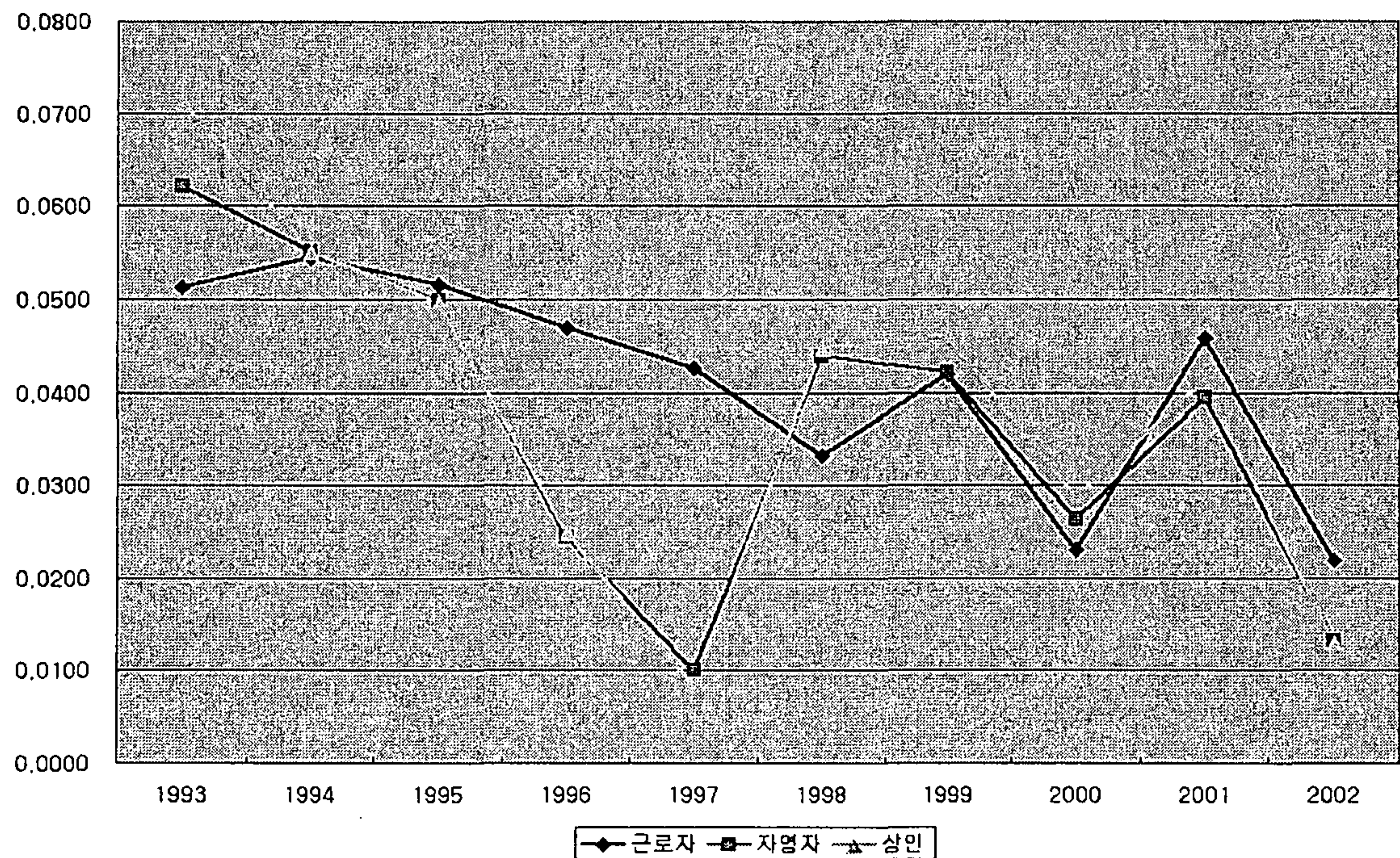
□ 연내에서 분기별소득의 변이계수(분기별 소득의 표준편차/분기별 소득의 평균)는 1997년 이전에는 자영자가구가 근로자가구보다 오히려 낮았으며, 1998년 이후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01~2002년에도 자영자가구가 근로자가구보다 낮았음(<그림 IV-4>참조).

- 자영자가구와 근로자가구의 소득의 계절성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음. 다만 1998년 이후에는 양자가 매우 유사한 형태로 움직인다는 부분은 설명하기가 어려움.
- 또한 계절성의 절대수준이 하락하는 모습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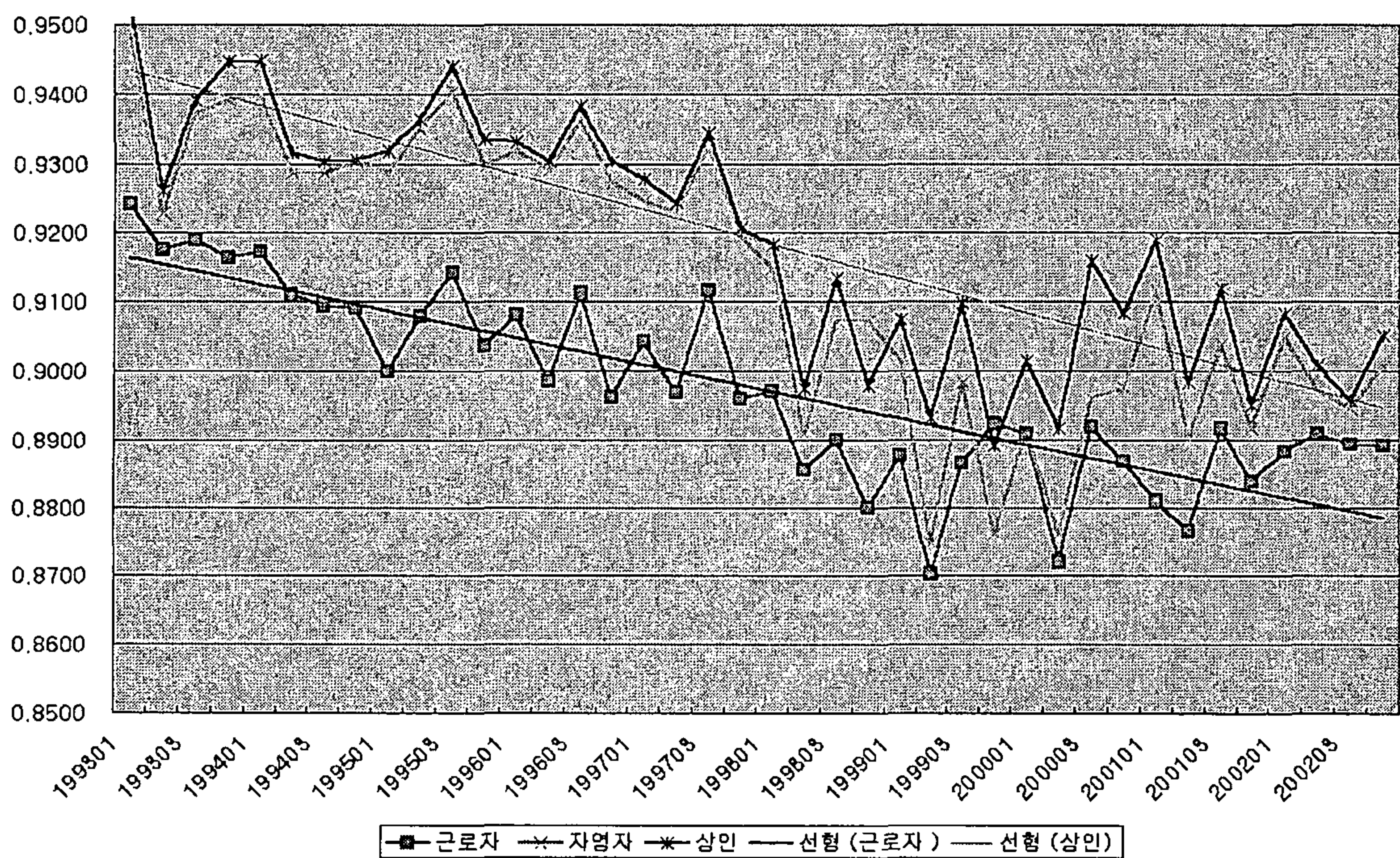
□ 소득 대비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은 근로자가구와 자영자가구 모두 추세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그림 IV-5>, <그림 IV-6> 참조).

- 그러나 자영자 가구를 종류별로 보면 상인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및 자유업자의 경우에는 매우 심한 변동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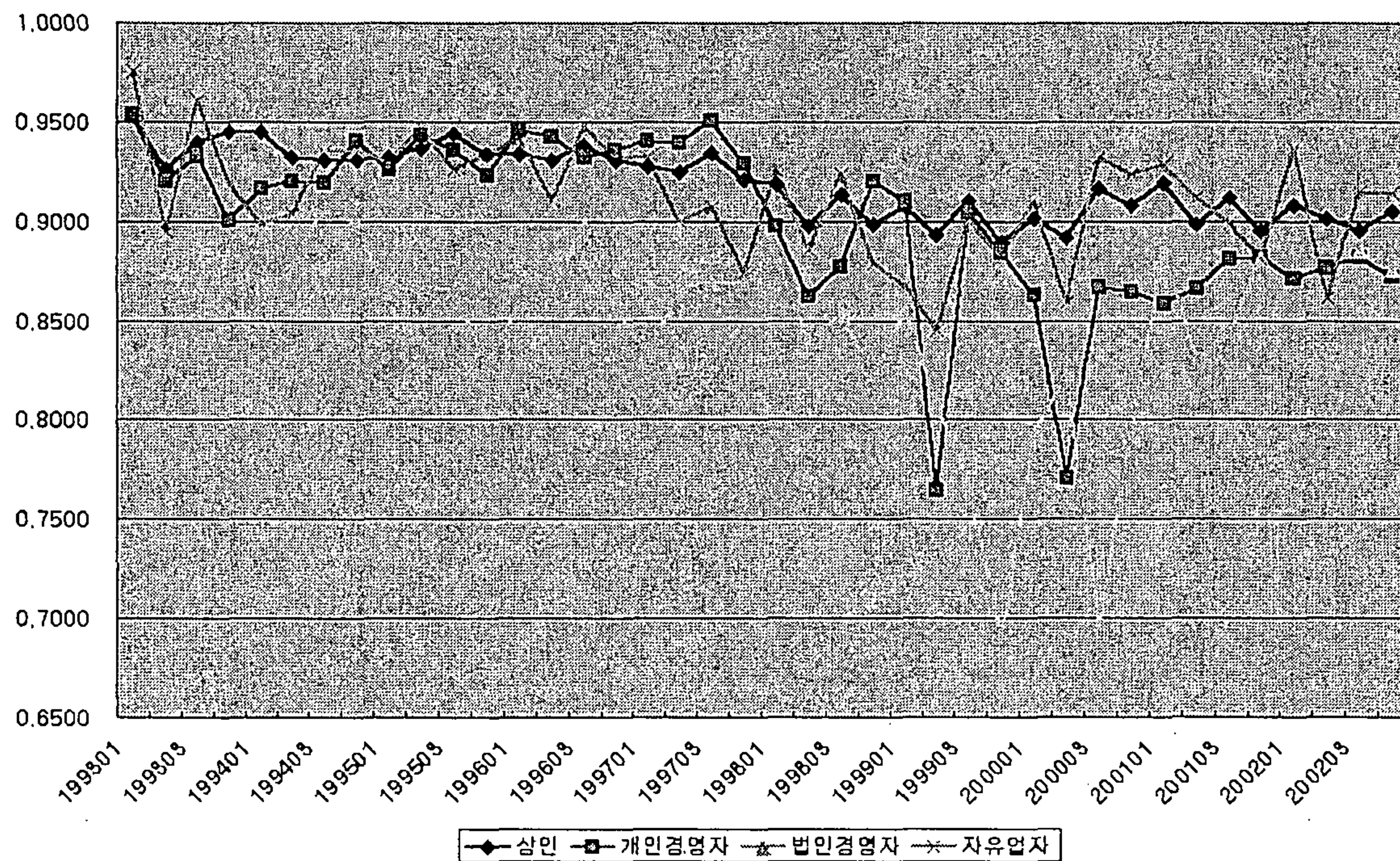
<그림 IV-4> 가구 종류별 분기별 소득 변이계수 추이



<그림 IV-5>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의 소득대비 가처분 소득의 비중 추이



<그림 IV-6> 자영자가구 종류별 소득대비 가처분소득의 비중



2. 소득과 지출

2.1 소득대비 가계지출

□ 가구소득대비 가계지출비율의 경우 근로자가구와 자영자가구는 각각 평균 0.7547, 0.8080을 기록하여 자영자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음.

○ 자영자 중에서도 상인은 0.7995로 나타났으나, 개인경영자와 법인경영자의 경우에는 0.8511, 0.8797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을 보임.

☞ 자영자가구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현상은 예상된 일반현상임. 개인경영자와 법인경영자의 경우는 소득의 축소보고율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기타 경우에 비율차이의 해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가구소득 대비 가계지출비율은 1998년 이후에 특히 자영업자가구에서 대폭 상승하였음.

○ 자영자가구의 경우 1997년까지는 평균 0.7660이었으나, 1998년 이후에는 0.8501로 대폭 상승하였음(동 기간 중 근로자 가구의 경우에는 0.7417에서 0.7677로 상대적으로 소폭 상승하였음).

○ 특히 개인경영자와 법인경영자의 경우에는 1998년 이후에 동 비율이 무려 0.9015, 0.8971로 상승하였음(자유업자의 경우 동 비율이 오히려 하락하였는데, 전 분석에 걸쳐서 자유업자는 매우 특이하거나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결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표본수가 매우 적음에 따라 극단치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이거나, 자유업자의 경우 소득추정이 어렵기 때문일 것임).

<표 IV-1> 가구소득 대비 가계지출 비율

구분	전가구	근로자	근로자외	자영자	상인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1993-1997년	0.7614	0.7417	0.7966	0.7660	0.7574	0.8006	0.8623	0.8136
1998-2002년	0.8127	0.7677	0.8797	0.8501	0.8415	0.9015	0.8971	0.6118
전기	0.7871	0.7547	0.8381	0.8080	0.7995	0.8511	0.8797	0.7127

□ <그림 IV-7>에 의하면 일부 자영업자가구의 경우 가계지출이 가구소득을 초과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음.

○ 예를 들어 1997년 1분기 자유업자는 1.25, 2000년 3분기 법인경영자는 1.09, 2002년 1분기 개인경영자는 1.15로 나타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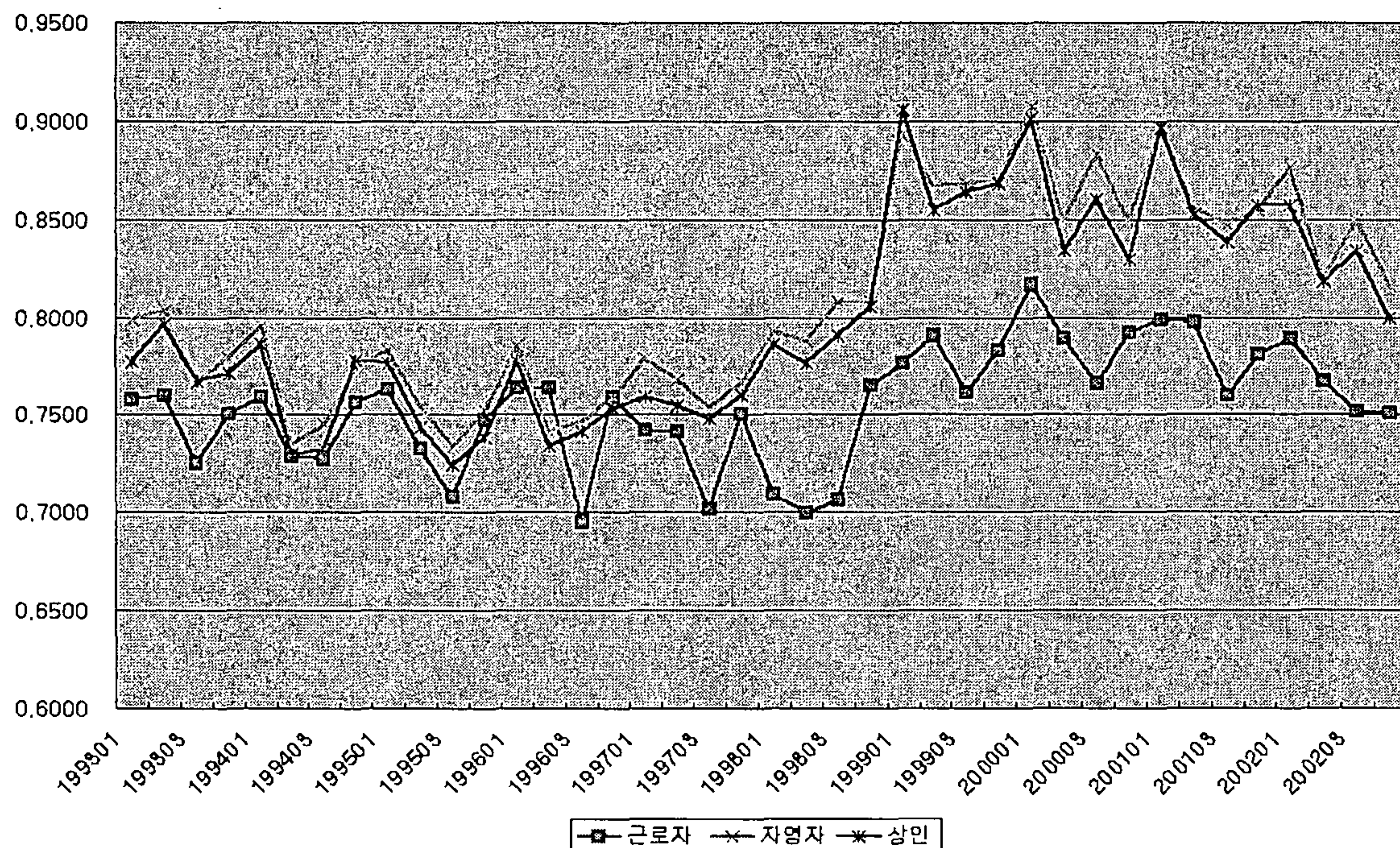
☞ 1998년 이후에 가구소득 대비 가계지출이 비율이 특히 자영업자에서 크게 증가

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표본구성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자영업자들의 경우에 1998년 이후에 저축(가구소득/가계지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한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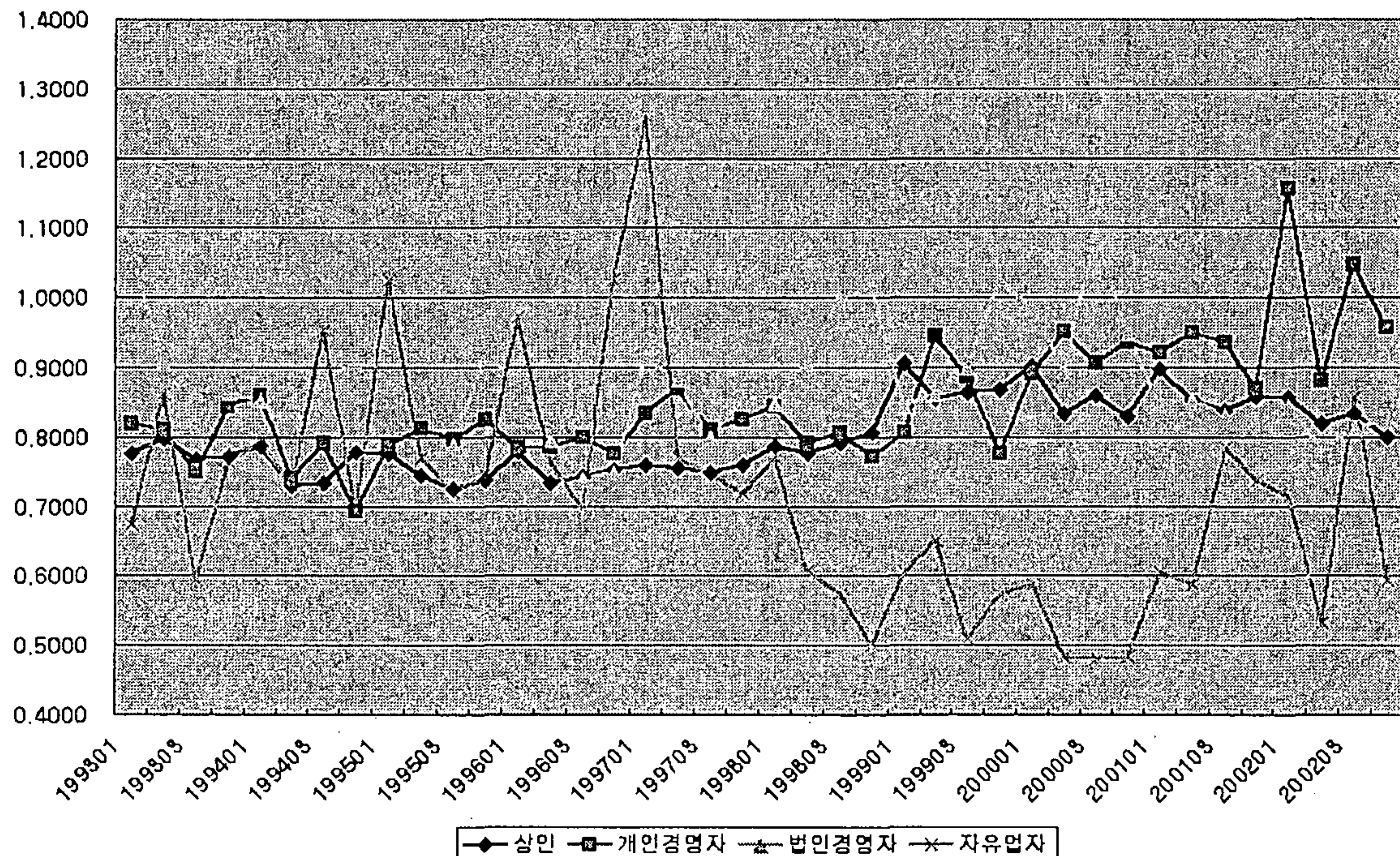
☞ 가구소득 대비 가계지출로 판단할 때 자영자가구 중 상인을 제외한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그리고 자유업자의 경우에는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할 것임.

<그림 IV-7> 가계소득 대비 가계지출 비율

(1) 근로자가구와 자영자가구



(2) 자영자가구 종류별



2.2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

-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은 근로자가구는 전기간 평균 0.7266, 자영자가구는 0.8232로 나타나 가구소득 대비 가계지출의 비율보다 격차가 확대되었음.
-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은 근로자가구의 경우 1997년까지는 평균 0.7157에서 1998년 이후는 0.7380으로 상승하였으나, 자영자가구의 경우에는 0.7488에서 0.8328로 대폭 상승하였음.
-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제외한 부분을 저축이라고 정의하면,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저축률이 전기간 평균 27.32%이지만, 자영자가구의 경우에는 20.81%에 불과함. 특히 개인경영자나 법인경영자의 경우에는 동 비율이 각각 16.30%, 13.82%에 불과함.
- 가처분소득 대비 식료품비의 비중을 보면 근로자가구의 경우 전기간 평균 0.2037, 자영자가구의 경우에는 0.2232로 나타나 2%p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개인경영자와 법인경영자의 경우에도 근로자가구보다 식료품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가구소득 대비 지출의 비율이 자영자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자영업자의 저축률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는 점, 개인경영자나 법인경영자의 경우에 식료품비의 비중이 근로자가구에 비하여 오히려 높게 나타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소득의 축소보고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음.

<표 IV-2> 가처분소득 대비 소비지출의 비율

구분	전가구	근로자	근로자외	자영자	상인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영업자
1993-1997년	0.7396	0.7157	0.7809	0.7488	0.7403	0.7861	0.8421	0.7894
1998-2002년	0.7896	0.7380	0.8655	0.8328	0.8247	0.8879	0.8814	0.8601
전기간	0.7646	0.7268	0.8232	0.7908	0.7825	0.8370	0.8618	0.8293

<표 IV-3> 가처분소득 대비 식료품지출의 비율

구분	전가구	근로자	근로자외	자영자	상인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영업자
1993-1997년	0.2147	0.2056	0.2269	0.2200	0.2208	0.2155	0.2209	0.1948
1998-2002년	0.2140	0.2001	0.2354	0.2259	0.2290	0.2231	0.2126	0.2140
전기간	0.2143	0.2037	0.2315	0.2232	0.2252	0.2195	0.2168	0.2043

V. 외부 자료와의 정합성 검토

1. 한국은행 국민계정과 비교⁸⁾

□ 국민계정상의 혼합소득과 자영업소득은 개념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양자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양자의 비율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비교대상 : 국민계정에서는 제도부문별 소득지출계정에서 개인(국민계정의 개인에는 소규모 비금융개인기업이 포함됨)의 영업잉여와 준법인기업소득(준법인기업의 소득은 법인기업으로 분류됨. 준법인기업소득이란 준법인기업의 경상잉여 중에서 소유주에게 이전된 부분을 의미함)이 통계청 자영업자의 소득개념과 가장 가까움.
- 그런데 국민계정 개인부문의 영업잉여에는 자가소유자자의 의제임대소득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 한국은행 77산업분류에서 51.주택소유산업의 부가가치 중에서 간접세 등을 제외하여 개인부문의 영업잉여에 포함됨. 이 때 제외되는 간접세는 등록, 취득세 등을 의미하는데 2002년의 경우 주택소유산업에서 산출된 부가가치 중에서 개인부문의 영업잉여에 귀속되는 비율은 83.9%였음. 동 비율은 매년 크게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도에 동일하다고 가정함.
- 최종적으로 국민계정 중에서 개인부문의 영업잉여에서 주택소유관련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준법인기업소득의 합이 통계청 자영업소득과 가장 유사한 개념이 됨.

□ 1993년~2002년 동안 도시가계조사의 가구평균소득증가율은 6.96%이며, 한국은행 국민계정의 개인부문 소득은 8.48% 증가하였음.

- 도시가계조사에서 근로소득과 자영업소득을 합친 소득은 평균증가율 6.37%를 기록하였으며, 국민계정에서 피용자보수와 혼합소득을 합친 소득은 평균증가율 7.80%를 기록하여, 국민계정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음.
- 도시가계조사에서 근로소득증가율은 평균 6.45%였으며, 국민계정에서 피용자보수 증가율은 평균 8.85%를 기록하여 국민계정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음.
- 도시가계조사에서 자영소득증가율은 평균 6.21%였으며, 국민계정에서 혼합소득의 증가율은 4.86%로 나타나 도시가계조사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났음.

☞ 도시가계조사의 자영업소득이 국민계정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국민계정이 조세 등의 자료와 연관성이 크고, 조세 등의 관련 자료에서 자영업자의 소득이 과소하게 보고되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이에 따라 도시가계조사에서 자영업자

8) 도시가계조사와 국민계정을 비교하는 데에는 많은 주의를 요함. 양자의 상호비교를 위해서는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분담금 등 미시적인 조정을 하여야 하는데 본고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차이만 반영함. 한편, 원칙적으로 도시가계조사에서 전체 총합을 구하고 이를 국민계정과 비교하여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총합대신 평균과 총합의 증가율을 비교하였음.

가 과소보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법관련 소득보고보다는 상대적으로 축소보고 폭이 작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임.

□ <그림 V-1>과 <표 V-1>에 의하면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소득과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는 대체로 유사한 수준에서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런데 도시가계조사의 자영업소득과 국민계정의 혼합소득은 매우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즉, 도시가계조사의 자영업소득은 1997년에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8년에는 마이너스증가율을 기록하였고, 이후 1999년부터 플러스로 상승 반전하였음에 반해, 국민계정의 혼합소득은 1997년과 1998년에도 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하였고, 이후 1999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여 2000년부터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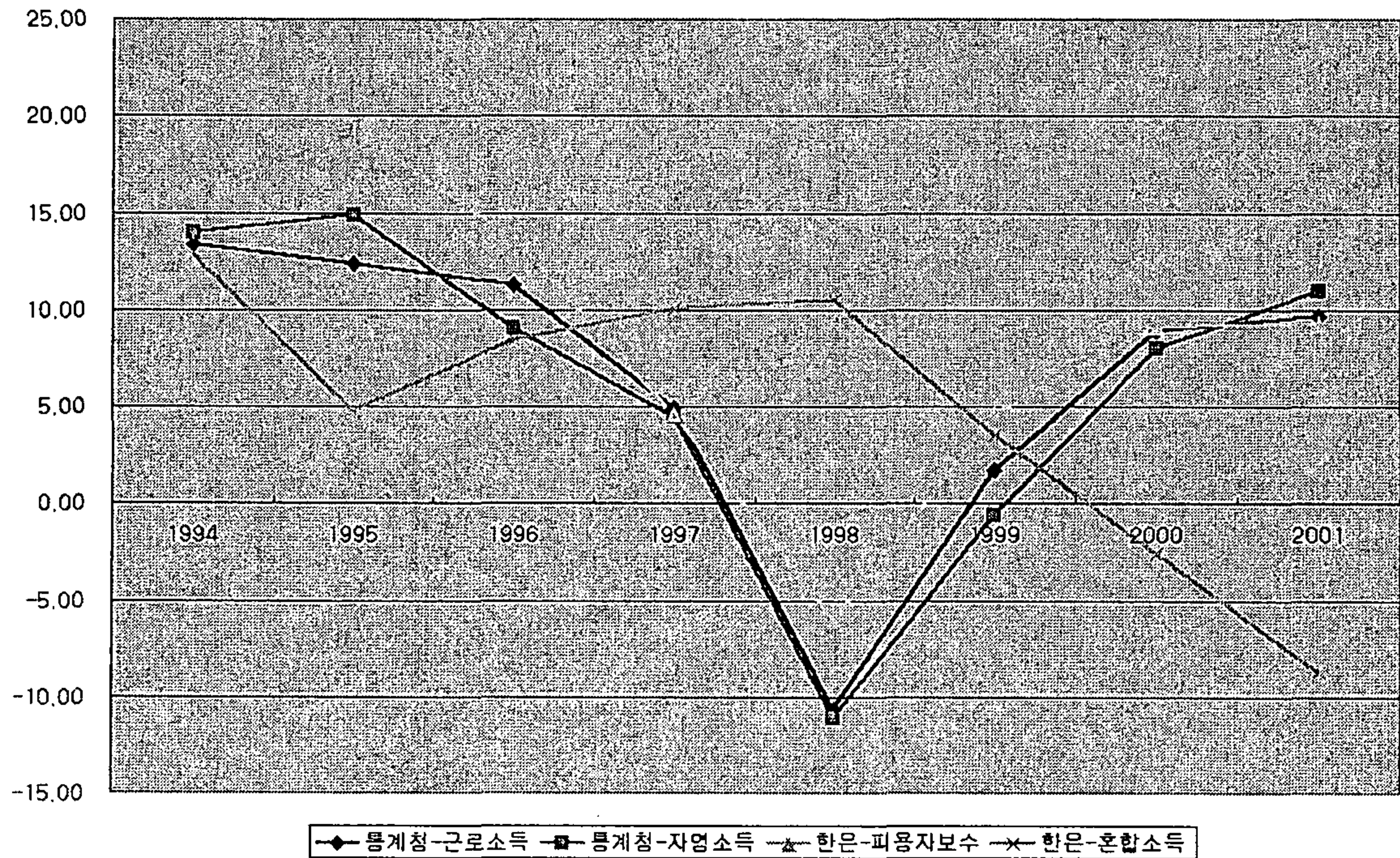
☞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소득은 국민계정의 추세와 대체로 일치하지만 자영업소득은 국민계정의 추세와는 반대로 나타남. 1998년을 기준으로 한국경제가 회복되는 국면이었음을 감안하면, 도시가계조사의 자영업소득이 보다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임.

□ <표 V-1>에 의하면 도시가계조사에서 전체 소득 중 근로소득과 자영업소득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은 0.8474로 나타났으며, 국민계정에서 대응되는 소득의 비중도 0.8421로 나타나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음.

○ 그러나 구성비를 보면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근로소득의 평균비중이 0.5848임에 반하여 국민계정에서는 피용자보수의 평균비중이 0.6376으로 나타나 국민계정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반해 도시가계조사에서 자영소득의 평균비중은 0.2625, 국민계정 혼합소득의 평균비중은 0.2045로 나타나 도시가계조사에 자영소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개별 소득의 상대 비중에 대해서는 참값을 알기 어려우나, 한국은행의 추계치가 주로 조세관련 자료로부터 추계된다는 점, 개인부문의 경우에는 추계과정에서 잔여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가계조사가 보다 현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을 것임.

<그림 V-1> 국민계정과 도시가계조사의 소득 증가율 비교



<표 V-1> 국민계정과 소득 증가율 비교(%)

구분	통계청				한국은행			
	가구소득	근로+자영	근로소득	자영소득	개인소득	피용자보수+혼합	피용자보수	혼합소득
1994	14.73	13.51	13.32	13.93	17.41	15.33	16.23	12.81
1995	12.82	13.14	12.34	14.90	16.67	15.55	19.26	4.80
1996	12.00	10.56	11.27	9.03	12.52	12.43	13.63	8.48
1997	5.83	4.80	4.93	4.50	7.47	5.87	4.65	10.04
1998	-10.62	-10.77	-10.60	-11.12	2.85	-2.17	-6.03	10.50
1999	4.36	0.98	1.67	-0.56	0.74	4.36	4.65	3.55
2000	7.56	8.66	8.95	8.01	5.62	6.05	9.11	-2.56
2001	9.00	10.09	9.71	10.98	4.51	4.97	9.31	-8.75
2002	6.49	7.18	8.06	5.20	-	-	-	-
평균	6.96	6.37	6.45	6.21	8.48	7.80	8.85	4.86

<표 V-2> 국민계정과 소득구성비 비교

(1) 전체소득 비중

구분	통계청			한국은행		
	근로+자영	근로소득	자영소득	피용자보수+혼합소득	피용자보수	혼합소득
1993	0.8735	0.6014	0.2722	0.8775	0.6470	0.2304
1994	0.8643	0.5940	0.2703	0.8619	0.6405	0.2214

1995	0.8667	0.5914	0.2752	0.8536	0.6548	0.1989
1996	0.8555	0.5876	0.2680	0.8529	0.6612	0.1917
1997	0.8472	0.5826	0.2646	0.8402	0.6439	0.1963
1998	0.8458	0.5827	0.2631	0.7992	0.5883	0.2109
1999	0.8184	0.5677	0.2507	0.8278	0.6111	0.2168
2000	0.8268	0.5750	0.2518	0.8312	0.6312	0.2000
2001	0.8351	0.5788	0.2563	0.8349	0.6603	0.1746
2002	0.8405	0.5873	0.2532	-	-	-
전기간 평균	0.8474	0.5848	0.2625	0.8421	0.6376	0.2045

(2) 근로소득+자영업소득 대비 비중

구분	통계청		한국은행	
	근로소득	자영업소득	비용자보수	혼합소득
1993	0.6884	0.3116	0.7374	0.2626
1994	0.6873	0.3127	0.7431	0.2569
1995	0.6824	0.3176	0.7670	0.2330
1996	0.6868	0.3132	0.7752	0.2248
1997	0.6877	0.3123	0.7664	0.2336
1998	0.6889	0.3111	0.7361	0.2639
1999	0.6937	0.3063	0.7382	0.2618
2000	0.6955	0.3045	0.7594	0.2406
2001	0.6930	0.3070	0.7909	0.2091
평균	0.6893	0.3107	0.7529	0.2471

2.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과의 비교

□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소득추계치는 다음과 <표 V-3>에 기록되어 있음.

○ 그러나 동 공단에서 사용하는 소득추계치는 절대적인 수준에서 볼 때 도시가계조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⁹⁾.

<표 V-3>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추이(단위:천 원)

구분	전체	사업장가입자	농어촌지역가입자	도시지역가입자
1999	1,130	1,386	659	956
2000	1,223	1,515	697	1,015(9,062)

9) 물론 국민연금가입자 중 도시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일용직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도시가계조사보다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 또한 연금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이 대상이 되지만,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가구소득이 대상이라는 차이도 있음. 향후 보다 세분화된 자료가 가용한 경우 보다 엄밀한 비교분석이 가능할 것임.

2001	1,337	1,651	760	1,139(9,439)
2002	1,440	1,772	815	1,240(9,694)
2003	1,554	1,904	876	1,352
2004	1,674	2,044	940	1,471
2005	1,799	2,187	1,006	1,569

주 : 도시지역가입자의 ()는 등급별 가입자수를 기준으로 저자가 계산한 실제치임.
 자료 : 국민연금중기재정전망(2001-2005), 국민연금관리공단, 2000, 국민연금통계연보

☞ 향후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보다 세밀화된 자료를 입수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도시가계조사에서 1998년부터 개인별 근로소득과 자영소득을 어느 정도 추출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소득을 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비교할 수도 있을 것임.

☞ 현재 예상되는 바로는 도시가계조사의 자영업자소득이 기타 행정자료보다 높을 것으로 보임(<표 V-4> 참조).

<표 V-4> 1인당 연간 평균소득 및 세액(1997년 귀속분, 단위:천원)

구분	소득액	세액
자영업자 전체	10,848	2,600
판매업	10,060	1,800
음식숙박	8,990	1,600
전문직종사자(전체)	42,785	10,000
변호사	116,440	39,000
연예인	24,125	6,000
의사전체	41,748	10,000
내과, 소아과 등	47,849	11,000
외과	75,000	21,000
치과	32,400	6,000
성형외과	48,800	13,000
산부인과	43,263	12,000
한의사	30,508	6,000

주 : 판매업과 음식, 숙박업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세특례대상자를 제외한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들의 평균치이므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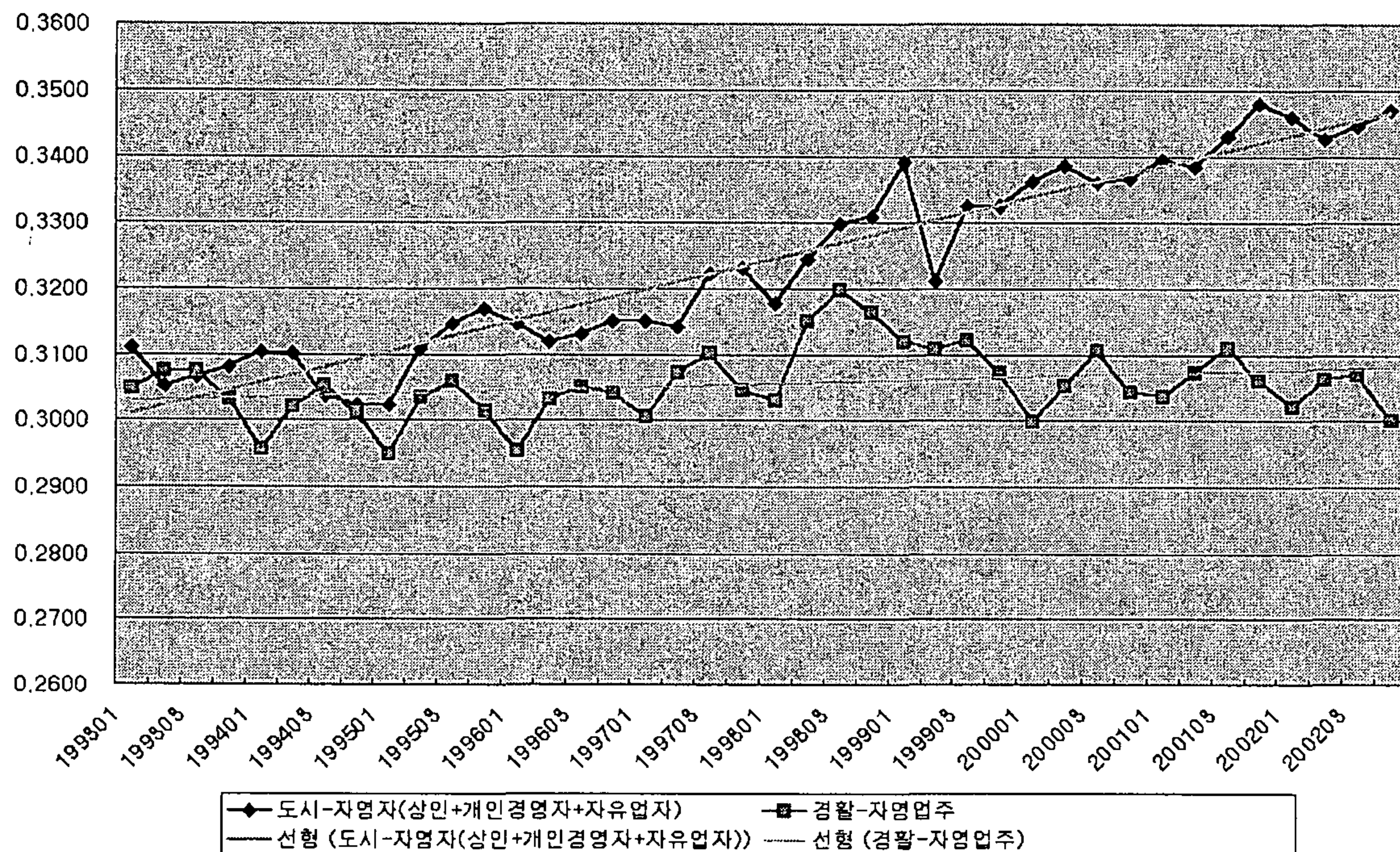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현진권(1999)에서 재인용

3. 경제활동인구조사와의 비교

- <그림 V-2>는 도시가계조사에서 근로자가구와 자영자가구의 합에서 자영자가구가 차지하는 비중과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합에서 자영업주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자영업주의 비중이 대체로 29~31%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으나,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자영자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에는 34~35%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음.

☞ 도시가계조사의 경우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이며,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일반적인 경제활동인구의 종사상 지위이기 때문에 양자의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그러나 도시가계조사에서 자영업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은 현실 정합성에 측면에서 재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음.

<그림 V-2> 도시가계조사와 경제활동조사에서의 자영업비율



4. 가구소비실태조사와의 비교

- 다음의 <표 V-5>는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를 비교하고 있음.
- 1996년의 경우 근로자가구는 도시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구소비실태조사가 월평균 260.0만원으로 나타났지만

도시가계조사에서는 220.0만원에 불과함.

-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사업자가구가 근로자가구에 비하여 평균 1.23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자영자가구가 근로자가구에 비하여 1.04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00년의 경우 근로자가구와 사업자가구 모두 가구소비실태조사보다 훨씬 적은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가구소비실태조사의 근로자 및 사업자가구의 소득은 각각 월평균 258.7만원, 311.2만원으로 나타났는데,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각각 238.6만원, 235.1만원에 불과함.

- 실제로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사업자가구가 근로자가구에 비하여 소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사업자가구가 근로자가구에 비하여 오히려 평균소득이 적은 나타남.

☞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도시가계조사와 가구소비실태조사는 서로 정합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표 V-5> 가구소비실태조사와 도시가계조사의 소득 비교

구분		1996년			2000년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사업자가구	전체가구	근로자가구	사업자가구
가구소비실태조사	총소득	2,275,525	2,118,733	2,600,650	2,613,333	2,586,667	3,111,667
	근로소득	1,308,525	1,893,883	313,983	1,416,125	2,165,000	389,283
	사업소득	734,058	82,867	2,114,933	778,000	100,833	2,456,667
도시가계조사	총소득	2,072,679	2,101,859	2,200,682	2,249,463	2,386,947	2,350,737
	근로소득	1,216,654	1,798,666	302,003	1,270,539	1,978,677	418,071
	사업소득	564,074	71,198	1,709,226	555,400	93,435	1,633,778

주 : 가구소비실태조사는 2인 이상 광역시거주가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임.

5. 전체자영업소득 대비 가구전입소득의 비율에 대한 추정

- 도시가계조사의 자영업자 가구는 가구전입소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자영업소득개념과는 차이가 있음. 이 절에서는 자영업자의 가구전입소득과 전체자영업소득 사이에 어떤 체계적인 관계가 있는 지를 검토하고자 함¹⁰⁾.
- 자영업가구들의 가구전입소득과 전체자영업소득이 동시에 조사된 자료는 통계청의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가 있음.
-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는 가계부기입방식에 따라 1996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 가구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설문조사방식에 따라 1995년 12월 1일부터 1996년 11월 30일까지 연간소득을 조사하였음. 두 조사방식에서는 각기 상이한 자영업소득의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가계부기입방식에서는 가구전입소득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조사방식에서는 순수입개념(이하 전체자영업소득)을 사용하였음.
-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 가계부기입방식에 의한 2개월간의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을 연간가구전입자영업소득으로 환산하고, 이를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연간순수입(=연간 전체자영업소득)과 비교함으로써 연간 순수입 대비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음.
- 가계부기입방식에서는 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합으로 정의되며, 경상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 및 가내소득 그리고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으로 구분됨. 또한 사업 및 가내소득은 사업소득과 가내소득으로 분리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가구의 사업소득은 가구주와 가구원의 구분이 안됨.
- 설문조사방식에서는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의 구분이 없으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분됨. 또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부업소득은 가구주와 배우자, 그리고 기타 가구원으로 구분 가능함.
- 따라서 양자의 비교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먼저, 가계부기입방식에서는 가구원별 사업소득(가구전입소득)의 구분이 되지 않으며, 단지 가구원의 사업소득(가구전입소득)의 합계만이 보고되므로, 설문조사방식에서 가구원별 사업소득의 합계와는 비교가 가능하지만, 가구원별 비교는 불가능함.
 - 가계부기입방식에서의 가내소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방식에서는 부업소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개념적으로는 양자가 비슷하고, 자영업자의 소

10) 어휘의 개념에 대한 혼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기본적으로는 가구전입자영업소득과 전체자영업소득의 개념이 사용됨. 가구전입자영업소득, 월간가구전입자영업소득, 연간가구전입자영업소득 등은 모두 가구에 전입된 자영업자의 수입을 의미하며(소득은 아닐 수도 있음), 가구전체자영업소득, 월간가구전체자영업소득, 연간가구전체자영업소득은 가구전입여부와 관계없이 자영업가구의 순수입을 의미함.

득개념과 유사하므로 이를 모두 포함하여 자영업소득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음¹¹⁾).

□ 10월 및 11월의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은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연간 가구전입자영업소득으로 환산함.

○ 1996년 도시가계조사에서 10월 및 11월의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의 합이 연간 전체 가구전입자영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10월 및 11월의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을 1996년의 연간 가구전입자영업소득으로 환산함. 예를 들어 10월 및 11월의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이 연간 가구전입자영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라면, 10월 및 11월의 소득의 합을 0.2로 나누어 연간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을 구함.

□ <표 V-6>은 1996년 도시가계조사를 이용하여 자영업가구에서 10월 및 11월의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이 연간 가구전입자영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결과임.

○ 1996년 도시가계조사에 의하면, 전체 자영업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10월 및 11월의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은 연간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의 16.62%로 나타났음.

○ 1996년 가구소비실태조사에서는 10월 및 11월의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은 3,555,495원이며, 위에서 계산한 비율로 나누면 연간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은 21,392,870원으로 추정됨.

- 연간 가구전입자영업소득 21,292,870원은 자영업가구의 연간 전체자영업소득(=순수입) 25,069,000원의 85.34%임.

- 일반적인 예상과 같이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은 전체자영업소득보다 적었으며,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은 전체자영업소득을 17.18% 축소보고((전체자영업소득-가구전입자영업소득)/가구전입자영업소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구전입자영업소득과 전체자영업소득의 비율은 가구원수별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산업별, 그리고 연령대별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었음.

○ 가구원수별로 볼 때 가구원수가 6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 비율이 0.7920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2인 이상부터 5인 이하까지는 대체로 0.83에서 0.88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유사한 크기를 보여주었음.

○ 가구주가 종사하는 산업별로 볼 때 제조업의 경우는 동 비율이 0.8290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을 보여 주었음. 서비스업의 경우 숙박, 음식점업의 경우가 0.9742로 가장 높았고, 가사서비스업의 경우에는 0.5079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11) 2003년부터 통계청의 가계조사에서 부업소득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구분하고 있으나, 이전에는 이와 같은 구분이 없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가구주가 종사하는 산업별로 전체자영업소득대비 가구전입자 영업소득의 비율이 매우 상이하다는 함의만이 뚜렷할 뿐이며, 산업마다 상이한 정도와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o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볼 때 동 비율은 20대 0.9443, 30대 0.8563, 40대는 1.0829, 50대 0.8571, 60대 이상 0.7188로 나타났음.

-> 주목되는 점은 40대의 경우 동 비율이 1을 초과하여,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이 전체자영업소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임. 통계적인 오류가능성을 제외하면 동 결과는 이론적으로 볼 때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이 전체자영업소득보다 적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것임. 또한 가구주가 40대인 경우 일반적으로 가계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40대의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 이상의 가계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임.

<표 V-6> 자영업자의 전체자영업소득(=순수입) 대비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의 비율 추정

(1) 전체 자영업가구(단위:원)

	설문조사 연간 순수입(=전체 자영업소득, A)	가계부조사 10월 및 11월의 가구전 입자영업소득의 합(B)	10월 및 11월 가구 전입자영업소득의 합이 연간가구전입 자영업소득에서 차 지하는 비중(C)	연간가구전입자 영업소득추정치 (D=B/C)	비율 (D/A)
구분	25,069,000	3,555,495	0.1662	21,392,870	0.8534

(2) 산업별(단위:원)

산업	연간순수입(A)	전입소득(B)	비율(B/A)
농업, 수렵 및 임업	25,965,000	22,927,972*	0.8830*
어업	37,973,000	39,459,158*	1.0391*
광업	33,761,000	19,452,593	0.5762
제조업	26,468,000	21,941,832	0.8290
건설업	26,066,000	21,922,303	0.8410
도소매, 소비자용품수리	24,667,000	21,137,129	0.8569

숙박, 음식점	21,789,000	21,225,899	0.9742
운수창고통신	22,481,000	20,724,807	0.9219
금융, 보험업	24,541,000	18,227,720	0.7427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	23,884,000	21,932,902	0.9183
교육	29,423,000	22,888,400	0.7779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49,523,000	43,299,910	0.8743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	27,046,000	20,422,397	0.7551
가사서비스업	18,862,000	9,580,647	0.507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23,770,000	25,415,584*	1.0692
무직 및 분류불능	12,000,000	8,303,249*	0.6919

주 : *는 각 산업별 10월 11월의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의 합이 연간 가구전입자영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도시가계조사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임. 이 경우에는 전체 평균 0.1662를 사용하여 연간소득으로 환산하였음.

(3) 가구원수별

가구원수별	연간순수입(A)	전입소득(B)	비율(B/A)
2인	19,357,000	16,728,673	0.8642
3인	22,933,000	20,101,627	0.8765
4인	26,668,000	22,669,699	0.8501
5인	26,743,000	22,140,611	0.8279
6인 이상	28,895,000	23,059,595	0.7980

(4) 연령별

연령별	연간순수입(A)	전입소득(B)	비율(B/A)
20대	20,166,000	19,042,739	0.9443
30대	26,112,000	22,358,672	0.8563
40대	20,699,000	22,415,318	1.0829
50대	23,665,000	20,282,697	0.8571
60이상	20,235,000	14,545,582	0.7188

□ <표 V-7>은 근로자가구의 경우 가구전입자영업소득과 전체자영업소득의 비율을 구한 결과임.

※ 근로자가구의 경우에 전체소득에서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로 5%미만이기 때문에 가구전입자영업소득과 전체자영업소득의 차이가 근로자가구의 전체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 다만 향후에 근로자가구, 자영업자가구로 구분하여 평균가구소득을 발표하지 않고,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자영업소득으로 구분하여 발표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하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분석방법은 자영업자가구의 경우와 동일함.

- 전체근로자가구를 대상으로 할 때 전체자영업소득대비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의 비율은 0.8835로 나타나 자영업자가구의 경우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음.
- 제조업의 경우 동 비율이 0.9386으로 나타나 자영업자의 경우보다 높았고, 전체평균보다도 높게 나타났음.
- 음식, 숙박업의 경우에는 동 비율이 1.5007로 나타나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이 전체자영업소득보다 1.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결과는 음식, 숙박업의 경우 실제로 자영업을 통해 얻은 수입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이 가구전입자영업소득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아니면 설문조사에서 전체자영업소득이 축소 보고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결과라고 하겠음.
- > 이와 같은 결과는 설문조사방식으로 자영업소득을 조사하는 경우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축소보고현상이 심각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음.
- 가구원수별로 볼 때에는 2인가구의 경우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고, 6인 이상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음.
- 가구주연령별로 볼 때에는 40대와 50대에서 동 비율이 1을 초과하고 있음.
- > 40대에서 동 비율이 1을 초과하는 현상은 근로자가구와 자영업자가구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음.

<표 V-7> 근로자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가구구성원의 전체자영업소득 대비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의 비율 추정

(1) 전체 근로자가구

	설문조사 연간전체자영업소득 (순수입, A)	가계부조사에서 나타난 10월 및 11월의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의 합 (B)	10월 및 11월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의 합이 연간가구전입자영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C)	연간가구전입자영업소득추정치 (D=B/C)	비율(D/A)
구분	1,092,000	166,522	0.1726	964,786	0.8835

(2) 근로자 산업별

산업	연간순수입(A)	전입소득(B)	비율(B/A)
농업, 수렵 및 임업	568,000	529,703	0.9326
어업	173,000	155,239	0.8973
광업	407,000	238,979*	0.5872*
제조업	929,000	871,968	0.9386
전기	1,754,000	578,614	0.3299
건설업	926,000	984,158	1.0628
도소매, 소비자용품수리	1,321,000	1,120,754	0.8484
숙박, 음식점	569,000	853,897	1.5007
운수창고통신	1,189,000	952,367	0.8010
금융, 보험업	1,276,000	1,128,268	0.8842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	1,444,000	1,072,964	0.743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059,000	1,036,398	0.9787
교육	1,345,000	1,021,088	0.759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41,000	1,227,186	1.3041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	1,749,000	1,499,535	0.8574
가사서비스업	500,000	387,896	0.7758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1,669,000	4,565,687	2.7356

주 : *는 각 산업별 10월 11월의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의 합이 연간 가구전입자영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도시가계조사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임. 이 경우에는 전체 평균 0.1726을 사용하였음.

(3) 가구원수별

가구원수별	연간순수입(A)	전입소득(B)	비율(B/A)
2인	497,000	289,256	0.5820
3인	995,000	812,035	0.8161
4인	1,187,000	986,951	0.8315
5인	1,473,000	1,238,628	0.8409
6인 이상	2,145,000	5,899,402	2.7503

(4) 근로자연령별

연령별	연간순수입(A)	전입소득(B)	비율(B/A)
20대	641,000	334,396	0.5217
30대	1,021,000	817,623	0.8008
40대	1,371,000	1,435,254	1.0469
50대	1,311,000	1,367,152	1.0428
60이상	1,001,000	346,484	0.3461

IV. 자영업가구의 비소비지출 분석

- 일반적으로 자영업가구의 경우 소득과약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내고, 또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도 실제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납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왔음.
- 이 절에서는 자영업가구의 소득과 자영업가구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과 건강보험료 등을 비교분석하고자 함.

1. 국민연금

1.1 개요 및 부과체계

□ 국민연금도입연혁

- 1988년 10인 이상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작하여, 1992년에는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그리고 1995년 농어민, 농어촌지역거주자로 확대하였음. 1999년 4월부터는 도시지역의 자영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도시지역 전 주민에게 확대하였음.

□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됨(국민연금법 제6조).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제외함¹²⁾.

- 가입자 종류 :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임의 가입자 . 임의 계속가입자로 구분됨¹³⁾¹⁴⁾.

12) 예외적으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에 도달 할 때에는 피보험자가 공단에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65세에 이를 때까지 가입자가 될 수 있음(동법 제13조). 한편, 특수 직역연금법의 적용대상자 그리고 동법 제6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등도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됨(동법 시행령 제 18조 조의 2).

13) 임의가입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제10조의2)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당연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장)

②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18세 이하 등)

14) 임의계속가입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65세에 달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자가 될 수 있다. 이 경

○ 당연적용사업장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하며, 여기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됨(제19조)15)16).

①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② 주한외국기관으로서 상시 5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지역가입자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함(제10조)17).

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 제외자(주로 특수직역연금 대상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직원

라.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 연금등 수급권자

②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③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

우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13조)

① 국민연금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에 달한 자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이하 "특수직종근로자"라 한다)로서 제56조제2항 제3항 및 법률 제3902호 국민복지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15)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 법 제5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제외함.

16)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다음과 같음.

① 일용근로자 또는 3월 이내의 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③ 계절적 또는 일시적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다만,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비상임이사, 시간제 근로자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가 아닌 자 등(동법 시행령 제 2조)

17) 결국 공무원연금법 군인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적용대상자의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별도의 소득이 없는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 퇴직연금수급권자, 18세 이상 23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등이 제외되고 있음. 한편, 도입당시를 보면 1999.4.1부터 국민 연금 강제적용대상으로 편입된 도시 지역 자영자 경우도 신고대상자의 44.4%만이 신고하였고, 납부예외자가 55.6%에 이름으로써 과반수가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신고대상자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율이 61.8%에 머무르고 있음.

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함)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결국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일용직, 임시직근로자가 대상이 됨¹⁸⁾.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감에 의하면 2001년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5,704,389명이며,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2002년 종합소득세 납부자는 3,808,476명임.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모든 사람이 자영업자이며, 지역가입자라고 가정하면 전체 지역가입자 중에서 66.8%가 자영업자임. 나머지 33.2%는 대부분 일용직, 임시직일 것으로 추정됨.

<표 VI-1> 연도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단위: 개소, 명)

구분	총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 의 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계	도 시	농어촌		
1988.12	4,432,695	58,583	4,431,039	-	-	-	1,370	286
1995.12	7,496,623	152,463	5,541,966	1,890,187	-	1,890,187	48,710	15,760
1999. 4	16,268,779	174,496	4,992,716	11,113,148	9,045,812	2,067,336	34,250	128,665
1999.12	16,261,889	186,106	5,238,149	10,822,302	8,739,152	2,083,150	32,868	168,570
2000.12	16,209,581	211,983	5,676,138	10,419,173	8,381,451	2,037,722	34,148	80,122
2001.12	16,277,826	250,729	5,951,918	10,180,111	8,132,036	2,048,075	29,982	115,815
2002.12	16,498,932	287,092	6,288,014	10,004,789	7,997,593	2,007,196	26,899	179,230
2003. 9	17,071,826	410,273	6,872,799	9,947,641	7,889,104	2,058,537	24,648	226,738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

<표 VI-2> 가입자 소득등급별 현황(2003년 9월 현재)

등급	계	비율(%)	사업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
계	12,248,483	100.0	6,288,014	5,754,340	26,899	179,230
1	22,799	0.2	2,655	15,918	1,088	3,138
2	2,465	0.0	277	1,986	11	191
3	1,819	0.0	338	1,331	11	139
4	7,749	0.1	355	7,072	35	287
5	19,873	0.2	344	19,206	34	289
6	11,001	0.1	740	9,949	19	293
7	15,011	0.1	1,555	13,216	26	214
8	15,280	0.1	2,868	11,378	136	898
9	46,643	0.4	4,359	35,463	81	6,740
10	141,524	1.2	6,580	133,978	45	921

18)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 가능함.

11	149,300	1.2	9,912	136,208	134	3,046
12	104,603	0.9	17,439	85,810	98	1,256
13	110,452	0.9	52,290	56,891	58	1,213
14	344,101	2.8	106,138	230,186	148	7,629
15	214,325	1.7	100,854	110,449	37	2,985
16	295,128	2.4	161,047	129,392	72	4,617
17	482,167	3.9	151,601	317,819	29	12,718
18	574,542	4.7	283,495	283,725	42	7,280
19	544,548	4.4	259,988	279,141	24	5,395
20	666,214	5.4	218,910	438,169	14	9,121
21	554,028	4.5	287,292	263,534	7	3,195
22	1,607,663	13.1	297,734	1,251,168	16,680	42,081
23	839,327	6.9	204,668	611,465	2,237	20,957
24	449,195	3.7	244,952	199,782	371	4,090
25	482,054	3.9	250,851	224,971	681	5,551
26	388,388	3.2	257,198	127,709	383	3,098
27	333,394	2.7	225,485	103,831	406	3,672
28	382,106	3.1	255,295	122,243	253	4,315
29	282,720	2.3	203,711	75,767	183	3,059
30	282,716	2.3	207,119	70,681	782	4,134
31	264,412	2.2	199,897	60,665	561	3,289
32	218,400	1.8	182,511	34,558	116	1,215
33	262,631	2.1	216,715	44,045	220	1,651
34	177,057	1.4	150,439	25,465	172	981
35	162,056	1.3	138,879	22,027	149	1,001
36	154,835	1.3	136,974	17,211	80	570
37	136,330	1.1	121,173	14,498	84	575
38	147,327	1.2	130,951	15,698	106	572
39	126,339	1.0	113,962	11,809	71	497
40	123,359	1.0	112,119	10,782	79	379
41	124,969	1.0	111,767	12,577	61	564
42	99,405	0.8	91,448	7,643	41	273
43	104,675	0.9	97,046	7,312	36	281
44	82,700	0.7	75,808	6,458	66	368
45	692,853	5.7	592,275	95,154	932	4,492

§ ㉔ 계 = 사업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중 소득신고자 + 임의, 임의계속가입자

주 :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제외

□ 국민연금에서의 소득과 소득신고

○ 국민연금에서는 가입자가 매년도별 소득신고기준에 의하여 신고한 소득을 소득월액으로 확정하는 신고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소득의 범위

-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 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함(법§3①3).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금품 중 다음을 제외함(영§3①) : 퇴직금, 학자금,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

- 부과소득의 상·하한선 : 상한선 360만원, 하한선 22만원.
- 기준시점 : 전연도

※ 2002년 8월말 현재, 8만1천568개의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가입자로 편입되어, 176,875명이 가입되었고, 이들의 월 평균 신고 소득액은 164만9천원임.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된 전문직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신고액은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건강보험공단의 전문직 종사자(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 7개 직종) 가입현황에 따르면, 2002년 8월 20일 현재, 27,757명이 가입하였으며, 이들의 평균 소득은 316만여원임. 이 중 월소득이 99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가입자가 872명(3.1%)이며, 최고등급인 360만원 이상을 번다고 신고한 경우가 1만9천338명(69.7%)임. 한편, 300만원이하로 번다고 신고한 전문직 종사자는 8,419명임.

<참고 표-1> 전문직 종사자 평균 월 소득 신고액(단위 : 원)

구분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산업인력공단
의 사	3,276,673	5,566,000	3,981,000
한 의 사	3,196,509	4,968,436	4,730,000
치과의사	3,387,963	5,643,000	4,191,000
약 사	2,260,740	3,691,735	2,537,000
변 호 사	3,288,967	6,013,581	6,214,000
변 리 사	2,233,636	2,927,880	-
세 무 사	2,342,821	2,346,379	2,938,000

자료: 김홍신의원 국회질의자료

□ 연금보험료율 체계

-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1988~1992년 3%(피용자 1.5%, 사용자 1.5%), 1993년~1997년 6%(피용자 2%, 사용자 2%, 퇴직금전환금 2%)으로 인상되었으며, 1998년 1월 1일부터 9%(피용자3%, 사용자 3%, 퇴직금전환 3%)로 인상되었음. 1999년부터 총액 9%는 변화가 없으나, 피용자 4.5%, 사용자 4.5%로 변환되었음¹⁹⁾.

- 농어촌이나 도시 등 지역가입자는 (농어촌은 1995년 7월부터, 도시지역은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 3%이며, 매년 7월 1%p씩 인상되어 2005년에는 9%가 될 예정이며, 전액 본인부담임.

19) 임의적용가입자, 임의계속적용가입자의 연금보험료율은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변환되어 왔지만 전액 본인이 부담함.

<표 VI-3>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구 분		1988~92	1993~97	1998~1999.3	1999.4~
사업장가입자	계	3%	6%	9%	9%
	근로자	1.5%	2%	3%	4.5%
	사용자	1.5%	2%	3%	4.5%
	퇴직금전환금	-	2%	3%	-

구 분	1995.7- 2000.6	2000.7 - 2001.6	2001.7 - 2002.6	2002.7 - 2003.6	2003.7 - 2004.6	2003.7 - 2004.6	2005.7 -
지역가입자	3%*	4%	5%	6%	7%	8%	9%

주 : *에서 도시지역가입자는 최초 적용시기인 1999년 4월부터 2000년 6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3%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다른 기간은 기존의 농어촌지역가입자와 동일하게 적용됨.

1.2 비교분석시의 유의점

□ 가구구성원의 가입여부 확인필요.

○ 가구 구성원 중에서 가입대상이 되는 지를 확인해야 함

- 현재 도시가계조사의 정보로는 특정 가구원이 가입대상이 되는 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음. 예를 들어, 공무원, 교직원 등의 특수직역연금 예외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그리고 가입대상 예외자 등을 구분할 수가 없음. 이에 따라 소득이 있는 가구구성원은 모두 국민연금가입대상자로 산정함.

○ 소득이 있는 가구원의 소득과 그 가구원의 국민연금납부액을 구해야 함.

- 현재 도시가계조사의 정보로는 소득이 있는 자가 가구주이거나 가구주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독립적으로 계산할 수 있음. 그러나 기타 가구원의 경우에는 기타가구원들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합으로만 기록되어 있어서 개별 가구원으로 소득을 분리해낼 수가 없음. 따라서 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가 분석대상이 될 수 있음.
- 그러나 가구의 국민연금납부액은 개인으로 분리되지 않고 가구단위로 기록되기 때문에 한 가구에 국민연금 대상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가구원들의 연금보험료를 알 수 없음. 이에 따라 가구에서 국민연금 대상자가 1인인 경우만을 추출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임. 본 연구에서는 가구에서 가구주만이 취업한 가구(취업인원이 1명)만을 추출하고 이들 가구주에 대해 국민연금보험료를 분석함.

□ 가입구성원의 국민연금 가입종류

○ 가구 구성원이 가입한 국민연금이 사업장인지 지역인지를 알아야 해당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추산할 수 있음.

- 도시가계조사의 비근로자가구는 상인(유), 상인(무),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유), 자유업자(무), 무직으로 구분되는 데, 개인경영자와 법인경영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개인경영자와 법인경영자는 연금보험료의 감액을 위해 지역가입자가 아니라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도시가계조사에서 이들이 가입해 있는 국민연금의 종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음. 여기에서는 개인경영자는 지역가입자로, 법인경영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정하고 분석함.

-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자가구에는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만약 가입했다라도 지역으로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음.

-> 그러나 도시가계조사에서 근로자 중 임시, 일용직근로자가 어디에 가입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들은 모두 사업장가입자로 가정함.

□ 소득개념상의 한계점

○ 이론적으로 볼 때 국민연금에서 사용하는 소득개념과 도시가계조사에서 사용하는 소득개념을 일치시켜서 분석하여야 함.

- 그러나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소득으로부터 국민연금에서 근로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공제하는 방법이 없으므로 근로소득의 개념은 도시가계조사와 국민연금이 같다고 가정함²⁰⁾.

-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도시가계조사에서 가구전입자영업소득을 사용하는 반면 국민연금에서는 전체자영업소득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 보다 엄밀한 비교를 위해서는 가구전입자영업소득에서 전체자영업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국민연금보험료를 추정하여야 함.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러한 과정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가구전입자영업소득과 전체자영업소득의 차이는 무시함. 다만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차이가 있음이 감안되어야 할 것임.

20) 번역료 및 원고료는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일부 자유업자의 경우 중요한 소득원천일 수 있음. 한편, 근로자의 경우에도 학자금, 소득세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기타 비과세 근로소득을 국민연금에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도시가계조사에서는 근로자의 소득으로 처리하고 있음.

□ 연체자를 감안하는 방법

※ 2002년 12월을 기준으로 전체 연금가입자 1,650만명 중 가입만 하고 보험료를 안내는 납부예외자가 약 425만명임. 실제 납부대상자 1,225만명 중에서도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가 390만명에 달함. 결국, 체납자와 납부예외자, 전액미납자를 제외하고 나면, 제대로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입자는 약 835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 국민연금납부액이 0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닐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입자이면서 국민연금 연체자일 가능성이 있음. 국민연금연체자의 경우 이들의 납부하고 있는 실제 등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음.

※ 2002년 자료까지는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로 분류되어 있으며, 2003년부터 공적연금이 일반기여금과 국민연금으로,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기타 사회보험료로 세부 분류되어 있음.

1.3 분석결과

(1) 평균소득에 근거한 분석

□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은 동일 연도 내에서는 가입자들의 지역과 사업장간 이전현상을 제외하면 국민연금료는 월별로 차이는 없음. 이에 따라 한 년도에 하나의 월을 선택하거나, 하나의 분기를 선택하여 분석하면 됨.

○ 여기서는 먼저, 4/4 분기 실제 평균소득과 4/4분기 평균 국민연금료로부터 도출된 추정소득을 비교함.

□ <표 VI-4>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의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음²¹⁾.

○ 먼저, 근로자가구의 경우 실제소득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등급(B)과 납부한 국민연금료로부터 추정된 표준소득월액 등급(C)의 차이는 1999년의 11등급, 2000년 8등급, 2001년 8등급, 2002년 7등급으로 완만하게 감소하였음.

○ 근로자가구의 경우 실제소득 대비 국민연금료로부터 추정된 표준소득월액의 비율(->국민연금의 소득포착률이라고 명명함)은 1999년 0.5850, 2000년 0.6290,

21) 본인에게 제공된 자료에서는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는 계산할 수 있으나, 세부항목인 국민연금료와 건강보험료는 계산할 수 없었음. 이에 따라 공적연금은 실제 국민연금료보다 클 가능성이 있음.

2001년 0.6420, 2002년 0.6805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음.

-> 그러나 2002년 현재까지도 실제월평균소득과 국민연금료로부터 추정된 소득의 차이는 평균 779,355원에 달하고 있음.

- 자영자가구의 경우에도 실제소득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등급(B)과 납부한 국민연금료로부터 추정된 표준소득월액 등급(C)의 차이는 1999년의 27등급, 2000년 19등급, 2001년 17등급, 2002년 16등급으로 완만하게 감소하였음.

-> 그러나 아직까지도 양 등급의 격차가 16등급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절대금액으로 1,245,983에 달하고 있음.

- 자영자가구의 경우 실제소득 대비 국민연금료로부터 추정된 표준소득월액의 비율(->국민연금의 소득포착률이라고 명명함)은 1999년 0.1479, 2000년 0.2536, 2001년 0.3058, 2002년 0.3497 등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2002년까지도 근로자가구에 비하여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한편, 2002년 현재까지도 실제월평균소득과 국민연금료로부터 추정된 소득의 차이는 평균 1,245,983원에 달하고 있음.

※ 평균소득으로 분석할 때 임시, 일용직근로자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경우 근로자가구의 소득포착률의 절대값을 낮추는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음

※ 법인경영자의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정하고 분석하였는데, 소득포착률은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음.

※ 평균소득에 근거한 분석은 국민연금료를 내지 않는 사람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특히,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가입대상인 국민연금의 기본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평균에 근거한 분석은 단지 표준소득월액이나 등급, 그리고 소득포착률 등의 추세를 알아보는 데에 국한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임.

<표 VI-4> 도시가계조사에서의 소득과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정되는 소득의 비교

구분	근로자	자영자	상인(무)	상인(유)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무)	자유업자(유)
1999								
소득(A)	1,931,750	1,622,420	1,416,748	2,011,213	2,684,825	4,316,624	2,112,368	3,149,3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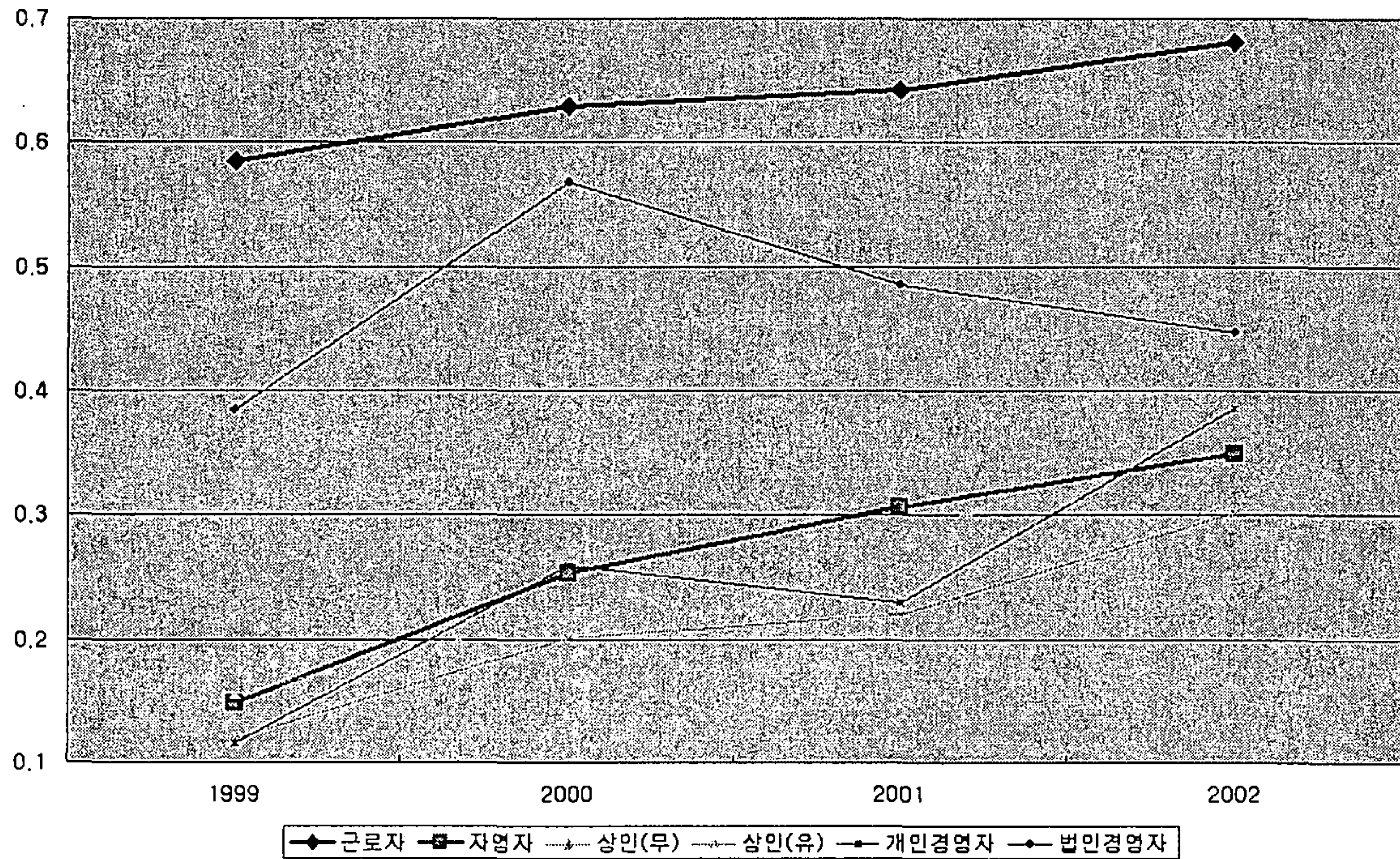
국민연금해 당 등급(B)	33	30	28	33	39	45	34	43
납부금액추 정소득등급 (C)	24	3	1	3	8	30	1	12
등 급 차 이 (D)	11	27	27	30	31	15	33	31
금액차이(E)	801,750	138,2420	1,196,748	1,771,213	2,374,825	2,656,624	1,892,368	2,709,352
소득축소비 율(F)	0.5850	0.1479	0.1553	0.1193	0.1155	0.3846	0.1041	0.1379

2000								
A	2,050,930	1,734,722	1,539,460	2,195,913	2,389,151	4,048,317	1,994,600	5,242,617
B	34	31	29	35	37	45	33	45
C	26	12	9	12	16	36	7	16
D	8	19	20	23	21	9	26	29
E	760,930	1,294,722	1,199,460	1,755,913	1,769,151	1,748,317	1,704,600	4,622,617
F	0.6290	0.2536	0.2209	0.2004	0.2595	0.5681	0.1454	0.1183
2001								
A	2,289,678	1,863,700	1,627,180	2,360,087	3,697,328	4,325,755	2,586,660	3,939,954
B	36	32	30	37	45	45	38	45
C	28	15	13	14	20	34	11	25
D	8	17	17	23	25	9	27	20
E	819,678	1,293,700	1,147,180	1,840,087	2,847,328	2,245,755	2,186,660	2,729,954
F	0.6420	0.3058	0.2950	0.2203	0.2299	0.4808	0.1546	0.3071
2002								
A	2,439,355	1,915,983	1,757,147	2,417,109	3,134,876	4,658,769	2,413,986	3,811,701
B	37	33	31	37	42	45	37	45
C	30	17	15	18	25	34	15	25
D	7	16	16	19	17	9	18	20
E	779,355	1,245,983	1,187,147	1,687,109	1,924,876	2,578,769	1,843,986	2,601,701
F	0.6805	0.3497	0.3244	0.3020	0.3860	0.4465	0.2361	0.3174

주 :

- 1) A의 소득은 근로자와 법인경영자의 경우는 근로소득, 기타의 경우는 사업 및 부업소득을 의미함.
- 2) B는 소득 실제소득 A에 근거한 국민연금 해당 등급임.
- 3) C는 평균국민연금료로부터 계산한 국민연금 해당등급임.
- 4) D는 B의 등급에서 C의 등급을 뺀 결과임.
- 5) E의 금액차이는 A소득에서 C에서 국민연금료로 추정된 평균소득월액을 뺀 결과임.
- 6) F는 C의 국민연금료로부터 추정된 평균소득월액을 실제 소득인 A로 나눈 비율이며, 소득포착률로 명명함.

<그림 VI-1> 가구종류별 평균소득 및 평균국민연금료에 근거한 소득포착률 추
이



(2) 개별소득에 근거한 분석

※ 분석과정

- 2003년 9월 도시가계조사 자료 중에서 취업인원이 1명이고, 가구주가 취업한 가구만을 선정하면, 2,726가구가 됨. 이 중에서 1999가구가 근로자가구이며, 나머지 727가구가 자영자가구임. 근로자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주 근로소득(법인경영자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을), 자영자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주 사업 및 부업소득(법인경영자 제외)을 기준으로 삼음. 이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등급을 결정함.
- 한편, 2,726 가구 중에는 국민연금을 납부한 가구가 1,543가구에 불과하였으며, 나머지 1,183가구는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음. 국민연금료가 0인 경우에는 실제로 국민연금료 납부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민연금을 연체한 경우이거나, 실제로는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였지만 지출항목에서 국민연금료를 누락하였을 경우임.
- 이하의 분석은 국민연금을 납부한 1,543가구에 대한 분석결과임.

□ <표 VI-5>는 개인별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 o 사업자가입자의 경우 실제소득에 근거한 국민연금의 등급평균은 35등급이었으며, 납부한 국민연금료로부터 추정되는 국민연금의 등급평균은 33등급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양자의 차이는 2등급에 불과하며, 사업장가입자의 소득포착률의 평균은 98.8%에 달함.

-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실제소득에 근거한 국민연금의 등급평균은 33등급이었으며, 납부한 국민연금료로부터 추정되는 국민연금의 등급평균은 24등급으로 나타났음. 이에 따라 양자의 차이는 9등급이었으며, 지역가입자의 소득포착률의 평균은 72.4%를 기록하였음.

<표 VI-5> 개별소득에 근거한 소득과 국민연금료부터 계산된 소득의 비교(2003년 9월 기준, 단위:원)

구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평균실제소득(A)	2,664,800	2,288,927
실제소득에 근거한 국민연금의 등급 평균(B)	35	33
평균국민연금부담액(C)	96,945	90,389
국민연금부담액으로 추정한 소득등급의 평균(D)	33	24
등급차이의 평균(E)	2	9
실제소득과 국민연금으로부터 추정된 소득의 차이의 평균(F)	527,470	933,810
소득포착률의 평균(G)	0.9882	0.7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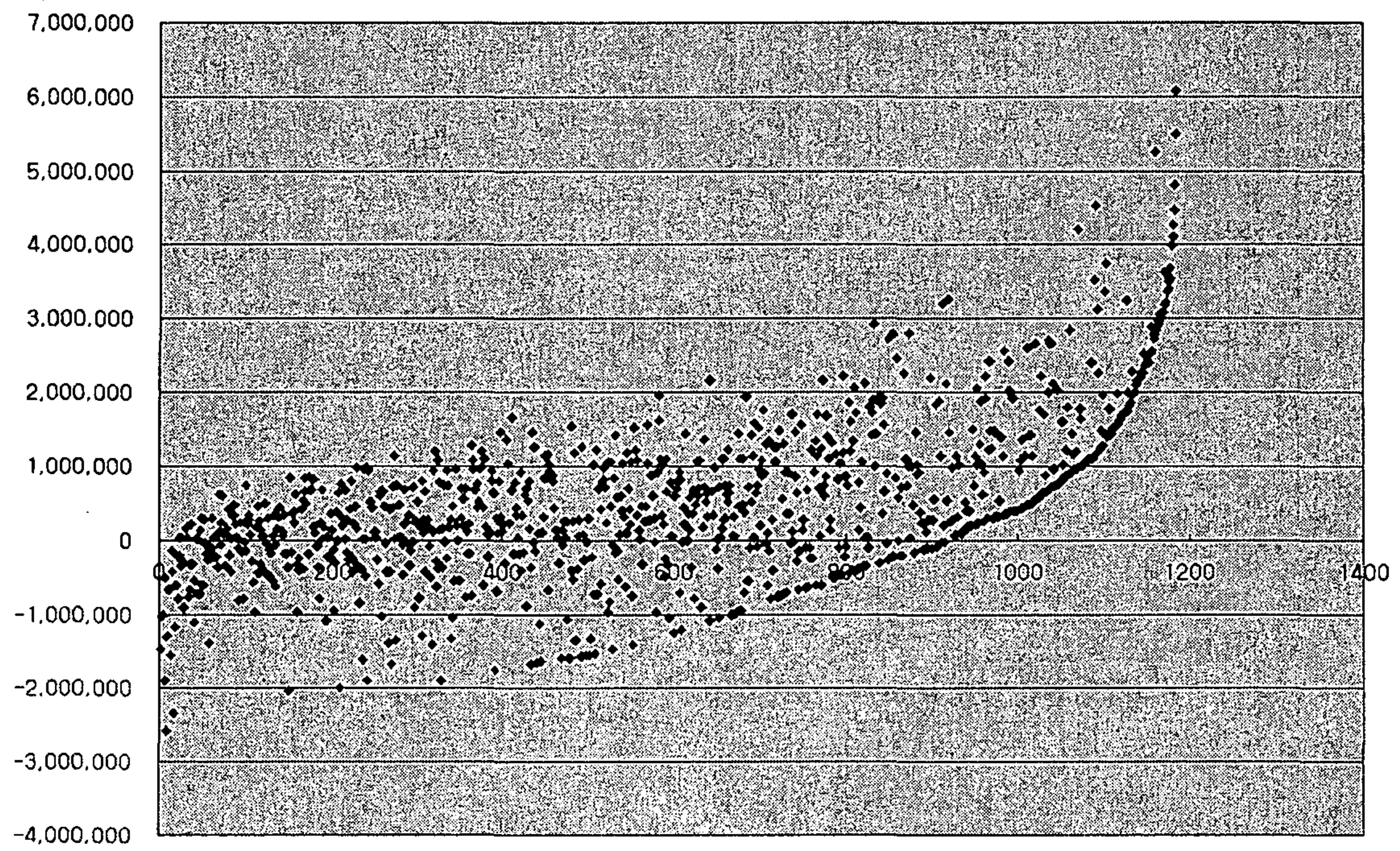
※ 개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평균을 이용한 경우보다 실제등급과 추정등급과의 차이가 매우 축소되고 소득포착률도 급상승하였음.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개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민연금료가 0인 경우를 제외하기 때문이며, 또한 평균소득을 사용하는 경우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이용함에 비하여 개별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주소득만을 이용하기 때문임.

※ 그러나 개별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표 VI-5>에 나타난 결과는 집계된 결과이며, 개별 가구에서는 매우 차이가 큼. <그림 VI-2>와 <그림 VI-3>은 실제소득과 국민연금료로부터 추정된 소득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양자 차이의 절대값이 매우 큰 경우도 있으며, 양자 차이가 음수를 갖는 경우도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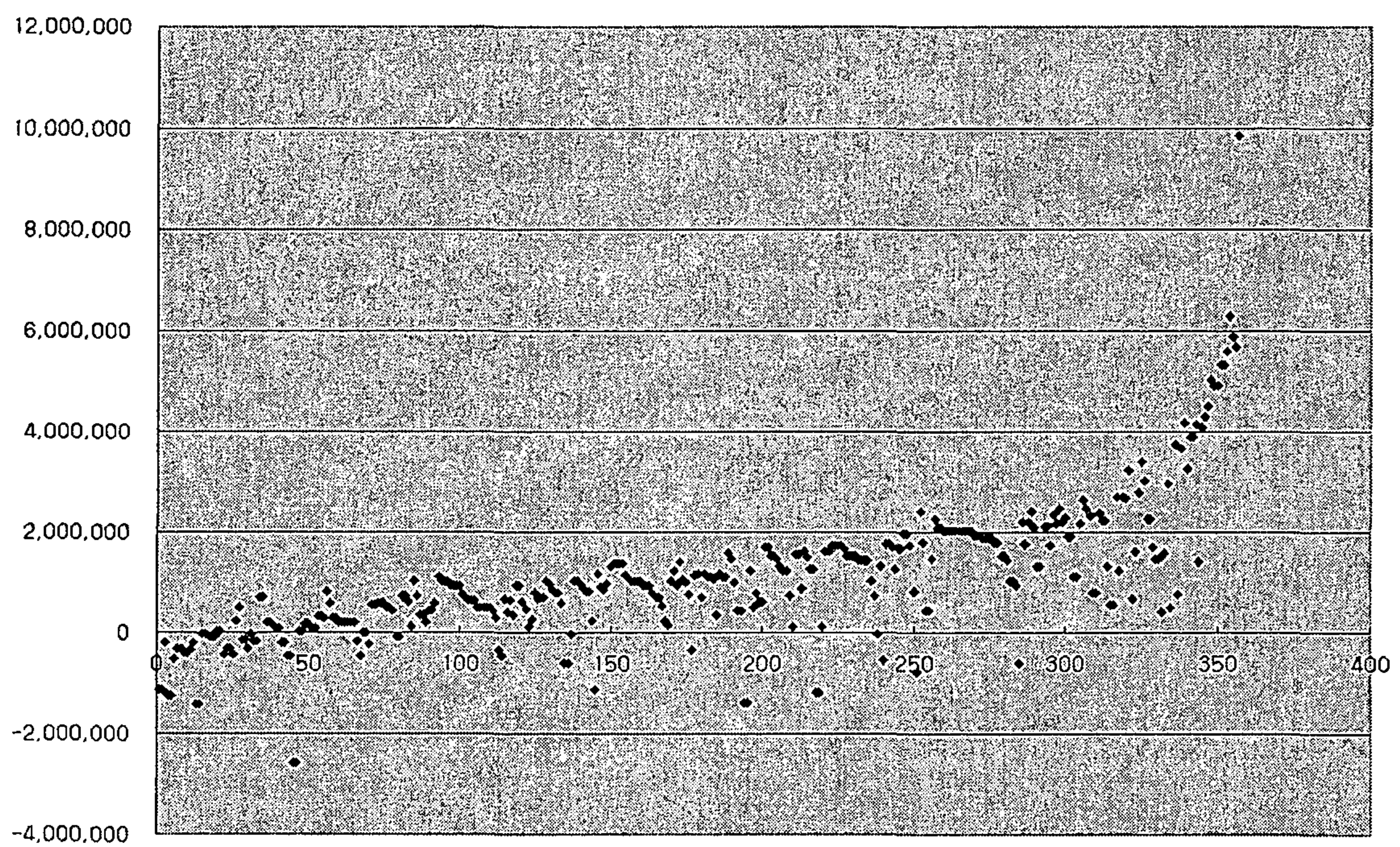
-> 만약 국민연금료 데이터를 지출데이터로서 신뢰성을 부여 한다면 국민연금료로 판단할 때 도시가계조사의 소득데이터는 다양한 noise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VI-2>에서는 이러한 noise가 지역가입자뿐만 아니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상당함을 보여 주고 있음.

※ 첨부하는 EXCEL File 참조

<그림 VI-2> 사업장가입자의 실제소득과 추정소득의 차이 분포



<그림 VI-3> 지역가입자의 실제소득과 추정소득의 차이 분포



※ 가구주만이 취업한 가구에서 국민연금료를 납부하지 않는 가구가 1,183가구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하였음. 이들 중 근로자가구는 813가구였으며, 나머지 370가구는 자영자가구였음. 그런데, 이러한 근로자가구의 소득 평균은 2,033,793원, 자영자가구의 소득평균은 1,692,718원이었음.

-> 이러한 가구들이 국민연금가입대상자가 아닌지, 국민연금연체자인지, 아니면 도시가계조사에서의 지출항목조사에서 누락된 것인지를 판단할 수는 없음. 다만, 가구주만이 취업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가구가 전체 해당되는 가구의 43.4%에 달한다는 점은 도시가계조사에서 국민연금료 조사에 보다 세밀한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임.

2. 건강보험

2.1 개요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 도입연혁

- 1977년 7월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실시한 이후 1981년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장되었음. 1988년 농어촌 지역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었고,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이 전국적으로 실시됨.
- 2000년부터 139개 직장조합, 227개 지역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등이 통합되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2003년 7월에 재정 통합이 완료되었음.

※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직장가입자 편입

- ※ 과거 의료보험법 체계에서는 소득형태 및 파악률, 의료이용률 등이 유사한 집단별로 다수 보험자를 구성하여 독립채산방식에 의하여 자치운영 하였으나, 새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제정) 체계에서는 적용대상자를 단일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로 통합 운영함.

□ 가입자의 범위 : 국내 거주 국민 중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전부²²⁾

- 직장가입자 :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都·農 지역주민

□ 국민건강보험으로의 통합과 건강보험

- 2000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으로 통합 일원화됨에 따라서 직장가입자의 개념이 종전보다 확대되었음. 즉, 종전에는 사업장근로자만을 의미하였으나, 지금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을 포함함(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 사업장근로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한시적으로 2000년에만 사업장근로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에게 달리 적용함. 보험료율은 8%의 범위 내에서 정하되, 사업장근로자 및 공무원 중 군인은 2.8%, 군인 외의 공무원 및 교직원은 3.4%를 적용하였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 사업장근로자의 경우에는 2.8%를 적용하였음. 2001년부터는 3.4%로 통합 적용함.

22)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도 제외됨.

※ 그리고 급격한 보험료 증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시행으로 보험료가 30%이상 인상된 직장가입자는 2000.12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었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 보험료는 사업장근로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공무원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부담함. 교직원은 교직원 50%, 사립학교 설립·운영자 30%, 국가 20%씩을 부담함(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 그동안 동일보수임에도 조합별로 서로 상이한 보험료를 부담하던 직장의료보험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단일화되었음.

- 통합이전에는 조합별로 기본급의 2~8% 범위 내에서 조합별로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나, 통합이후에는 기본급에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총보수의 2.8%로 하는 단일의 총보수 기준으로 전환하였음(2000년).²³⁾

□ 건강 보험료

○ 변천과정(단위:원,%)

<표 VI-6> 건강보험료의 변천과정과 표준보수월액

구분	직장계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지역가입자 점수당 금액
	연 말 평 균 표 준 보 수 월액	평 균 보 험 료율	연 말 평 균 표 준 보 수 월액	평 균 보 험 료율	연 말 평 균 표 준 보 수 월액	평 균 보 험 료율	
1999	-	-	1,148,324	3.75	1,237,934	5.60	-
2000	-	-	1,522,175	2.80	1,604,835	3.40	-
2001	1,703,342	3.40	1,566,544	3.40	2,315,868	3.40	-
2002	1,936,921	3.63	1,802,213	3.63	2,589,057	3.63	100.0/106.7*
2003	2,262,972	3.94	2,125,029	3.94	3,034,165	3.94	115.8
2004	-	4.21	-	4.21	-	-	123.6

주 : 지역보험료는 2002년부터 부과등급별 보험료 합산 방식에서 부과표준소득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음. *에서 2002년 1월에 100으로 시작하여 3월에 106.7로 인상되었음.

23)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 데, 과거에는 표준보수월액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하였으나, 통합이후 보수의 범위를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음. 그리고 표준보수월액은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전년도의 보수총액을 그 해당기간의 월수로 나누어서 얻은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하여 매년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6조).

자료 : 건강보험관리공단

○ 2004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

구분	직장	공·교	지역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보험료율(4.21%)	- 표준보수월액× 보험료율(4.21%)	- 세대당= 부과표준소득(적용점수)× 적용점수당금액(123.6원)
부담주체	- 근로자 50% - 사용자 50%	- 공무원 : · 공무원 50% · 정부 50% - 사립학교교직원 : · 교직원 50% · 학교경영자 30% · 국가·지방자치단체 20%	- 세대 구성원인 지역 가입자
징수방법	- 사용자가 원천징수 납부	- 기관장 등이 원천 징수 납부	- 월별고지, 개별납부
납기일	익월 10일	익월 10일	익월 10일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 표준보수월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보수총액을 의미함²⁴⁾.

○ 건강보험의 표준소득월액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함²⁵⁾.

- 퇴직금
-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²⁶⁾

24)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여 우선 부과하고, 다음 년도 2월에 당해년도 중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정산 처리함.

25) 보다 구체적인 소득(보수)개념은 다음과 같음. 보수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봉급·수당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법§3④).

- 단, 다음의 금품은 제외함(영§2) : 퇴직금, 학자금, 상여금(다만, 의료보험조합의 재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보수에 상여금을 포함시킬 수 있음),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일직수당·숙직수당·교통비 및 여비, 근로기준법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및 휴일근로수당과 비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시간외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사회보험급여금,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급식보조비와 그가 지급받는 제복작업복제도 및 제화 등,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무지역 또는 근무부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위험의 보상으로 특별히 지급받는 수당,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금 또는 보조금,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일당수당 또는 여비 등, 판공비 기타 임시로 지급받는 금품

- 근로자의 평균 보험료율은 2000년 2.8%, 2001년 3.4%, 2002년 3.63%였음.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함.

※ 건강보험에서는 정확한 보수가 파악 안 되는 사용주의 경우 근로자만큼만 내도록 하고 있음(공단정관 제53조에는 사용주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표준보수월액을 산정하며 사업소득 자료가 없거나, 사업소득으로 산정한 표준보수월액이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최고등급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근로자의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표준보수월액을 당해인의 표준보수월액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영업자 또는 재산가들이 종업원이 한 두명 밖에 되지 않는 초미니 회사를 설립하여 직장보험에 가입하기도 함. 이런 현상은 2001년 7월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으로 전환되면서 더욱 가능하게 되었음.

-> 도시가계조사의 법인 및 개인경영자 등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가입자이기 보다는 사업장가입자 형태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

<표 VI-7> 직장가입자의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1) 2000년 6월 23일 제정(2000년 7월부터 2001년까지 적용)

구분	보수월액	표준보수월액
1	300,000 미만	280,000
2	300,000 이상 - 410,000 미만	360,000
3	410,000 이상 - 520,000 미만	470,000
4	520,000 이상 - 630,000 미만	580,000
5	630,000 이상 - 750,000 미만	690,000
6	750,000 이상 - 870,000 미만	810,000
7	870,000 이상 - 1,000,000 미만	940,000
8	1,000,000 이상 - 1,130,000 미만	1,070,000
9	1,130,000 이상 - 1,260,000 미만	1,200,000
10	1,260,000 이상 - 1,400,000 미만	1,330,000
11	1,400,000 이상 - 1,540,000 미만	1,470,000
12	1,540,000 이상 - 1,680,000 미만	1,610,000
13	1,680,000 이상 - 1,830,000 미만	1,760,000
14	1,830,000 이상 - 1,990,000 미만	1,910,000
15	1,990,000 이상 - 2,150,000 미만	2,070,000
16	2,150,000 이상 - 2,320,000 미만	2,240,000

26) .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자목·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 나.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7	2,320,000 이상 - 2,490,000 미만	2,410,000
18	2,490,000 이상 - 2,660,000 미만	2,580,000
19	2,660,000 이상 - 2,840,000 미만	2,750,000
20	2,840,000 이상 - 3,030,000 미만	2,940,000
21	3,030,000 이상 - 3,220,000 미만	3,130,000
22	3,220,000 이상 - 3,420,000 미만	3,330,000
23	3,420,000 이상 - 3,630,000 미만	3,530,000
24	3,630,000 이상 - 3,840,000 미만	3,740,000
25	3,840,000 이상 - 4,060,000 미만	3,950,000
26	4,060,000 이상 - 4,290,000 미만	4,180,000
27	4,290,000 이상 - 4,520,000 미만	4,410,000
28	4,520,000 이상 - 4,760,000 미만	4,640,000
29	4,760,000 이상 - 5,010,000 미만	4,890,000
30	5,010,000 이상 - 5,270,000 미만	5,140,000
31	5,270,000 이상 - 5,530,000 미만	5,400,000
32	5,530,000 이상 - 5,800,000 미만	5,670,000
33	5,800,000 이상 - 6,080,000 미만	5,940,000
34	6,080,000 이상 - 6,370,000 미만	6,230,000
35	6,370,000 이상 - 6,670,000 미만	6,520,000
36	6,670,000 이상 - 6,980,000 미만	6,830,000
37	6,980,000 이상 - 7,300,000 미만	7,140,000
38	7,300,000 이상 - 7,630,000 미만	7,470,000
39	7,630,000 이상 - 7,970,000 미만	7,800,000
40	7,970,000 이상 - 8,310,000 미만	8,140,000
41	8,310,000 이상 - 8,680,000 미만	8,500,000
42	8,680,000 이상 - 9,050,000 미만	8,870,000
43	9,050,000 이상 - 9,430,000 미만	9,240,000
44	9,430,000 이상 - 9,830,000 미만	9,630,000
45	9,830,000 이상 - 10,230,000 미만	10,030,000
46	10,230,000 이상 - 10,660,000 미만	10,450,000
47	10,660,000 이상 - 11,090,000 미만	10,880,000
48	11,090,000 이상 - 11,540,000 미만	11,320,000
49	11,540,000 이상 - 12,000,000 미만	11,770,000
50	12,000,000 이상	만단위에서 반올림한 금액

주 : 직장가입자가 2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
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

(2) 2001년 12월 31일 개정(2002년부터 적용, 단위: 만원)

등급	보수월액	표준보수월액	등급	보수월액	표준보수월액
1	30 미만	28	51	775 이상 - 805 미만	790
2	30 이상 - 35 미만	33	52	805 이상 - 835 미만	820
3	35 이상 - 40 미만	38	53	835 이상 - 865 미만	850
4	40 이상 - 45 미만	43	54	865 이상 - 895 미만	880
5	45 이상 - 50 미만	48	55	895 이상 - 925 미만	910

6	50 이상 - 55 미만	53	56	925 이상 - 955 미만	940
7	55 이상 - 60 미만	58	57	955 이상 - 985 미만	970
8	60 이상 - 65 미만	63	58	985 이상 - 1,015 미만	1,000
9	65 이상 - 70 미만	68	59	1,015 이상 - 1,045 미만	1,030
10	70 이상 - 75 미만	73	60	1,045 이상 - 1,075 미만	1,060
11	75 이상 - 85 미만	80	61	1,075 이상 - 1,120 미만	1,098
12	85 이상 - 95 미만	90	62	1,120 이상 - 1,160 미만	1,140
13	95 이상 - 105 미만	100	63	1,160 이상 - 1,210 미만	1,185
14	105 이상 - 115 미만	110	64	1,210 이상 - 1,260 미만	1,235
15	115 이상 - 125 미만	120	65	1,260 이상 - 1,310 미만	1,285
16	125 이상 - 135 미만	130	66	1,310 이상 - 1,360 미만	1,335
17	135 이상 - 145 미만	140	67	1,360 이상 - 1,420 미만	1,390
18	145 이상 - 155 미만	150	68	1,420 이상 - 1,470 미만	1,445
19	155 이상 - 165 미만	160	69	1,470 이상 - 1,530 미만	1,500
20	165 이상 - 175 미만	170	70	1,530 이상 - 1,590 미만	1,560
21	175 이상 - 190 미만	183	71	1,590 이상 - 1,660 미만	1,625
22	190 이상 - 205 미만	198	72	1,660 이상 - 1,720 미만	1,690
23	205 이상 - 220 미만	213	73	1,720 이상 - 1,790 미만	1,755
24	220 이상 - 235 미만	228	74	1,790 이상 - 1,860 미만	1,825
25	235 이상 - 250 미만	243	75	1,860 이상 - 1,940 미만	1,900
26	250 이상 - 265 미만	258	76	1,940 이상 - 2,020 미만	1,980
27	265 이상 - 280 미만	273	77	2,020 이상 - 2,100 미만	2,060
28	280 이상 - 295 미만	288	78	2,100 이상 - 2,180 미만	2,140
29	295 이상 - 310 미만	303	79	2,180 이상 - 2,270 미만	2,225
30	310 이상 - 325 미만	318	80	2,270 이상 - 2,360 미만	2,315
31	325 이상 - 345 미만	335	81	2,360 이상 - 2,450 미만	2,405
32	345 이상 - 365 미만	355	82	2,450 이상 - 2,550 미만	2,500
33	365 이상 - 385 미만	375	83	2,550 이상 - 2,660 미만	2,605
34	385 이상 - 405 미만	395	84	2,660 이상 - 2,760 미만	2,710
35	405 이상 - 425 미만	415	85	2,760 이상 - 2,870 미만	2,815
36	425 이상 - 445 미만	435	86	2,870 이상 - 2,990 미만	2,930
37	445 이상 - 465 미만	455	87	2,990 이상 - 3,110 미만	3,050
38	465 이상 - 485 미만	475	88	3,110 이상 - 3,230 미만	3,170
39	485 이상 - 505 미만	495	89	3,230 이상 - 3,360 미만	3,295
40	505 이상 - 525 미만	515	90	3,360 이상 - 3,500 미만	3,430
41	525 이상 - 550 미만	538	91	3,500 이상 - 3,640 미만	3,570
42	550 이상 - 575 미만	563	92	3,640 이상 - 3,780 미만	3,710
43	575 이상 - 600 미만	588	93	3,780 이상 - 3,930 미만	3,855
44	600 이상 - 625 미만	613	94	3,930 이상 - 4,090 미만	4,010
45	625 이상 - 650 미만	638	95	4,090 이상 - 4,260 미만	4,175
46	650 이상 - 675 미만	663	96	4,260 이상 - 4,430 미만	4,345
47	675 이상 - 700 미만	688	97	4,430 이상 - 4,600 미만	4,515
48	700 이상 - 725 미만	713	98	4,600 이상 - 4,790 미만	4,695
49	725 이상 - 750 미만	738	99	4,790 이상 - 4,980 미만	4,885
50	750 이상 - 775 미만	763	100	4,980 이상	5,080

주 : 직장가입자가 2 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표준보수월액을 결정함.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2002년부터 적용)²⁷⁾

- 소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②소득+ ③재산+ ④자동차)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금액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①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③재산+④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점수를 구하고, 점수를 합제한 다음 최종적인 등급을 구하고 이 등급에 단위금액을 곱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출함²⁸⁾.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 지역보

27) 자세한 내용은 <부록 VI-1>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방법 참고.

28)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나타난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제40조의2관련) <신설 2001.12.31.>

○ 제40조의2(부과표준소득의 산정기준)

-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별표 4의2>와 같다.
 - 1. 소득
 - 2. 재산
 - 3.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 2.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
 -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과 동법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만, 종중재산·마을공동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 2. 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 및 항공기
 -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 4.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¹⁾.
2.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하는 점수로 정하되,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가목 내지 다목의 소득·재산 및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하며, 가목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는 나목 내지 라목의 재산·자동차 및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 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소득의 등급별 점수는 제2호와 같다.
 - 나. 재산(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부과하는 점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산정하되, 재산의 등급별 점수는 제3호와 같다.
 - (1)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선박·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금액
 - (2) 제40조의2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과세표준금액
 - (3) 제40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의 정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
 - 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점수는 제40조의2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연간 자동차세액에 사용연수에 따른 감액율을 반영하여 차종별 배기량 또는 적재량에 따라 산정하되, 자동차의 등급별 점수는 제4호와 같다. 이 경우 자동차가 2대 이상인 세대는 각각의 자동차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다.
 - 라.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에 부과하는 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재산 및 장애정도 등을 참작하여 다음의 구간별 점수표에 따라 산정하되,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의 등급별 점수는 제5호와 같다. 다만, 가목의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을 50만원으로 나누어 얻은 값(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보험료 부과체계 내에서도 2001년 1월 지역보험료 산정에 대한 공단 내부 자료에 의하면, 세대별 평균 지역보험료산정금액은 소득 62.8%, 재산 30.5%, 자동차 6.7%를 점유하고 있어 비교적 소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중 51.1%가 실제소득이 아닌 인두세적(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연령) 성격이 짙은 평가소득에 의해 부과되고 있으며, 국세청 과세자료에 의한 보험료부과 비율은 1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실제소득이 건강보험료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 (고소득 자영업자가 대부분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였다는 주장) 2001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으로 편입되면서 '소득과약 문제의 핵심'인 고소득전문직 종사자들이 대부분 직장으로 편입되었음. 2002년 6월 현재, 약 3만 6천개소의 의원, 약국, 변호·법무·세무·회계의 전문직종이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었으며, 2003년 2월 현재 고소득전문가들의 약 80%가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였음.

<참고표> 고소득 전문직종의 직장가입 현황(2003. 2. 12 현재, 단위 : 명, %)

구 분	협회등록인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률
계	133,504	107,156	26,348	80.3

2.2 비교시 유의사항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의 차이

-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및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계조사에 나타난 소득만으로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를 계산하여 비교하기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함.

->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가 도출되더라도 이로부터 자영업자의 소득을 유추할 수 없음.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 재산, 경제활동 상태 등이 포괄적으로 고려된 보험료이기 때문임.

-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근로소득의 개념이 상이함. 즉, 건강보험에서는 비과세소득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으나,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소득에 포함하고 있음.

-> 도시가계조사의 근로소득항목에서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하기 어려우므로 소득 개념의 차이는 반영할 수 없음.

- ☐ 건강보험료의 경우 각종 보험료 경감조치가 있었는바 이를 반영할 수 없음.
- 2000년의 건강보험통합과정에서 직장조합의 경우 기본급에서 총보수로 기준을 전환함으로써 보험료가 30%이상 인상된 직장가입자는 2000.12월까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해 주었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 또한 농어촌지역 거주자(의료이용 접근도 감안) 및 저소득 취약계층 (도서·벽지 50%, 농·어촌 → 22%, 생활곤란 세대 → 10-30%, 재해세대 → 30-50% ... 피해정도에 따라 3-6개월까지),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세대(장애인 등급 등에 따라 최고 30%까지 감면)에 대한 경감조치가 있음.
- > 이러한 경감조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
-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특히 고소득자영업자의 경우 이들은 지역 및 직장의 형태로 모두 가능한데, 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음.
- > 법인경영자의 경우는 직장가입자로 판단하여 분석을 실시함. 다만 이는 논리적 추론에 근거한 내용이며 확인할 방법은 없음.

- ※ 의료급여 대상자 등 건강보험료 납부예외에 대한 정보도 없음.
- ※ 2002년 자료까지는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로 분류되어 있으며, 2003년부터 공적 연금이 일반기여금과 국민연금으로,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기타 사회보험료로 세부 분류되어 있음.

2.3 비교분석결과

(1) 평균소득과 평균보험료에 의한 분석

- ☐ 국민연금과는 달리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만 분석 가능함.
- 건강보험이 통합된 2000년 4/4분기의 경우 근로자가구의 평균근로소득 2,050,930 원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등급은 15등급임. 동 기간 근로자가구의 평균건강보험료는 32,491원이었으며, 이로부터 소득을 환산(건강보험료/(2000년 건강보험료를 2.8%*0.5))하면 17등급이 됨²⁹⁾.
- > 건강보험료로 환산한 등급이 오히려 더욱 높게 나타났음. 이는 도시가계조사에서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추정되었거나, 사회보험료가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29) 실제로는 평균건강보험료 대신 평균사회보험료를 사용하였음.

항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 2001년 4/4분기의 경우 근로자가구의 평균근로소득 2,289,678원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등급은 16등급임. 동 기간 중 근로자가구의 평균건강보험료는 37,992원이었으며, 이로부터 소득을 환산(건강보험료/(2001년 건강보험료율 3.4%*0.5)) 하면 16등급이 됨.

-> 양자의 차이가 없음.

- 2002년 4/4분기의 경우 근로자가구의 평균근로소득 2,439,355원에 해당되는 건강보험료 등급은 81등급임. 동 기간 중 근로자가구의 평균건강보험료는 43,882원이었으며, 이로부터 소득을 환산(건강보험료/(2002년 건강보험료율 3.63%*0.5)) 하면 81등급이 됨.³⁰⁾ -> 양자간에 차이가 없음.

-> 근로자가구(직장가입자)의 경우 실제소득과 건강보험료로부터 추정되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매우 유사함. 그러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약적임.

(2) 개인데이터를 이용한 분석³¹⁾

-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1,779명의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실제소득의 평균은 2,585,567원이었고, 건강보험료로부터 추정된 소득³²⁾의 평균은 2,552,844원으로 나타나 양자의 차이는 33,723원에 불과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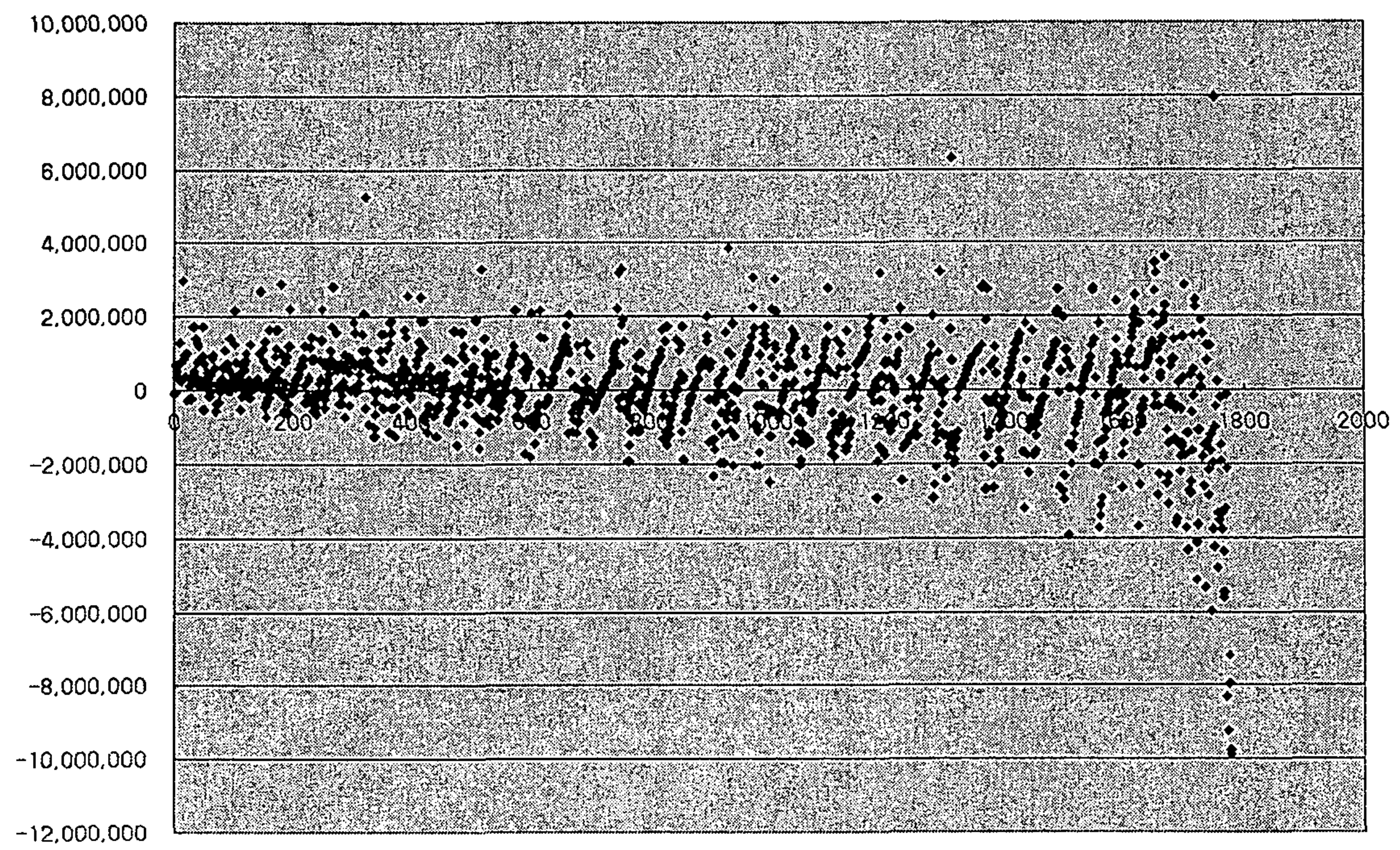
※ 그러나 실제로는 <그림 VI-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제소득과 추정소득의 차이는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었음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도시가계조사 소득관련데이터에는 상당한 정도의 noise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30) 2002년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등급체계가 50등급에서 100등급으로 변화하였음.

31) 국민연금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부분 참조.

32) 건강보험료율은 3.94%를 적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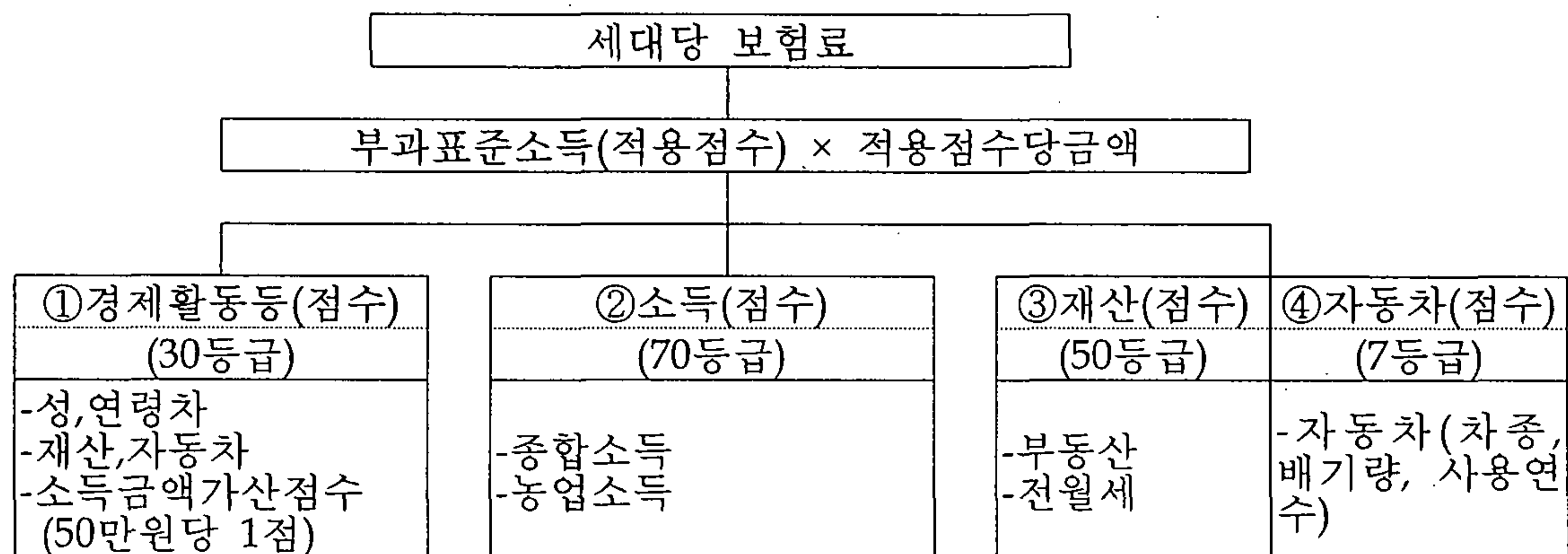
<그림 VI-4> 실제소득과 건강보험료로부터 추정된 소득과의 차이



<부록 VI-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세부과정

- ☐ 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감안하며, 이하인 경우에는 경제활동상태와 재산, 자동차를 반영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그림 VI-부1> 참조). 각각의 경우에 사용되는 등급들은 아래의 표들을 참조할 수 있음.

<그림 VI-부1>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모형



<표 VI-부2>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급별 점수

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점수
1	1.4	-	2.5	20
2	2.6	-	3.7	32
3	3.8	-	4.9	44
4	5.0	-	6.1	56
5	6.2	-	7.3	68
6	7.4	-	8.4	81
7	8.5	-	9.6	93
8	9.7	-	10.8	105
9	10.9	-	12.0	117
10	12.1	-	13.2	129
11	13.3	-	14.4	141
12	14.5	-	15.6	153
13	15.7	-	16.8	165
14	16.9	-	18.0	178
15	18.1	-	19.2	190
16	19.3	-	20.3	202
17	20.4	-	21.5	214
18	21.6	-	22.7	226
19	22.8	-	23.9	238
20	24.0	-	25.1	250
21	25.2	-	26.3	263
22	26.4	-	27.5	275
23	27.6	-	28.7	287

24	28.8	-	29.9	299
25	30.0	-	31.1	311
26	31.2	-	32.2	323
27	32.3	-	33.4	335
28	33.5	-	34.6	348
29	34.7	-	35.8	360
30	35.9 이상			372

<표 VI-부2> 소득등급별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등급	소득금액(만원)	점수
1	500 초과 - 600 이하	380	36	6,560 초과 - 6,960 이하	1,407
2	600 초과 - 700 이하	409	37	6,960 초과 - 7,380 이하	1,443
3	700 초과 - 800 이하	437	38	7,380 초과 - 7,840 이하	1,481
4	800 초과 - 900 이하	466	39	7,840 초과 - 8,320 이하	1,520
5	900 초과 - 1,000 이하	494	40	8,320 초과 - 8,820 이하	1,560
6	1,000 초과 - 1,100 이하	523	41	8,820 초과 - 9,360 이하	1,601
7	1,100 초과 - 1,200 이하	552	42	9,360 초과 - 9,930 이하	1,643
8	1,200 초과 - 1,300 이하	580	43	9,930 초과 - 10,600 이하	1,687
9	1,300 초과 - 1,400 이하	609	44	10,600 초과 - 11,200 이하	1,731
10	1,400 초과 - 1,500 이하	637	45	11,200 초과 - 11,900 이하	1,776
11	1,500 초과 - 1,600 이하	666	46	11,900 초과 - 12,600 이하	1,823
12	1,600 초과 - 1,700 이하	695	47	12,600 초과 - 13,400 이하	1,871
13	1,700 초과 - 1,800 이하	723	48	13,400 초과 - 14,200 이하	1,920
14	1,800 초과 - 1,900 이하	752	49	14,200 초과 - 15,000 이하	1,969
15	1,900 초과 - 2,020 이하	780	50	15,000 초과 - 15,800 이하	2,020
16	2,020 초과 - 2,140 이하	809	51	15,800 초과 - 16,600 이하	2,247
17	2,140 초과 - 2,270 이하	838	52	16,600 초과 - 17,400 이하	2,474
18	2,270 초과 - 2,410 이하	866	53	17,400 초과 - 18,300 이하	2,714
19	2,410 초과 - 2,560 이하	895	54	18,300 초과 - 19,200 이하	2,969
20	2,560 초과 - 2,710 이하	923	55	19,200 초과 - 20,100 이하	3,224
21	2,710 초과 - 2,880 이하	952	56	20,100 초과 - 21,100 이하	3,494
22	2,880 초과 - 3,050 이하	981	57	21,100 초과 - 22,100 이하	3,777
23	3,050 초과 - 3,240 이하	1,009	58	22,100 초과 - 23,200 이하	4,074
24	3,240 초과 - 3,430 이하	1,038	59	23,200 초과 - 24,400 이하	4,400
25	3,430 초과 - 3,640 이하	1,066	60	24,400 초과 - 25,600 이하	4,740
26	3,640 초과 - 3,860 이하	1,095	61	25,600 초과 - 26,800 이하	5,080
27	3,860 초과 - 4,100 이하	1,124	62	26,800 초과 - 28,200 이하	5,449
28	4,100 초과 - 4,350 이하	1,152	63	28,200 초과 - 29,500 이하	5,831
29	4,350 초과 - 4,610 이하	1,181	64	29,500 초과 - 31,000 이하	6,228
30	4,610 초과 - 4,890 이하	1,209	65	31,000 초과 - 32,500 이하	6,653
31	4,890 초과 - 5,190 이하	1,240	66	32,500 초과 - 34,100 이하	7,092
32	5,190 초과 - 5,500 이하	1,271	67	34,100 초과 - 35,800 이하	7,559
33	5,500 초과 - 5,840 이하	1,303	68	35,800 초과 - 37,600 이하	8,055
34	5,840 초과 - 6,190 이하	1,336	69	37,600 초과 - 39,400 이하	8,565
35	6,190 초과 - 6,560 이하	1,371	70	39,400 초과	9,104

<표 VI-부3> 재산등급별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등급	재산금액(만원)	점수
1	100 초과 - 300 이하	22	26	15,100 초과 - 16,800 이하	569
2	300 초과 - 600 이하	44	27	16,800 초과 - 18,800 이하	591
3	600 초과 - 900 이하	66	28	18,800 초과 - 20,900 이하	613
4	900 초과 - 1,200 이하	88	29	20,900 초과 - 23,300 이하	635
5	1,200 초과 - 1,500 이하	110	30	23,300 초과 - 25,900 이하	657
6	1,500 초과 - 1,800 이하	131	31	25,900 초과 - 28,800 이하	680
7	1,800 초과 - 2,100 이하	153	32	28,800 초과 - 32,100 이하	704
8	2,100 초과 - 2,400 이하	175	33	32,100 초과 - 35,800 이하	730
9	2,400 초과 - 2,700 이하	197	34	35,800 초과 - 39,800 이하	756
10	2,700 초과 - 3,000 이하	219	35	39,800 초과 - 44,300 이하	784
11	3,000 초과 - 3,350 이하	241	36	44,300 초과 - 49,400 이하	812
12	3,350 초과 - 3,700 이하	263	37	49,400 초과 - 55,000 이하	842
13	3,700 초과 - 4,100 이하	285	38	55,000 초과 - 61,200 이하	873
14	4,100 초과 - 4,600 이하	307	39	61,200 초과 - 68,200 이하	905
15	4,600 초과 - 5,200 이하	329	40	68,200 초과 - 75,900 이하	938
16	5,200 초과 - 5,800 이하	350	41	75,900 초과 - 84,600 이하	972
17	5,800 초과 - 6,400 이하	372	42	84,600 초과 - 94,200 이하	1,007
18	6,400 초과 - 7,100 이하	394	43	94,200 초과 - 105,000 이하	1,043
19	7,100 초과 - 7,900 이하	416	44	105,000 초과 - 117,000 이하	1,081
20	7,900 초과 - 8,800 이하	438	45	117,000 초과 - 131,000 이하	1,119
21	8,800 초과 - 9,800 이하	460	46	131,000 초과 - 145,000 이하	1,159
22	9,800 초과 - 11,000 이하	482	47	145,000 초과 - 162,000 이하	1,199
23	11,000 초과 - 12,200 이하	504	48	162,000 초과 - 180,000 이하	1,241
24	12,200 초과 - 13,600 이하	526	49	180,000 초과 - 200,000 이하	1,284
25	13,600 초과 - 15,100 이하	548	50	200,000 초과	1,328

<표 VI-부4> 자동차등급별 점수

구 분			사용연수별 적용율 및 결정 점수			
등급	차 종	배 기 량 등	3년 미만	3년 이상 6년 미만	6년 이상 9년 미만	9년 이상
			100%	80%	60%	40%
1	승용자동차	800cc 이하	18	14	11	7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이하				
	특수자동차	소형 특수자동차				
2	승용자동차	800cc 초과 1,000cc 이하	28	23	17	11
	승합자동차	소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4톤 초과 5톤이하				
	기타승용자동차	모든차량				
3	승용자동차	1,000cc 초과 1,500cc 이하	59	47	35	24

	승합자동차	대형 일반버스				
	화물자동차	적재정량 5톤초과				
	특수자동차	대형 특수자동차				
4	승용자동차	1,500cc 초과 2,000cc 이하	113	90	68	45
5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 2,500cc 이하	155	124	93	62
6	승용자동차	2,500cc 초과 3,000cc 이하	186	149	111	74
7	승용자동차	3,000cc 초과	217	173	130	87

비고 : 1. 사용연수는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월단위로 계산하여 적용함.

2. 기타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4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태양열자동차·알코올자동차)를 의미함.

< 표 IV-부5> 부과표준소득의 등급별 적용점수

등급	부과표준소득(점수)	적용점수	등급	부과표준소득(점수)	적용점수
1	40 이하	35	51	1,031 - 1,080	1,055
2	41 - 50	45	52	1,081 - 1,130	1,105
3	51 - 60	55	53	1,131 - 1,190	1,160
4	61 - 70	65	54	1,191 - 1,250	1,220
5	71 - 80	75	55	1,251 - 1,310	1,280
6	81 - 90	85	56	1,311 - 1,370	1,340
7	91 - 100	95	57	1,371 - 1,440	1,405
8	101 - 110	105	58	1,441 - 1,510	1,475
9	111 - 120	115	59	1,511 - 1,580	1,545
10	121 - 130	125	60	1,581 - 1,660	1,620
11	131 - 145	138	61	1,661 - 1,740	1,700
12	146 - 160	153	62	1,741 - 1,830	1,785
13	161 - 175	168	63	1,831 - 1,920	1,875
14	176 - 190	183	64	1,921 - 2,010	1,965
15	191 - 205	198	65	2,011 - 2,110	2,060
16	206 - 220	213	66	2,111 - 2,210	2,160
17	221 - 235	228	67	2,211 - 2,320	2,265
18	236 - 250	243	68	2,321 - 2,430	2,375
19	251 - 265	258	69	2,431 - 2,550	2,490
20	266 - 280	273	70	2,551 - 2,680	2,615
21	281 - 300	290	71	2,681 - 2,810	2,745
22	301 - 320	310	72	2,811 - 2,950	2,880
23	321 - 340	330	73	2,951 - 3,090	3,020
24	341 - 360	350	74	3,091 - 3,240	3,165
25	361 - 380	370	75	3,241 - 3,400	3,320
26	381 - 400	390	76	3,401 - 3,570	3,485
27	401 - 420	410	77	3,571 - 3,740	3,655
28	421 - 440	430	78	3,741 - 3,920	3,830
29	441 - 460	450	79	3,921 - 4,120	4,020
30	461 - 480	470	80	4,121 - 4,320	4,220
31	481 - 505	493	81	4,321 - 4,530	4,425
32	506 - 530	518	82	4,531 - 4,750	4,640

33	531	-	555	543	83	4,751	-	4,980	4,865
34	556	-	580	568	84	4,981	-	5,230	5,105
35	581	-	605	593	85	5,231	-	5,480	5,355
36	606	-	630	618	86	5,481	-	5,750	5,615
37	631	-	655	643	87	5,751	-	6,030	5,890
38	656	-	680	668	88	6,031	-	6,330	6,180
39	681	-	705	693	89	6,331	-	6,640	6,485
40	706	-	730	718	90	6,641	-	6,960	6,800
41	731	-	760	745	91	6,961	-	7,300	7,130
42	761	-	790	775	92	7,301	-	7,660	7,480
43	791	-	820	805	93	7,661	-	8,030	7,845
44	821	-	850	835	94	8,031	-	8,430	8,230
45	851	-	880	865	95	8,431	-	8,840	8,635
46	881	-	910	895	96	8,841	-	9,270	9,055
47	911	-	940	925	97	9,271	-	9,730	9,500
48	941	-	970	955	98	9,731	-	10,200	9,965
49	971	-	1,000	985	99	10,201	-	10,700	10,450
50	1,001	-	1,030	1,015	100	10,701 이상			11,000

<표 VI-부6> 구간별 점수표 : ()는 점수임

구 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가입자의 성 및 연 령 별	남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4.8)	20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5.7)	30세 이상 50세 미만 (6.6)
	여성	20세 미만, 65세 이상 (1.4)	60세 이상 65세 미만 (3.0)	25세 이상 3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4.3)	20세 이상 25세 미만, 30세 이상 50세 미만 (5.2)

<부록>

1998년 이후 근로자가구와 자영자가구의 평균소득 역전 현상에 대한 검토

1. 문제의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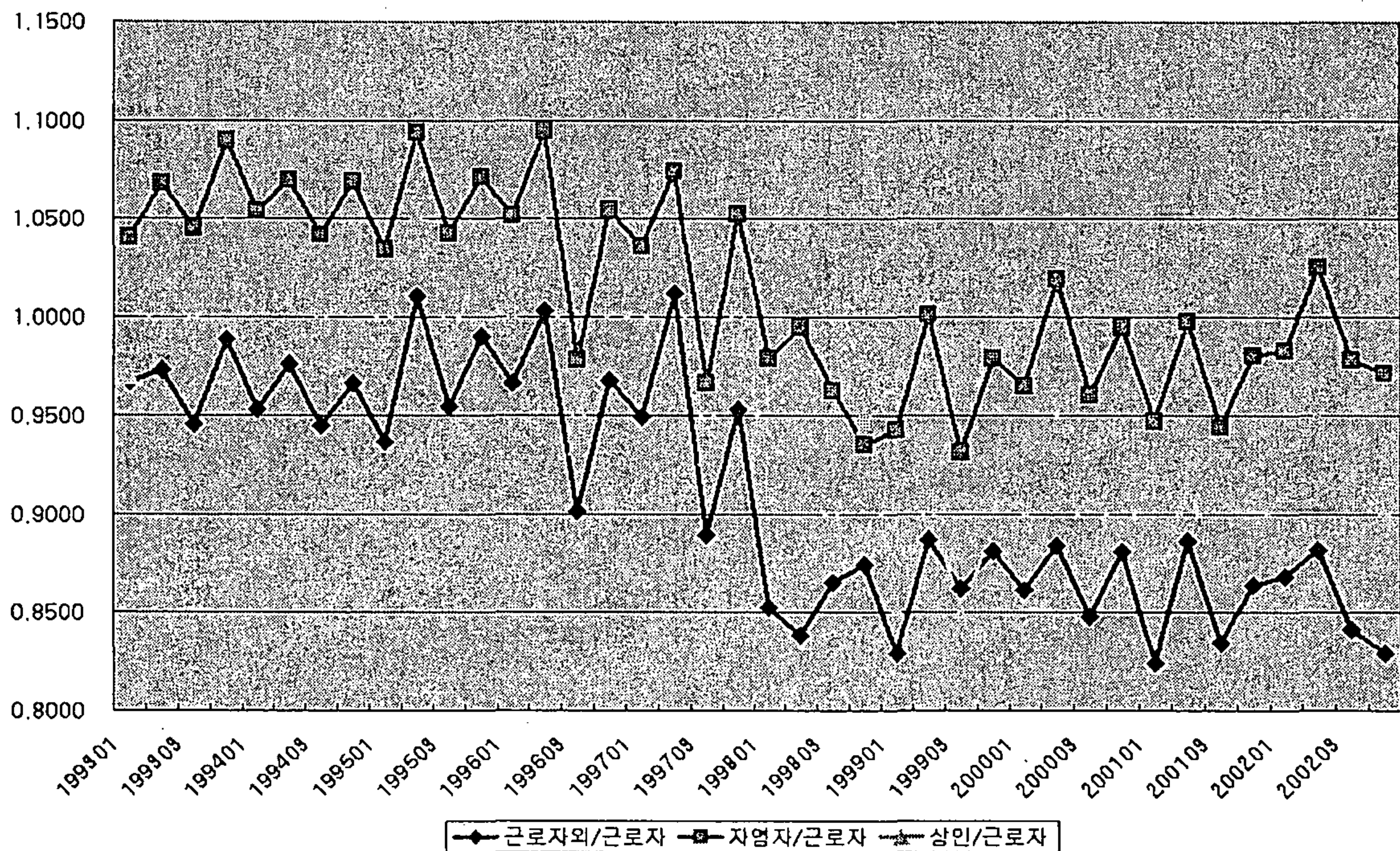
- <그림 부-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이하 기간 A)과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간(이하 기간 B) 사이에는 근로자가구소득 대비 근로자의 가구의 소득비율이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근로자가구소득 대비 근로자의 가구소득의 비율은 기간A의 0.9625에서 기간B에는 0.8596으로 하락하였고, 근로자가구소득 대비 자영자가구소득의 비율은 기간 A의 1.0514에서 기간 B에는 0.9746으로 하락하였음. 또한 근로자가구소득 대비 상인가구소득의 비율도 기간 A의 1.0061에서 기간 B에는 0.9104로 하락하였음.
- 근로자가구소득 대비 자영자가구의 소득비율이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값에 있어서도 기간 A에서는 자영자가구와 상인가구의 기간평균 가구소득이 모두 근로자가구소득보다 많았으나, 기간 B에서는 모두 근로자가구소득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기간간 비율평균(근로자가구소득 대비 자영자가구소득 비율의 20분기(5년) 평균) 차이에 대한 단순 t-검정에 의하면 근로자가구소득 대비 근로자의 가구소득 검정에서는 t-값이 1.9975, 근로자가구소득 대비 자영자가구소득 검정의 t-값이 1.4101, 그리고 근로자가구소득 대비 상인가구소득 검정의 t-값은 1.8497로 나타났음³³⁾.
- 따라서 근로자가구소득 대비 근로자의 가구소득의 비율평균 차이 이외에는 기간 A와 B에서의 비율평균의 차이가 5%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님.
 - 그러나 1998년 이후(IMF외환위기를 당한 이후)부터는 자영자가구의 평균소득이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보다 작아졌다는 현상의 경제학적 함의를 고려할 때, 도시가계조사에 나타난 이와 같은 결과가 실제 소득상황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가계조사의 1998년의 표본개편과 관련된 통계적 오류와 관련되어 있는 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근로자가구대비 자영업자 및 상인가구의 평균소득비율은 1998년과 1999년 부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이후 동 비율이 점차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³⁴⁾.

33) 근로자의 가구와 자영자가구의 소득평균의 차이는 주로 무직가구에 의해 발생함.

34)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기해 볼 수 있음. IMF외환위기 이후 자영자가구가 근로자가구에 비해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환위기 이전에는 근로자가구보다 많았던 자영자가구의 평균소득이

<그림 부-1> 근로자가구 대비 근로자의 가구의 평균소득 비율 추이

(1) 분기별 데이터



2. 관련자료 검토

- 현재 국내에서 근로자가구와 자영자가구의 평균가구소득을 시계열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음. 이하에서는 현재 공식적으로 사용가능한 관련 데이터를 검토하여, 도시가계조사에 나타난 1998년 이후의 가구소득 변화상황을 간접적으로 유추해보고자 함³⁵⁾³⁶⁾.

(1) 국민연금관리공단 소득자료³⁷⁾

- 국민연금은 1999년 2분기부터 대도시 지역가입자를 포함하였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평균소득비교는 1999년 2분기부터 가능함.

- <그림 부-2>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하는 소득등급별 국민연금가입자수에 기초하여 산출한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보여주고 있음.

- <그림 부-2>에 의하면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평균소득수준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사업장가입자 대비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은 최근에 올수록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사업장가입자에 비해 적다는 점은 자영자가구의 평균소득이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보다 적다는 점과 유사하다고 하겠음. 그러나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차이가 2002년에 가까울수록 커진다는 점은 자영자가구와 근로자가구의 평균소득의 차이가 2002년에 가까울수록 작아지는 현상과는 부합되지 않음.

- (한계점) 그러나 <그림 부-2>에 나타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그림 부-1>에 나타난 근로자와 자영업자와 구성상 상이한 부분이 많음.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그림 부-2>에서 지역가입자는 상용직보다 평균소득이 적은 임시, 일용직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반면(약, 30%정도로 추정됨, VI.장 참조), 사업장가입자는 일반적인 자영업자보다 소득이 많은 다수의 개인경영자 및 법인경영자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에 반해 도시가계조사에서는 임시, 일용직이 근로자가구에 포함된 반면, 개인경영자 및 법인경영자는 자영업자에 포함되

35) 이하의 분석은 관련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다소 과감한 가정을 사용한 경우가 많음. 따라서 부록의 분석결과는 과학적인 엄밀성이 다소 미비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가구와 자영자가구의 평균소득이 역전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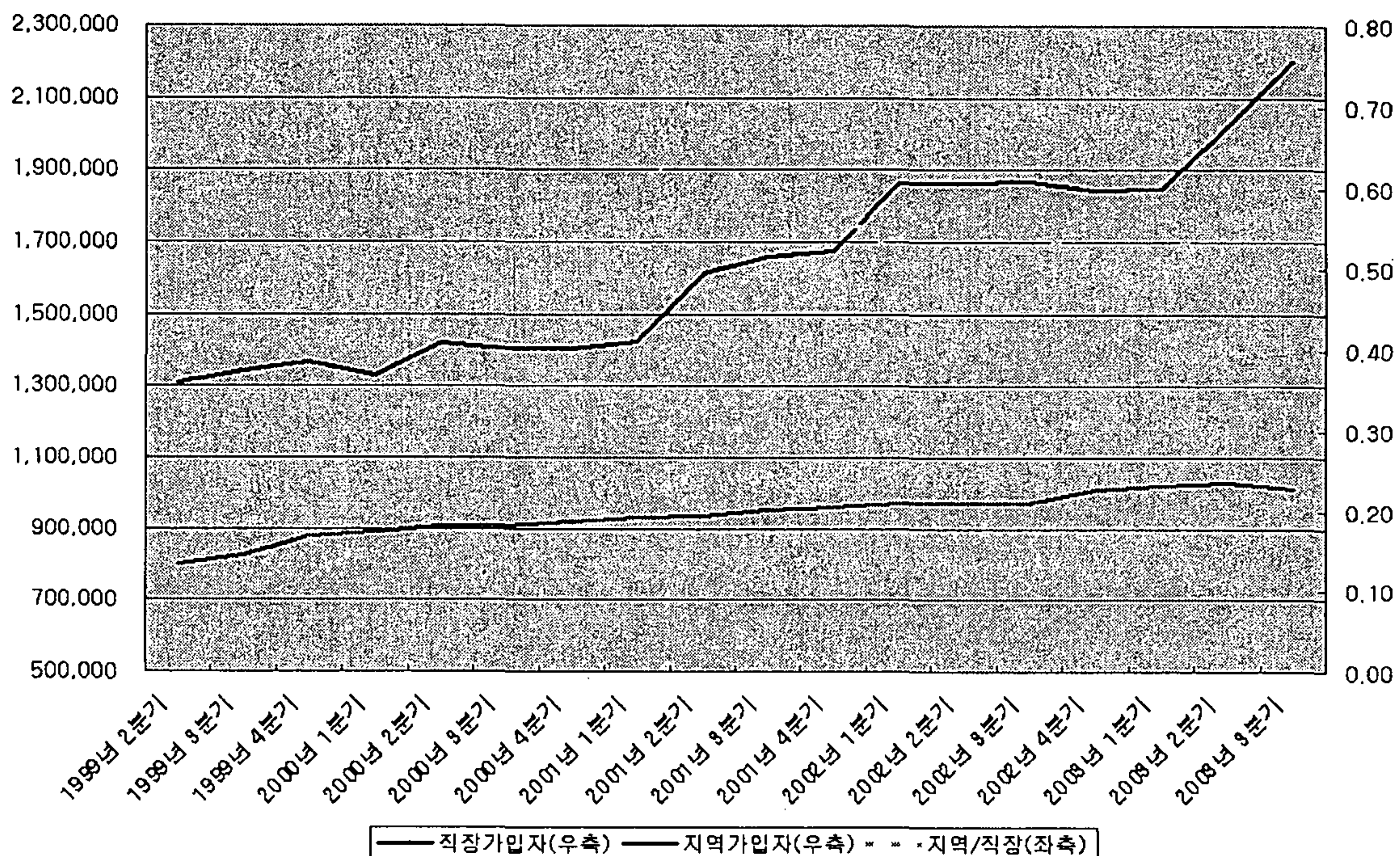
36)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자료가 1998년 이후에 가구소득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통계청의 공식통계와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임.

37) VI장에서 제시한 국민연금과 도시가계조사의 비교의 한계점을 참고할 것.

어 있음. 이러한 구성원의 차이로 인해 국민연금과 도시가계조사에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차이가 실제를 반영한 것인지를 알기 어려움.

- o 또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역가입자가 일반적으로 소득을 축소보고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점도 감안하면 국민연금관리공단 데이터로서는 도시가계조사에 나타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비율의 신뢰성을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

<그림 부-2> 국민연금 소득등급으로 계산한 가입장 및 지역가입자 평균소득의 변화



(2) 국세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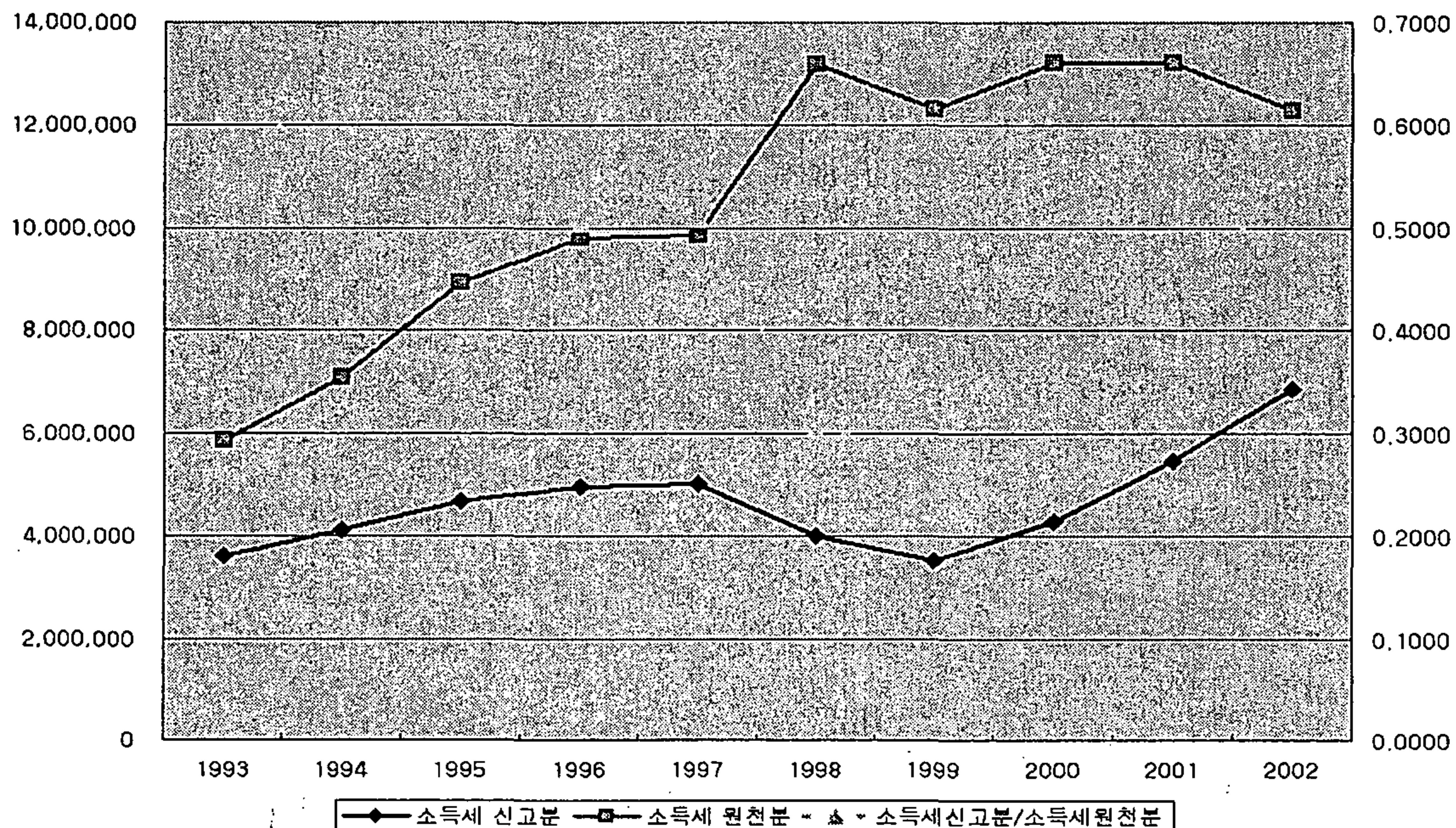
- 다양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소득세징수액 중에서 신고분을 자영업자의 소득세, 원천분을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로 분류해 보고자 함.
- o 다음의 <그림 부-3>은 신고분과 원천분 소득세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8년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분소득세는 대체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1999년, 2002년 제외), 신고분소득세는 1998년과 1999년에 하락하였다가 2000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³⁸⁾.

-> 결국 신고분과 원천분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거친 대응변수라고 볼 때 <그림

38) 2000년 4분기 또는 2001년부터의 자영업자의 소득세증가는 동 시기의 신용카드사용 활성화조치에 일부 기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용카드활성화의 효과를 정확히 분리 측정하기는 어려움.

부-3>에 나타난 1998년 이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관계(근로자가구소득 대비 자영자가구소득의 비율이 1998년 및 1999년에는 대폭 하락하다가 2000년 이후부터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추세)는 대체로 <그림 부-1>에 나타난 도시가계조사의 추세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그림 부-3> 소득세 신고분과 원천분의 추이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그림 부-4>는 1인당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금액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 동 비율에 의하면 비록 절대값은 1인당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비하여 크지만, 비율(1인당 종합소득세 소득금액/1인당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은 1999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

-> 이는 상대적으로 1인당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증가율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의 증가율보다 작다는 점을 의미하며, 1998년 이후 자영업자소득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임.

□ <그림 부-5>는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금액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의 해당등급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비율이 감소하고, 8천만원 이상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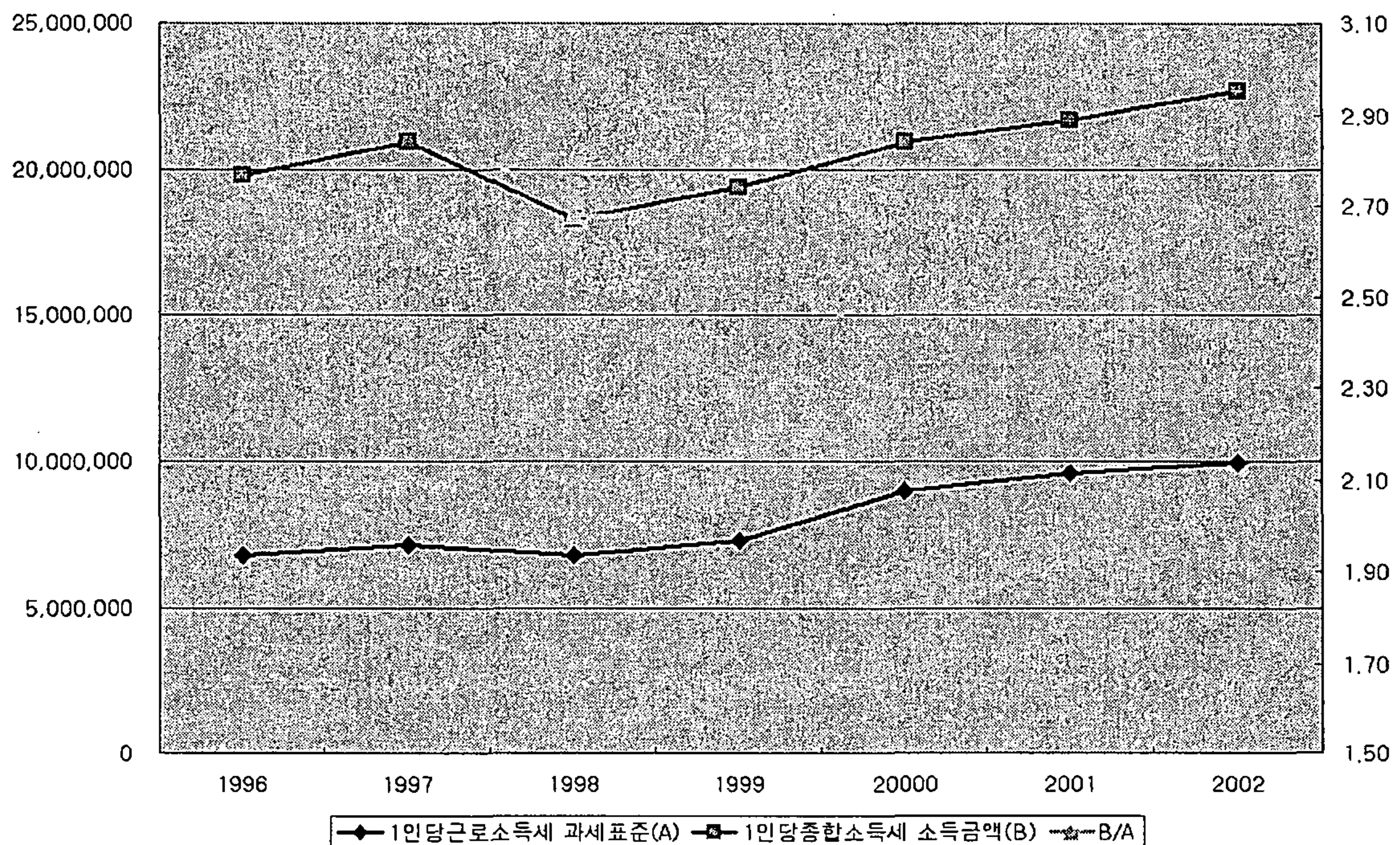
○ 그러나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고, 8천만원 이상인 비율은 증가하고 있어서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1998년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비율이 증가하고, 8천만원 이

상인 비율이 감소하여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자영업자구의 소득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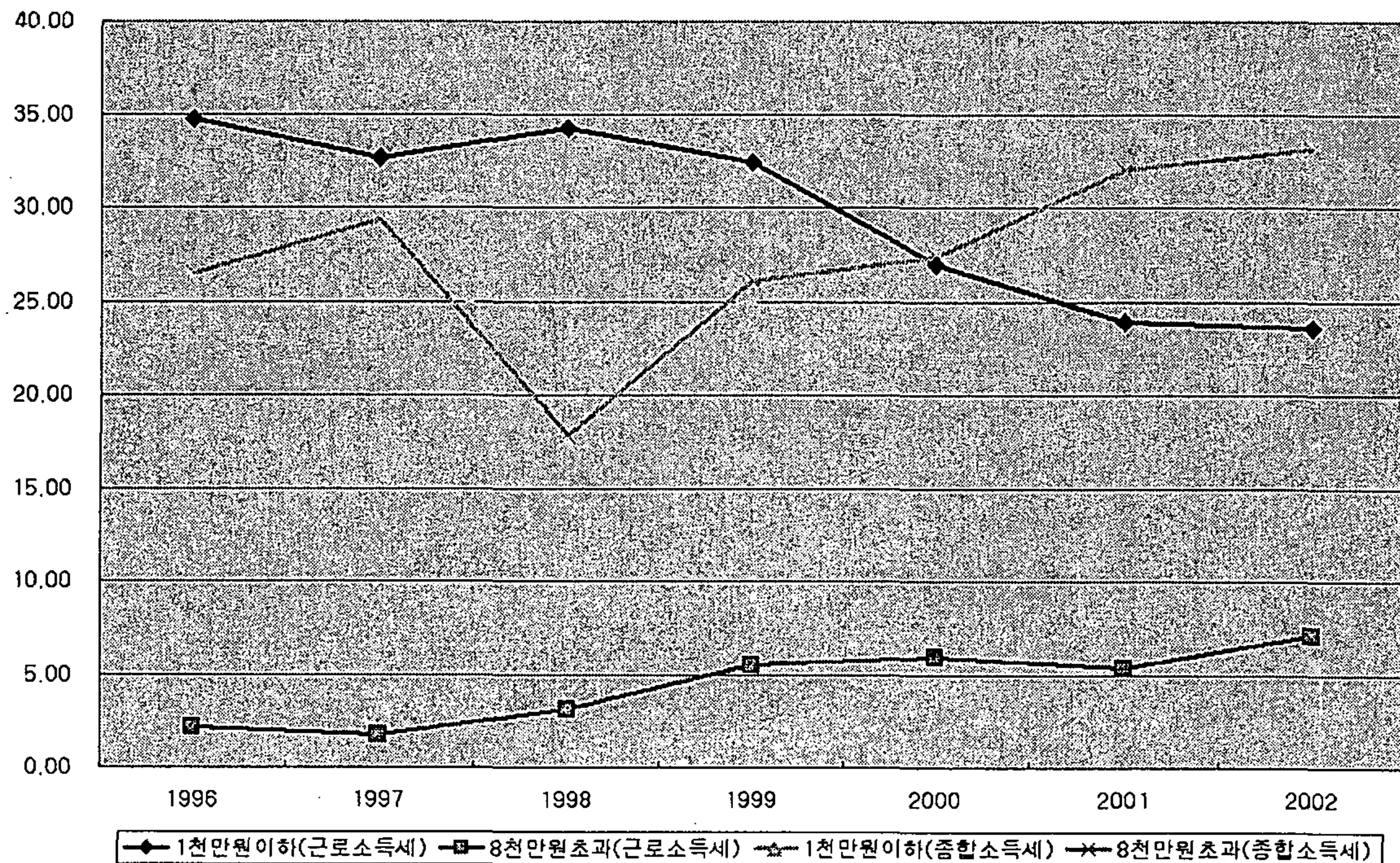
※ 자영업자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은 도시가계조사에서 자영업소득파악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 결국 국세청자료는 1998년을 전후하여 근로자가구(근로소득)와 자영업자가구(사업소득) 사이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주지만, 실제로 이러한 변화가 평균소득의 역전을 가져올 정도의 큰 변화였는가에 대해서는 해답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그림 부-4> 1인당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그림 부-5> 과세소득 또는 소득금액기준 1천만원이하와 8천만원 이상의 추이



(3) 통계청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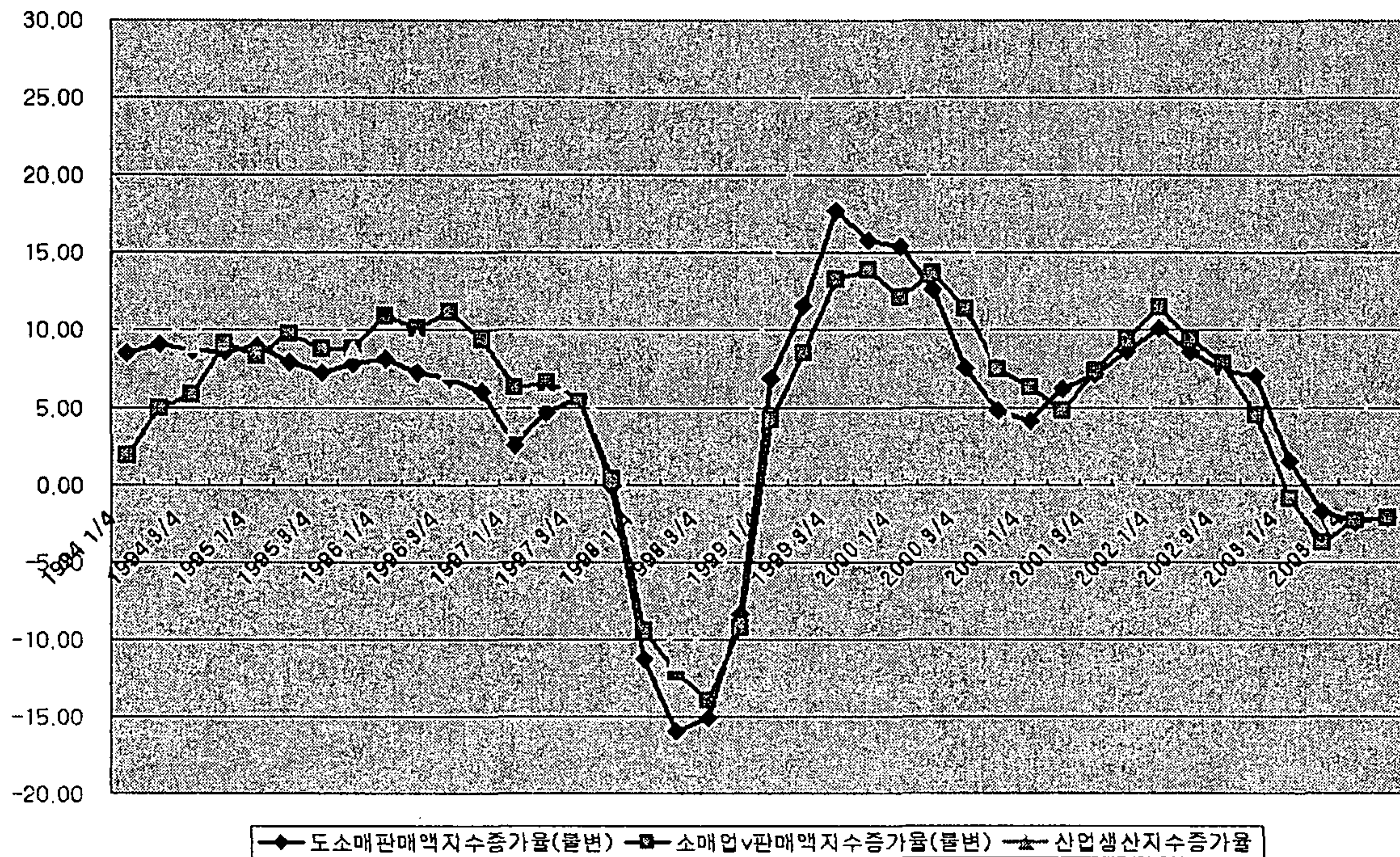
□ 산업생산지수와 도소매판매액지수의 변화율을 각각 근로소득과 자영업소득의 대응변수로 사용하여 두 소득의 증가율을 계산함.

○ <그림 부-6>은 산업생산지수와 도소매판매액지수의 변화율을 보여주고 있음. 1998년 이후 산업생산지수의 감소율은 도소매판매액지수의 감소율보다 작았으며, 이후 1999년부터의 반등과정에서는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율이 도소매판매액지수의 증가율을 상회하였음.

- 다만, 2000년 4분기부터 양자의 증가율의 상대적 크기는 역전되지만 이 기간의 도소매판매액지수의 증가율은 실제의 판매증가 반영분과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에 기인하는 부분이 혼재된 것으로 판단됨.

-> 매우 거친 대응변수이지만, 자영업자가구의 소득증가율이 근로자가구의 소득증가율보다 낮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임.

<그림 부-6> 산업생산지수와 도소매판매액지수의 변화율



※ 참고 : 신용카드 사용액과 도소매판매액 증가율 분석

□ <표 부-1>에 의하면 기타소매업의 경상가격 판매액증가율은 대체로 전체 도소매 판매액의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 또는 약간 낮은 수준을 보여주었음. 1998년의 특이기간을 지나면 2000년 4분기까지는 대체로 IMF이전과 비슷한 행태를 보였음.

□ 그러나 2001년 1분기부터 2002년 4분기까지 기타소매업의 판매액증가율이 전체 도소매판매액증가율의 0.44수준으로 급속히 감소하였음.

○ 기타 소매업의 판매액증가율은 신용카드사용과 가장 관계가 적을 것이라고 추론되는 도소매판매업이라고 할 것임.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는 2000년 4분기 또는 2001년 1분기부터의 도소매판매액증가율은 모두가 새로운 판매액의 증가율을 반영한다기 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에 따라 과표가 양성화되는 과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 통계청의 업태별 도소매판매액지수에서는 업태를 백화점,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편의점, 기타 대형점포, 무점포판매, 기타 소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 중에서 신용카드 사용과 가장 관련이 적은 업태가 기타 소매업 일 것으로 판단함. 한편, 기타 소매업의 증가율둔화는 편의점의 급속한 확대에 의해 기타 소매업이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과정으로 이해되는 부

분도 있으나, 이러한 효과가 2000년 4분기부터 갑자기 크게 나타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임.

<표 부-1> 전체 도소매판매액 및 기타 소매업 판매액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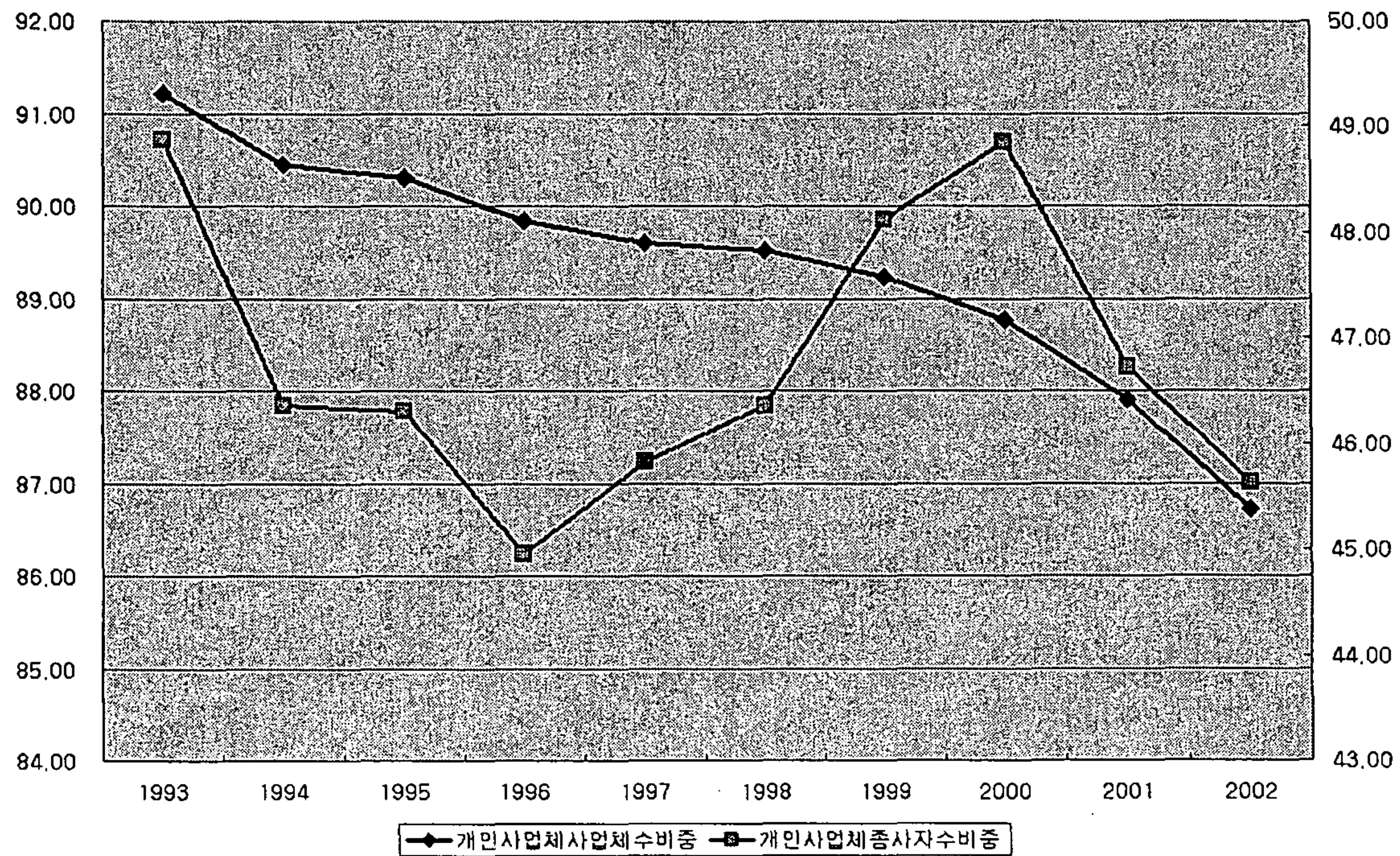
기간	전체도소매판매액증가율(%A)	기타소매업판매액증가율(%B)	B/A
1996 1/4	11.01	8.86	0.80
1996 2/4	9.50	9.08	0.96
1996 3/4	9.81	11.32	1.15
1996 4/4	10.03	9.11	0.91
1997 1/4	7.37	7.03	0.95
1997 2/4	8.55	6.42	0.75
1997 3/4	8.28	5.45	0.66
1997 4/4	5.10	4.85	0.95
1998 1/4	0.00	-2.19	-
1998 2/4	-4.58	-6.15	1.34
1998 3/4	-4.49	-9.07	2.02
1998 4/4	0.23	-5.81	-25.14
1999 1/4	5.24	3.06	0.58
1999 2/4	8.99	6.67	0.74
1999 3/4	16.26	12.63	0.78
1999 4/4	14.88	13.37	0.90
2000 1/4	16.13	12.69	0.79
2000 2/4	12.43	11.27	0.91
2000 3/4	8.09	9.87	1.22
2000 4/4	4.22	4.44	1.05
2001 1/4	4.29	1.01	0.24
2001 2/4	7.94	3.51	0.44
2001 3/4	7.89	4.08	0.52
2001 4/4	7.51	4.05	0.54
2002 1/4	9.01	7.83	0.87
2002 2/4	8.19	1.74	0.21
2002 3/4	7.12	1.76	0.25
2002 4/4	8.60	4.08	0.47

□ 소규모자영업의 경쟁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개인사업체수와 개인사업체 종사자수의 비중 추이를 검토함.

○ <그림 부-7>에 의하면 개인사업체 종사자수의 전체 종사자에 대한 비중 추이는 IMF외환위기 이후 2000년까지 상승하다가 하락추세로 반전되었음.

-> 동 기간 중의 개인사업체 종사자수의 비중증가는 경쟁격화로 인한 소규모 자영업의 수익성 하락으로 연결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그림 부-7> 개인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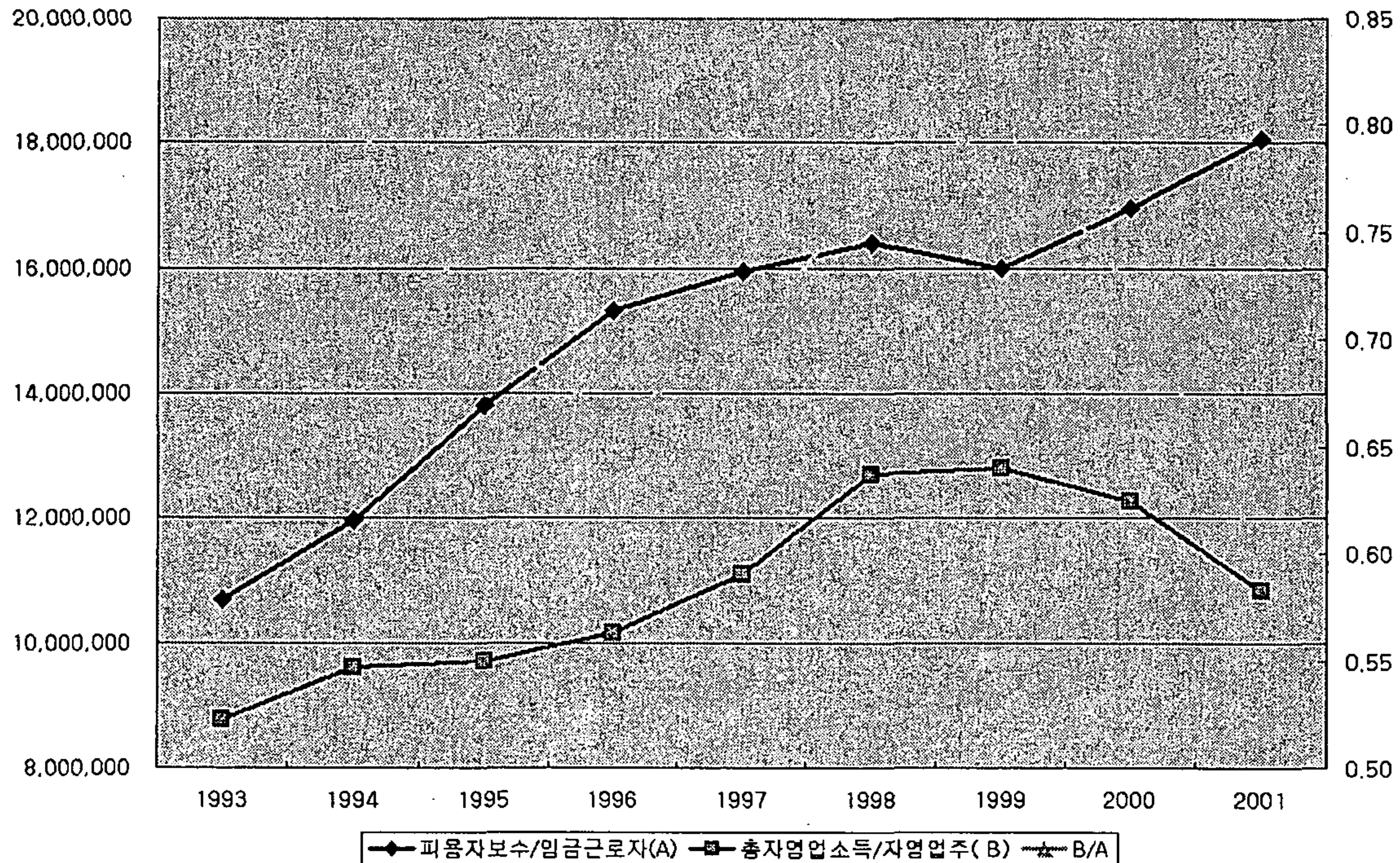


(4) 한국은행자료

- 국민계정의 피용자보수를 임금근로자의 수로 나누고, 국민계정에서 추출된 총자영업소득을 자영업주의 수로 나누어서 1인당 피용자보수와 자영업소득을 구함.
- <그림 부-8>에서는 이렇게 산출된 1인당 피용자보수와 자영업소득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 동 비율(1인당 총자영업소득/1인당 피용자보수)은 1996년까지 하락하다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상승함. 이후에는 다시 하락하는 추세임. 또한 절대적인 값은 분석기간 모두에서 1보다 작음.

-> 적어도 자영업소득의 경우에는 도시가계조사와 국민계정이 부합되지 않는다는 국민계정과 도시가계조사의 비교결과가 다시 한번 반복되었음.

<그림 부-8> 국민계정의 1인당 피용자보수와 총자영업소득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통계청 경제활동조사

3. 분석결과

- 1998년 이후 근로자와 자영자 사이의 소득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일부 확인되었음.
- 1인당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금액에 비하여 크지만, 비율(1인당 종합소득세 소득금액/1인당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금액)은 1999년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음.
-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비율이 감소하고, 8천만원 이상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종합소득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금액이 1천만 이하인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고, 8천만원 이상인 비율은 증가하고 있음.
 - > 특히 1998년의 경우에는 과세표준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비율이 증가하고, 8천만원 이상인 비율이 감소하여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자영자가구의 소득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음.
- 1998년 이후 도소매판매액지수의 변화율은 산업생산지수의 변화율에 비해 상승기에는 증가율이 더 낮았으며, 하락기에는 감소율이 더 컸음.
- 2000년까지 개인사업체 종사자수의 비중이 증가하여 수익성 하락을 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사항들은 근로자와 자영자사이의 소득관계에서 구조변화

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지만, 구조변화의 명백한 증거로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임. 특히 구조변화의 효과가 근로자가구소득과 자영업가구소득의 평균역전 현상을 가져올 만큼 심대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더욱 판단하기 어려움.